

인권정보자료실
CPe1.26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심포지엄

전쟁과 인권

— 학술의 세기를 넘어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심포지엄

전
쟁
과
인
권

CPe1.26

2000년 6월 21일

■일시

2000년 6월 21일(수) 오후1시~5시

■장소

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장

■공동주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모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협의회(준비위원회)

■공동주최

학술단체협의회, 동아시아 평화인권 한국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역사학연구소,
전국연합, Asem인권분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 16개 단체)

민간인학살에 관한 문의

문경양민학살피학살자유족회(채의진 대표)
0582-541-9039

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영일 소장)
0662-651-1530 fax 0662-654-7749
yosuicc@hanmail.net
<http://www.yosuicc.or.kr>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모임(김동춘 교수)
02-2610-4236, dckim@mail.skhu.ac.kr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심포지움

전쟁과 인권

- 학살의 세기를 넘어서

일 시

2000년 6월 21일(수) 오후 1시-5시

장 소

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장

공동주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모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협의회(준비위원회)

공동주최

학술단체협의회, 동아시아 평화인권 한국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역사학연구소, 전국연합, Asem인권분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서울장애인연맹, (사)좋은벗들,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전북평화인권연대, 다산인권상담소, 서울장애인연맹, 나와우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광주인권지기, 인권실천시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한국교회여성연합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심포지움

【진행순서】

전체사회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13:00~13:10 인사말 : 김중배(참여연대 공동대표)

13:10~13:20 현 시 : 이기형(시인)

【제1부】

사회 : 강창일 (배재대 교수)

13:20~13:40 주제발표 1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의 실태”

발표자 : 강정구(동국대 교수)

13:40~14:00 주제발표 2 : “민간인 학살문제 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

발표자 :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14:00~14:20 주제발표 3 : “민간인 학살사건에 관한 법적인 문제점과 해결방향”

발표자 : 강금실(변호사)

14:20~15:20 토 론

토론자 : 이미경(국회의원), 서중석(성균관대 교수), 이장희(한국외대 교수)

15:20~15:30 휴식

【제2부】

사회 :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15:30~16:50 유족회 및 시민단체의 활동경과보고

1. 전남함평지역 : 정근욱 회장(사.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2. 고양금정굴 : 김양원 위원장(고양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위원회)

3. 강화지역 : 서영선 대표(강화희생자유족회)

4. 전남나주지역 : 이상계 회장(나주동창교양민학살사건유족추진위원회)

5. 지리산외공마을 : 김석창 실행위원(외공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대책위원회)

6. 전남화순지역 : 김성인 의원(화순군의회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

7. 산청군 시천·삼장지역 : 정맹근 회장(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피학살자유족회)

8. 여수지역 : 이춘송 대표(여수남면양민학살유족회)

9. 익산역오폭사건 : 이창근 부회장(익산역미군폭격유족회)

10. 대전산내학살사건 : 정준섭 (대전형무소산내학살진상규명유족회)

11. 경북문경석달마을 : 채의진 대표(문경양민학살피학살자유족회)

12. 제주 4·3 : 박찬식 연구실장(제주4.3연구소)

16:50~17:00 성명서 발표

목 차

【제1부】

● 주제발표 1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의 실태” 강정구(동국대 교수)	----- 3
● 주제발표 2	
“민간인 학살문제 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 33
● 주제발표 3	
“민간인 학살사건에 관한 법적인 문제점과 해결방향” 강금실(변호사)	----- 47
【제2부】	
● 유족회 및 시민단체의 활동 경과보고	
1. 전남함평지역	----- 70
2. 고양금정굴	----- 85
3. 강화지역	----- 92
4. 전남나주지역	----- 98
5. 지리산외공마을	----- 101
6. 전남화순지역	----- 105
7. 경남산청군 시천·삼장지역	----- 108
8. 여수지역	----- 114
9. 익산역오폭사건	----- 120
10. 대전산내학살사건	----- 129
11. 경북문경석달마을	----- 139
12. 제주 4·3	----- 175
● 성명서	----- 184
● 유족회 및 관련 시민단체 주소록	----- 187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모임	----- 190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의 실태

강 정 구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I. 머리말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미국 AP통신의 발표가 있자 한국전쟁 중에 저질러진 양민학살 일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까지 이 양민학살에 대하여 제한된 일부의 문제제기가 있어 왔지만 사회적 및 국제적 쟁점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미국계 통신사가 이를 대대적으로 발표하자 금방 쟁점이 되는 현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노근리 양민학살은 전쟁 중 저질러진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의 대표적 경우이긴 하지만 미군의 양민학살 전체에 비하면 지극히 조그만 부분집합에 불과하다. 또 미군의 양민학살 전체 역시 6.25전쟁 전후 저질러진 양민학살 일반이라는 전체 모집합의 부분 집합에 불과하다.

이 글은 한국전쟁 중 저질러진 양민학살 전체 곧, 양민학살 일반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기준에 의해 양민학살의 양태를 분류하고 분석한다. 첫째는 연대기적 분석이다. 이는 1948년 2월 5.10단독선거를 분쇄하여 민족분단을 막고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무력투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2.7구국투쟁이라는 ‘작은전쟁’에서부터 6.25전쟁이 끝나는 1953년 정전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특정 계기를 기준으로 나누어 각 기간의 양민학살 양태를 분석한다.¹⁾ 둘째는 학살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석이다. 학살주체는 미군, 남한 국방군이나 그 산하 부대인 특무대 등 특별기관, 경찰, 서북청년단과 같은 비정규무장대, 이들과 중복되지만 4.3항쟁의 피해대상인 제주도 출신, 북한인민군을 주축으로 한 북한점령기관 일반, 빨치산, 지방 좌익으로 대별 될 수 있다. 이를 각 주체별로 학살의 양태나 특성을 제시한다. 셋째는 피학살자를 기준으로 한 분석이다. 피학살자는 평택이남의 보도연맹원, 형무소 수감자, 제2전선 지역주민, 피난민, 부역혐의자, 공비 및 통비 혐의자, 국민방위군이나 불심검문 또는 가택수색에 의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학살의 대상이 되는 불특정 다수민간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넷째는 학살행위에 따른 분류이다. 이에는 총살, 생매장, 초토화작전에 의한 불태우기, 수

1) 한국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5단계의 소 단계로 분류하여 분석적으로 접근한 글은 강정구, “미국과 한국전쟁”, 『역사비평』, 1994 여름호 참조. 이를 일부 수정하여 강정구,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역사비평사, 1996에 같은 제목으로 실렸다.

장, 일본도에 의한 참살, 굶어죽이기, 때려죽이기, 폭격이나 비행기에서의 기총사수 등에 따른 분류를 하며 덧붙여 학살의 야만적 행위유형에 따른 사례를 제시하겠다. 한국전쟁이 특히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양민학살이 얼마나 더러운 전쟁이었는지를 보여주겠다.

이들 세부적 분석은 주로 남한 땅에서 저질러진 양민학살을 대상으로 한다. 북한지역은 이러한 유형 분류식 분석보다는 전반적인 양태를 서술적으로 제시하면서 자료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유형분류를 시도하겠다. 이들 유형분류에 이어 북한과 남한의 양민학살 일반에 대한 상호비교를 한다. 이 글은 인과적 요인 분석을 시도하기 보다 누구도 쉽사리 접근하지 않으려는 '금기'의 영역에 대한 사실적 차원의 포괄적 구도와 특성을 제시하여 한국전쟁 양민학살 일반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또 지면의 한계 때문에 연대기적 분석에 지면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여타의 분석은 심층적 분석보다는 단순한 유형화 수준에 머문다.

이 글에서는 양민학살을 '아무런 위협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저 좌익, 우익, 부역이라는 집합체의 성원(가족을 포함하여)이라는 이유 및 혐의만으로 무고한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전중의 살인행위를 제외하며 재판에 의한 살인행위라 하더라도 학살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이는 헬렌 폐인이 유엔협약의 제노사이드(genocide)정의를 재 정의한 "한 집합체 성원들의 생물학적 및 사회적 재생산의 정지를 통해 적·간접으로 그 집합체의 신체들을 멸한다"는 목적으로 희생자들의 항복 또는 위협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의해 속행되는 행위"(Fein, 1990)라는 넓은 의미의 정의가운데 살인 행위에 국한하여 한정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 공비나 통비를 제외시켜 양민을 범주화하는 우리 사회의 통념을 거절하고 이념적 지향을 가진다고 해도 양민의 범주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여 양민의 범주를 확대하였다. 이는 인권의 개념을 보다 확하여 적용시켜야 한다는 필자의 개인적 가치관의 반영이다.

『대한 경찰전사』는 부역자를 이념적 공명과 실천을 함께 하는 적극분자, '반정부 감정포지자'로서 '소극적 공산분자', 대세에 부화뇌동하는 소극분자, 강압 밑에 피동적으로 부역한 소극분자로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²⁾ 반정부 감정포지자를 부역자로 분류하는 것은 당시의 경찰이 빨갱이와 부역자를 얼마나 자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4가지 범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일반 형법상 범죄요건이 성립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러한 이념적 지향의 소지 자체가 재판에 의해서든 아니든 유죄 또는 살인의 소이(所以)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은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남한 정부의 '최 상충부'의 명령에 의해 처형된 1800여명의 정치범 역시 그들이 형법상 범죄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양민이라고 범주화된다.

2)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 『한국경찰사』 2, 내무부치안국, 1973, 548쪽. 서중석, 1999, 743-744쪽에서 재인용.

II. 양민학살의 연대기적 양상

한국전쟁 중에 저질러진 양민학살에 대한 전반적 구도를 연대기적으로 포괄하여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작은 전쟁기의 양민학살

한국전쟁의 시발은 엄밀한 의미에서 50년 6월 25일이 아니라 1948년 남한의 좌익이 분단을 막기 위하여 5.10선거를 무산시키고, 미군정과 이승만과 한민당 등 분단세력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무력투쟁을 전개하여 통일을 이루려는 무력항쟁 선언인 2.7구국투쟁부터이다. 한국전쟁의 첫 단계인 작은 전쟁 기간 주로 제주4·3항쟁이나 여순항쟁과 같은 인민항쟁, 유격대투쟁, 38선상의 남북충돌로 특징화할 수 있는 데 이 기간에 10만 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Merrill, 1983:136). 이 기간의 양민학살은 주로 인민항쟁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또 49년부터 본격화된 유격대 소탕전 과정에서 구사된 견벽청야 작전 등으로 주로 문경(채의진, 1995)같은 산간지역 주민들이 학살당하였다.

1) 4·3항쟁과 양민학살

4·3항쟁은 제주도민이 분단을 막기 위하여 5.10선거를 분쇄하기 위한 통일투쟁이었고, 또 도민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에서 전 민중적 항쟁이라는 특성 외에도 전체 인구의 10%에 가까운 3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내고 실제 희생자의 85% 이상이 무고하게 또 무차별적으로 학살되는 참상을 겪은 양민학살이라는 특성을 띤다.

4·3항쟁에서 미국과 이승만이 이러한 학살만행과 대규모 살상행위를 주도한 것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항쟁발발 초기부터 미국은 딘 군정장관의 정치고문인 CIC의 고급장교를 통하여 경비대장 김익렬에게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국제적으로 범죄시 되어 있는 초토화작전을 촉구하였으나 실패하였다(김익렬, 1994: 312-314). 이에 제주도 미군사령관을 강경파인 브라운으로 교체하고, 또 경비대장을 박진경으로 교체하여 한 달여 만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처럼 무려 6천 명을 체포하는 대규모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후 이승만 정권은 해안선 5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무조건 적성지역으로 지정하여 48년 11월부터 무자비한 초토화작전을 감행하였다. 이승만 정권의 초토화작전에 의한 양민학살에 대해 미국은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지만 정부수립 9일 만에 미국은 한국과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국방군에 대한 전면적인 작전상의 통제를 행사한다"고 규정하는 '한미군사안전점정협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제주도에는 임시군사고문단(PMAG), 방첩대(CIC), 미군 59중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미국의 동시책임은 면할 길이 없다(강정구, 1999).

2) 여수군민항쟁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14연대의 대다수인 3천 여명이 제주4·3항쟁의 진압출동명령을 거부하고 별인 군인봉기에 여수의 좌익들이 가세하여 民軍봉기로 발전한 것이 여순군민항쟁이다. 이 항쟁의 진압과정에서 보복적인 테러, 학살, 약탈, 방화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관련자 색출작업은 전 주민을 학교 등 공공장소에 집결시켜 놓고, 주로 “머리가 짧은 자, 군용팬티를 입은 자, 손바닥에 총을 든 흔적이 있는 자, 흰 지까다비를 신은 자 등” 외모에 의하여 부역자를 골라내어 일부는 “즉석에서 곤봉, 개머리판, 체인 등으로 무참하게 타살되거나 또는 총살을 면치 못하였으며” 백두산 호랑이로 소문난 제5연대 김종완 대대장이 교정의 버드나무 밑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즉결 참수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전라남도 보건후생부의 이재민 구호자료에 따르면 여수를 포함한 7개 지역에서 2,634명이 사망하고, 4,325명이 행방불명되었다고 한다(안종철, 1998).

반란군은 좌익민중들과 연합하여 항쟁을 전개하였으나 진압군에 격퇴 당하여 지리산 등의 산악으로 들어가 2.7구국투쟁 이후 형성된 야산대와 결합하여 본격적인 유격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하여 남한의 133개군 중 무려 118개 군에서 유격전구가 형성되어 작은 전쟁은 지속되었다. 이 유격대 토벌전쟁에서, 특히 11사단(사단장 최덕신)이 행한 견벽청야(堅壁清野) 작전은 문경, 함평 등 산간지역에서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집과 재산을 파괴하였다. 이 작은 전쟁의 인명피해는 무려 10만에 이른다. 이 가운데 양민피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주의 2만 5천, 여순항쟁에서 행방불명이 된 4300여명 대부분이 양민일 가능성이 높아 최소한 3만 명 이상일 것이다.

2. 6·25전쟁 초기의 양민학살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쟁 확대, 곧 이어 27일 미국의 전쟁개입 선언, 28일에 한강 북방에 대한 미 공군과 해군의 포격이 시작되면서 한국전쟁은 새로운 국면, 곧 전면전으로 진입했다. 이어 7월 5일 오산에 미국의 지상군이 투입되면서 본격적인 전쟁과 양민학살은 진행되었다. 미군이 오산전투를 치르기 이전, 곧 서울 점령전투나 그 직후는 양민학살이나 대량의 살상이 별로 전개되지 않았다. 유성철의 회고와 같이 “인민군이 서울 점령 3일째인 7월 1일부터 다시 남진을 시작함으로써 6·25는 제한전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한국일보 편, 1991:92). 이 시점, 곧 미군의 직접적인 개입에서부터 양민학살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양민학살 유형은 약 30만에 이르는 보도연맹원에 대한 집단적 학살, 6·25발발 시 1800여명의 대전형무소 수감자에 대한 집단적 처형과 같은 수감자 학살, 노근리나 이리역 같은 미군에 의한 학살, 북한인민군과 빨치산 및 토착공산세력에 의한 학살, 수복과정에서 남한 군과 경찰에 의한 부역혐의자에 대한 무차별 학살 등이다.

1) 국민보도연맹원 학살

보도연맹은 1949년 11월 28일자 권순열 당시 내무부장관의 담화문에서 알 수 있듯이 좌익세력에 대한 통제와 회유를 위하여 만든 전국적 조직으로 연맹원이 30~35만 명에 이르렀다. 6·25전쟁이 터지자 이들 연맹원이 북한 점령의 첨병역을 할 것을 우려하여 평택이남의 전체 회원에 대한 학살명령이 최고위층에서 내려져 전국에 걸쳐 연맹원에게 자행된 집단학살이었다. 경남 진양군 대각면에서 이루어진 학살에 대한 증언은 전쟁초기에 이루어진 학살의 유형을 짐작케 한다.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도연맹원을 소집하여 훈련을 시켰다. 전쟁 후 3~4일 후부터 훈련이 시작되었다. 면에서 한 40~50명이 훈련을 받았다. 2차에 걸쳐 사람들이 죽었다. 1차는 수곡면에서 4~5명되었는데 먼저 잡아가 버렸다. 거물급이라고 생각되던 사람들이었다. 2차는 몇 차례 소집훈련을 한 후 하루는 훈련하던 사람들을 모두 끊었다. 죽은 사람이 40~50명되었다. 명석(진양군 명석면) 근처의 골짜기에 몰아넣고 일제 사격을 해 죽였다고 한다(정진상, 1994:118).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학살된 보도연맹원은 20~25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³⁾ 보도연맹원에 대한 초기의 집단적 학살은 그 이후 연쇄적 학살의 고리를 형성했다. 곧, 보도연맹에 연루되어 학살된 유가족이 그 이후 진주하는 북한인민군에 힘입어 남한의 공무원, 경찰, 지주계급 등에 대한 보복살인을 자행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 보복학살은 9·28수복 후에 주로 우익과 경찰 등에 의한 역 보복살인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와 더욱 더 동족상잔을 초래한 원인 제공공을 하였다.

만약 보도연맹원에 대한 이승정권 최고위층의 학살지시가 없었더라면 보복학살의 악순환이 훨씬 덜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경험적 사례를 우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주기독교방송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충북 괴산군 소수면에서는 지서장과 의용 소방대장이 학살명령에도 불구하고 200명을 살려주었다. 결과적으로 인민군 점령기나 국방군 수복 시에도 아무런 학살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⁴⁾

3) 정희상은 30만으로 서중석은 최대 10만으로 보고 있으나(서중석, 1999:607)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알 수 없다. 정희상은 평택이남의 전원에 해당하는 30만이 모두 학살된 것으로 추정하고, 서중석은 일부 유족회 등에서 밝혀낸 자료를 중심으로 10만 수준으로 주장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학살명령이 대한민국 최고위층에서 내려졌고, 학살이 평택이남의 경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4·19이후 유족회 조사 등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이긴 하지만 관할 지서장 등이 학살을 시행하지 않은 곳도 있고, 일부 도망 등으로 모면한 사람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정희상은 과다추정 서중석은 과소추정이라 볼 수 있다. 20~25만 수준으로 보는 것이 보다 가까운 추정이라고 여겨진다.

4) 청주기독교방송국 '보도연맹을 기억하십니까?' 1부, 1994, 서중석(1999:607)에서 재인용.

2) 형무소 수감자의 집단 학살

1999년 12월 16일 미국 국립문서기록보존소에서 비밀 해제된 한국전쟁 관련 문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1950년 7월 4일에서 6일까지 1800여명에 이르는 대전형무소 정치범이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되었다.⁵⁾ 이 같이 6.25전쟁 초기에 형무소에 있던 좌익 수감자들이 최고위층의 지시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학살되었다. 당시 형무소 재감자는 3만 7천 여명이었는데 평택이북 재감자 1만7천을 제외 한 2만 명이 학살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재감자에 미결수는 포함되지 않아 거의 기결수 숫자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결수도 대부분 처형된 것으로 보여 실제 형무소 재소자의 학살은 2만을 훨씬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경우 1402 명(김삼웅, 1995:166-167), 대전의 경우 약 3천명이 학살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중석, 1999:584-586). 부산의 경우 기·미결수를 합하여 약 6천 명이 학살되고 불심검문 등에 체포된 혐의자 등과 함께 처형되어 영도 동삼동 골짜기, 김해 대동면 신어산, 사하구 부평동 삼박골짜기, 송정동 구더포와 광어촌 사이 골짜기에 매장되고, 일부는 오륙도와 영도 앞 바다에 철사로 묶인 채 수장되었다. 이들 시체가 대마도에 밀려와 어장에 걸려 어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정도로 대규모였다(김상웅, 1996:105-107).

국가보안법 피의자로 재판중인 통일일꾼이었던 손병선이 재판정에서 개진한 모두진술은 민간인 학살의 체험과 통일일꾼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잘 보여 준다.

저의 아버지는 8·15해방 이후 조국의 진정한 자주독립과 통일을 위하여 활동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옥살이를 했으며 출옥 후에는 고향인 충북 영동에서 부산의 산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제가 23살 되던 때에 동대신동의 산 위 저희 마을 옆 초량 공동묘지에는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미제 G.M.C.트럭이 한차 가득히 부산형무소에서 처형된 사상범들을싣고 와서 가마니로 덮어놓은 것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도 이 모든 비극이 해방 이후 조국이 분단된 까닭이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반핵평화운동연합, 1992:2).

3) 남한에서의 미군 양민학살

6.25전쟁 초기 남한 땅에서의 미군 양민학살은 노근리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 현상이었다. 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진주 출신의 어느

5) 발굴된 문건은 주한 미대사관 육군무관 밥 에드워드 중령이 작성해 보고한 '한국 정치범들의 처형'(2급 비밀)과 '한국 육군 헌병에 의한 처형'(3급 비밀) 등 2건이며 처형 현장을 찍은 사진 18장과 7장이 별도로 첨부돼 있다. 에드워드 중령은 50년 9월 23일 보고한 '정치범들의 처형' 문서에서 1950년 7월 첫째 주 사흘 동안에 걸쳐 대전형무소에 수감중인 정치범 1800명이 집단 처형됐다고 보고했다. 이 문서는 또 "처형 명령은 의심 할 바 없이 최고위층에서 내려졌다"고 밝히고 있다(『한겨레』, 2000년 1월 7일).

그 교수의 전쟁체험담을 들어보자. 전쟁 초기 그의 가족은 어느 초등학교에 머물렀다. 그런데 갑자기 미군 비행기 두 대가 그 초등학교에 기총사격을 가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인 의령지역으로 긴급히 피난지를 옮겨 다시 그 지역의 어느 초등학교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런데 또 다시 미군 비행기가 초등학교를 사격해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이 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곳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산골짜기로 숨어 들어갔다. 그러나 산골에서도 집이 쉽게 노출되는 지역은 곧 바로 미군비행기의 표적이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산골짜기의 외딴집에 피신하여 폭격을 피할 수 있었다.⁶⁾

이러한 전쟁 체험은 미군비행기의 무차별 폭격에 의한 양민학살이 특수한 조건에서 특수하게 이루어졌다기보다는 6.25전쟁 초기 남한 땅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미군의 양민학살에 대해서는 "공산당을 혐오와 불신으로" 묘사해왔던 『뉴욕타임스』 대구특파원까지도 시인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공산당이 그들의 고향과 학교를 세워둔 채로 퇴각한 반면, 가공할 무기로 싸우는 유엔군이 일단 주둔했던 도시는 까맣게 하고(초토화하고) 떠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공산당은 심지어 퇴각 중에도 도덕적인 승리를 기록했다.⁷⁾

이번에 세계적인 쟁점으로 된 노근리 학살사건도 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1950년 7월 25일 충북 영동 황간면 노근리의 양민을 학살한 쌍굴학살 사건의 진상규명 관계자인 정은용씨의 진술은 전쟁 중 미군의 남한 내 양민학살에 대한 조직성, 공식성, 비우발성, 명령성, 체계성 및 범죄성을 잘 말해 준다.

그들이 피난시켜 주겠다고 동네 사람들을 목적 의식적으로 모은 점, 폭격기와 공동작전을 펼친 점, 굴다리에서 사흘간 계속 총질을 해댄 점 등을 볼 때... 그래서 현장의 미군이 말했다는 것처럼 미군은 실제로 '의심나는 피난민은 모두 죽여라'는 명령을 받았을 겁니다. 피난민 조사를 통해 그들은 비무장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살인을 계속한 것은 대전에서 당한 것에 대한 복수심과 피난민을 살려 둘 경우 언제 인민군들과 합세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 일단 '학살'을 시작했으니 '전멸'시켜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오연호, 1994:44; 정은용, 1994).

이러한 정은용씨의 추론은 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래의 99년 9월 30일자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이를 확인하였다.

6) 1999년 10월 27일 필자와의 면담.

7) 『뉴욕타임스』, 1951년 2월 21일자; I. F. Stone, 『비사 한국전쟁』, 신학문화, 1988, 276쪽에서 다시 옮김.

◇ 1950년 7월24일 미 1기갑사단 명령(당일 오전 10시 휘하 8기갑 연대 통신문): 피난민이 (방어)전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라. 넘으려 하면 그가 누구든 발포하라. 여자와 어린이의 경우 분별력 있게 대처하라.

◇ 7월26일 아침 미 8군 본부 통신명령: 반복하지 않겠다. 언제 어떤 피난민도 전선을 넘는 것을 허용하지 마라.

◇ 7월26일 미 보병 25사단 통신문: 사단장 윌리엄 칸 소장은 전투지역에서 움직이는 모든 민간인은 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발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 7월27일 미 보병 25사단장 윌리엄 칸 소장 (재차) 명령: (남한 양민들은 한국 경찰에 의해 전투지역에서 소개됐기 때문에) 전투지역에서 눈에 띠는 모든 민간인은 적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에 따른 조처를 취할 것이다.

참전 병사들은 또 “중화기 중대장이었던 멜번 체들러 대위가 상급자와 연락을 취한 뒤 굴다리 입구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발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으며, 유진 헤슬먼은 “체들러 대위가 ‘모두 없애버리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대령으로 대대를 지휘했던 허버트 헤이어(88)는 “총격사건에 관해 알지 못하며 그런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고 발뺌했으나, 참전 병사들은 “헤이어 대령이 당시 작전을 하급자에게 위임해 놓았다”는 상반된 증언을 했다. 역시 참전 병사인 텔로 프린트는 “나와 다른 병사들도 미군의 공습을 받게 돼 피난민들과 함께 배수로로 몸을 숨겼다”며 “누군가가, 아마도 미군 병사들이, 우리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미군의 양민학살이 상부의 공식적인 명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공식문서로 재확인됨에 따라 전국 여러 곳에서 유사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청과 증언이 쇄도하였다.⁸⁾ 충북 영춘 곡계골에서도 1951년 1월 20일 4백여명이 학살된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당시 폭격장면을 직접 목격한 김옥이씨의 증언이다.

폭격 있기 하루 전에 피난민들이 굴에서 나오는데 한 3-4백 명은 죽히 됐다..

8) 최근까지 보고된 미군의 양민학살 주장은 아래와 같다. 경북고령군 고령교 피난민 다수사상,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2리 약 300명 사망, 경북 울릉군 독도 150명 사망, 충북 예천군 보문면 신성리 약 50명 사망, 충북 예천군 판교면 판교리 10명 사망, 충북 영동군 황간면 121명 사망, 전북 익산군 익산면 이리역54명 사망, 경북 구미 형곡동 100명 사망, 경북 의성군 금성면 17명, 경북 칠곡군 외관읍 외관교 폭파 피난민 다수 사상, 경북 포항시 60명, 경남 함안군 군북면 30명 사망, 경남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30명, 경남 사천시 곤명면 50명 사망, 경남 마산시 진전면 83명 사망, 경남 창녕군 창녕읍 초막촌 80명 사망 등이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폭격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서 다시 모두들 그 굴로 들어갔다. 그러자 말자 미군정찰기가 와서 정찰을 하고 가더니 30분쯤 있으니까 또 다른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해댔다⁹⁾

노근리 양민학살을 바탕으로 미군의 양민학살에 관한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겠다. 첫째, 노근리 양민학살은 미군이 저지른 수많은 양민학살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둘째, 미군의 양민학살은 비무장 피난민인 줄 뻔히 알면서도 무차별 비행기의 기총사격과 폭탄투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많은 피난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미군은 먼저 정찰기로 정찰한 이후 곧 이어 폭격기를 보내어 폭격을 감행하는 형식이었고, 때로는 정찰기에 의한 기총사격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민간인 무차별 기총사격은 미국 <CBS방송>이 2000년 6월 5일 보도한 미 육군 조사단이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찾아낸 미 공군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터너 로저스 공군 대령이 남긴 이 기록은 “육군은 아군 진지로 접근해오는 모든 민간인들을 향해 기총소사를 가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는 이에 부응해 왔다”고 적고 있다한다. 육군은 “북한군들로 이뤄졌거나 혹은 북한군이 통제하는 대규모 민간인들이 미군 진영에 침투하고 있다”며 민간인 사격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CBS>는 전했다(『한겨례』, 2000.6.7). 셋째, 아군 땅이라고 간주한 남한에서 양민학살이 이러한 데 적군 지역이라고 간주된 북한지역에서의 양민학살은 오죽했겠는가라는 의문은 논리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실제 평양시는 미군의 초토화작전 때문에 당시 공공건물 두 채 만 남아있었고, 모든 거리는 혈거인의 주거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증언할 정도였다. 또 원산은 해상포격이 하루도 빠짐없이 2년 이상 지속되어 미 해군사상 최장기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넷째, 양민학살은 적과의 전투행위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결코 우연적이고 개인적인 실수나 순간적인 판단착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노근리 사건에서 확인되었듯이 사단장의 작전명령과 같은 공식적 지휘계통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다섯째, 94년부터 정은용씨 등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미국에 4차례 이상 진상규명과 보상을 청구했고, 남한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촉구했고, 『한겨례』, 『말』지와 같은 국내 진보언론이 이를 제기했으나 모두 묵살되었다. 이후 AP통신 끝, 미국의 언론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기까지 미국은 부인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제3세계의 언론이나 목소리는 철저히 잠재우고 미국의 언론이 세차게 문제제기를 하자 겨우 미국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미국 패권주의를 이 변을 계기로 다시 확인하였다.

4) 토착공산세력과 퇴각하는 인민군의 양민학살

전쟁 초기 좌의 측의 학살은 크게 세 주체에 의하여 행해졌다. 북한인민군,

9) “제2의 노근리--충북 영춘 곡계골의 4백 원혼: 미군이 피난민 시체더미 촬영해갔다. 학살의 증거를 공개하라”(월간 『말』, 1999년 11월 호).

빨치산, 토착 공산세력이다. 이들의 학살은 시기별로 그 특색을 달리 한다.

인민군이 진주하기 전이나 진주 직후에는 주로 토착 공산세력이나 보도연맹원의 가족들에 의해 보복차원에서 우익인사에 대한 학살이 진행되었다. 이 경우 재판 등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는 즉자적인 보복학살이었다. 이 경우는 대부분 개인적 보복 수준이기 때문에 소규모이어서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수사국에서 펴낸 『좌익사건실록』에 의하면 8월 하순 경남 남해군 창천면에서 보도연맹 유가족 70명과 치안대가 경찰 5명 등 7명을 학살하고, 8월 4일 경남 사천군 사천면에서 치안대원이 순경 1명을 살해하였다. 7월 20일 순창군 북흥면에서 108명의 우익인사, 25명의 경찰, 920명의 일반인에 대한 집단학살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상웅, 1996: 139).

이후 인민군이 진주하면서부터 원칙적으로 인민재판 등 재판에 의한 학살과 북한 법에 따라 반동파 인민의 적으로 규정된 사람들에 대한 학살이 절제된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는 정치보위부가 주도하고 인민위원회, 자위대, 민청원, 여맹 등이 가세하는 형식이었다. 경남 사천군 용현면 신북리의 겨우 인민위원회와 치안대장이 중심이 되어 경찰관, 반공연맹원, 국민회지부장, 군인가족 등 ‘악질반동분자’를 체포하였다 한다. 이 기간동안은 피학살 보도연맹원 가족들이 보복으로 경찰, 그 가족, 구장, 반장까지 인민재판에 불여 학살하였다 한다(장미승, 1990: 190-192).

이 기간은 그나마 법과 규정에 따른 절제된 학살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북한 내무성은 공식적으로 “인권존중과 구타, 신문 등의 비인간적 악행을 금지할 것”을 교육하였다.¹⁰⁾ 국회발언에서 홍창섭 의원과 김성칠 교수는 이 시기 인민군의 절제된 모습을 잘 서술하고 있다.

“놈들이....무력전에는 졌는데 사상전에는 이겨야겠다고 해서 대단히 민심을 사려고 하는 전술을 썼단 말이에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부녀자 강간을 안 할 것, 소를 잡아먹지 않을 것, 죄 없는 사람을 잡지 않을 것. 이러한 3대 원칙 하에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사람들은 대단히 괴뢰군이라든지 중공군의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감탄하고 있다”¹¹⁾ “그러므로 인민군들도 대체로 질이 좋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기에 따라서는 반드시 사회가 부패하고 군이 부량화하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는 확증을 잡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김성칠, 1993: 268).”

그러나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져 인민군이 퇴각하는 시점에서는 비록 이승만 정권의 양민학살 정도는 아니지만 무절제한 학살이 만연하였다 한다. 형무소

에 수용된 우익이나 악질반동분자 등이 대거 학살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만 알려지고 있다.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5,500명 중 1,557명(정근식, 1992) 또는 471명이(대전형무소 비문) 학살되었다하나 정확한 숫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던 2천 명 중 미군정 하 지사와 순천시장 등 70여명이 학살되었고, 이어 2차 학살도 있었다. 담양에서는 빨치산이 유엔군을 환영한 주민 약 60명을 학살하였다(정근식, 1992). 김삼웅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9월부터 학살이 자행되었는데 무안에 감금되어 있던 우익 80명, 목포의 미곡창고에 수감된 300명, 정읍의 25명이 학살되고 무주의 유치장 수감자 84명이 용포리 하늘바위에서 학살되었다 한다(김삼웅, 1998: 170-173). 고양군 금정굴의 1천 명에 가까운 대량 양민학살은 9월 20일 경 내무서를 공격하려다 발각된 우익학생 비밀결사체인 태극단원 38명이 좌익에 의해 처형된 것이 발단이 되었다(『한겨레』, 1995.10.23).

좌익에 의한 피학살자 수는 공식추계에 의하면 남자 97,680명, 여자 31,256명 등으로 합계 128,936명이라고 한다.¹²⁾ 또 남한의 공보처 통계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인민군에 의한 남한 민간인 피랍자 수는 82,595명이다. 그러나 1959년 외무부 정보국장 이수영의 주재로 열린 피랍자명부 파악에 대한 대책회의에서 이수영은 이 명단을 국제적십자사에 그대로 보고할 수 없음을 밝히고, 이러한 오차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보처 통계국장은 납북인사 82,595명의 통계는 공산당의 죄악상을 폭로하기 위해 비 민간인인 군인과 경찰을 포함시켰고, 인명 중복이 있었고, 행방불명자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피랍인사 위주의 통계가 아님을 밝혔다. 결국 82,595명은 군인, 경찰 등 비 민간인과 행방불명자까지 포함시킨 수치임을 실토했다.¹³⁾ 이러한 통계의 자의성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이 낮아 그 수를 추정하기가 힘들다. 당시 북한은 9·28 당시 미군과 남한 군에 의해 피랍된 숫자가 14,112명인 것으로 국제적십자사에 통보했다.

5) 남한 군·경의 무차별 학살

6.25전면전을 체험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인민군보다는 남한의 국방군이나 경찰의 무차별적인 학살과 횡포에 대하여 많은 일화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사실을 할리데이와 커밍스도 뒷받침하고 있다.

컷포스는 이 시기 이승만 군대의 활동은 ‘전투라기보다는 대량학살’이라고 결론짓는다. 한 미대사관 직원은 1950년 9월 이승만 정권의 남한에서는 ‘아마도 10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다고 기록했다. 이 숫자는 전쟁 전기간에 걸쳐, 남북한을 통틀어 공산군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미국이 주장하는

12) 『북한 30년사』(김학준, 『한국전쟁』, 박영사, 1989, 345쪽에서 다시 옮김. 또한 권영진, 「6·25살상 다시 본다」, 『역사비평』 1990년 봄호, 302쪽에서도 재인용되어 있음.

13) 대한민국외무부 외교문서 제1회 공개자료 : 분류번호 729.5 일련번호 146, “한국전쟁시 피납치인 명부관계, 1954”(마이크로 룰번호 G-0001, 후레임번호 1065-1138).

10) 북한내무성 문화국, 『해방지구에서 새로 선발된 내무서원들을 위한 학습자료집 1』, 장미승(1990:192) 재인용

11) 『국회속기록』 제11회 22호, 1951.7.10

최고치 인원보다 훨씬 더 많다(커밍스·할리데이, 1990:148).

이 미국대사관 직원이 말하는 10만 명 수준은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1백만 학살 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 당시 상황의 일단을 전해 준다. 또 당시 어느 한 목격자의 증언은 소름끼치는 장면을 잘 그리고 있다.

1950년 …늦은 가을… 미아리 뒷골목에선 한낮인데도 하나는 군인 또 하나는 청년 이렇게 두 젊은 사내가 젊은 아낙 한 분을 … 때려죽이는 살인 만행이 벌어지고 있었다....그렇게 쓰러졌던 아낙은 피를 머금은 채 ...두먹신처럼 일어서며 울부짖는 것이었다. “그분이 북쪽으로 갔는지 남쪽으로 갔는지 내 어찌 아느냐”고 항변한다. … 이렇게 몽둥이 들고 내려치기를 서른 번 남짓 마침내 지는 해와 함께 그 몽둥이 짐질 소리도 그 아낙의 비명소리도 더 이상은 아니 들려왔다(백기완, 1994:121~122).

세계 최장기 사상범으로 수감 45년만에 석방된 김선명씨의 경우 “50년 김씨가 월북하자 그의 아버지와 누이는 국군에 총살당했고, 살아남은 김씨 가족들은 그 피해의식에 짓눌려 아예 김씨를 잊으려 했다”¹⁴⁾는 진술에서 보듯이 부역자나 그 가족에 대한 학살과 억압은 적법한 재판도 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몇몇 대표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학살 양태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임시수도였던 부산이 학살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급하였지만 약 6천 명의 형무소 수감자가 학살되고 부역이나 좌익혐의로 수만에 달하는 양민이 학살되었다. 6월 하순부터 현병, 경찰, 특무대, 청년 방위대들이 전시가지에 걸쳐 불신검문이나 가택수색으로 좌익혐의자를 잡아갔다. 아무런 심사기준도 소명기회도 없었다. 7월 초부터 9.28수복까지 3개월 동안 부산 전체 가구를 무려 3번이나 저인망 식으로 훑어서 수만 명을 체포하여 동광동에 있는 특무대 지하실, 유치장 등에 수감하였다가 총살, 수장 형식으로 학살하였다. 부산 인근지역에서도 울산읍 677명, 충무시 267명, 마산 188명 등의 학살이 이루어졌다. 부산출신 국회의원 박찬현은 국회에서 “수 백 명 수 천 명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의 부산의 사태는 아마 여러 만 명이 될 것이 올시다(35회 국회속기록, 1960)”라고 주장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대대적인 1만 명 이상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삼웅, 1996:105-109).

무차별 학살은 아산군 신창면 신창지서주임이던 유해진의 학살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150명의 양민을 학살한 혐의로 서울지검에 입건되었는데 그는 학살이 지나친 것이라 항의하는 박모 순경을 학살현장에서 총살시키겠다고 위협하였으며, 이 가운데 살아남은 이윤희 소녀의 경우 아버지가 6.25때 행방을 감춘 것 때문에 그의 조부모, 어머니, 4살 난 여동생, 2살 난 남동생 등 5명이 학살당했다. 당시 어린이는 할머니와 어머니에 업힌 채로 줄에 묶여 살해당하였다. 그는 학살

에 그치지 않고 정부 양곡을 도용하고, 좌익가족을 첨으로 삼고, 1.4후퇴 때에는 부하들에게 마을 부녀자를 농간하도록 하였다. 이후 이 지서 차석인 곽문석경사에게 이를 문자 그는 조금도 죄의식 없이 “그러한 일은 비단 신창지서뿐 아니라 전국 어느 곳에서도 안 일어났겠는가”라고 반문하였다 한다.¹⁵⁾ 이러한 무차별적인 학살이 전국에 걸쳐 보편적이었음이 국회의원의 대 정부 질의에서도 뒷받침된다. 엄상섭 의원은 “통비라는 불확실한 혐의만으로 순경이 일가족을 총살”하고, 변진갑 의원은 “제2국민병 안 나온다고 죽이고, 소집불응에 죽이고 그 어머니까지 밥을 잘 못해준다고 사살”하였다 한다(서중석, 1999:641).

3. 6.25전쟁 후기의 양민학살

6.25전쟁은 9.28수복을 계기로 주 전선이 북한지역으로 옮겨가고 전쟁이 후기로 접어들면서 양민학살은 북한과 남한을 통틀어 전개되었다. 남한의 경우 빨치산 활동이 왕성했던 지리산 등 산간지역의 토벌작전 과정에서 일어난 제2전선에서의 양민학살, 중국군의 참전을 계기로 급조된 국민방위군의 장병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5만 여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후반기의 대표적 학살이다. 북한의 경우 40일간 북한을 점령하는 기간 미군과 남한 군경에 의한 강점기간의 양민학살과 이후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든 이후 주로 미군의 초토화작전에 의한 대대적인 양민학살이 대표적이다. 이 절에서는 남한에 국한하고 다음 절에서 북한지역을 별개의 절로 다루겠다.

1) 제2전선 주위의 양민학살 사건

정희상에 의하면 6.25전쟁 전후 자행된 민간인 학살은 1백만 명 수준에 이른다. 전남북지역 약 20만 명, 보도연맹 30만 명 등을 포함하여 함평, 문경, 대구, 부산, 함양, 산청, 거창, 충무, 거제 등 민간인 학살은 전국적·조직적·체계적인 현상이었다. 4·19 이후 거의 남한 전역에 걸쳐 구성된 유족회, 국회진상조사단의 조사 등으로 이들 민간인 학살·만행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으나 5·16쿠데타 이후 이들 유족회는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어 침묵을 강요당해 왔고 역사적 진실 또한 은폐되어 왔다(정희상, 1990; 이태섭, 1989).

거창양민학살 사건, ‘전북도의회 6·25양민학살 실태조사특위’ 위원장인 최강선의 글, 또 산청·함양 양민 705명에 대한 국군의 학살 보도 등¹⁶⁾을 보면 제2전선 주위의 양민학살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2전선의 양민학살

15) 『한국일보』, 1955.1.18일. 서중석(1999: 619, 640, 645)에서 재인용.

16) “50년 고양서 부역혐의자 대학살”, 『중앙일보』 1993. 9. 23; 최강선, “6·25양민학살 이제는 밝혀야 한다”; 산청·함양 양민 705명에 대한 국군의 학살은 각각 『한겨레신문』 1994. 1. 8 ; 1993. 6. 7

은 6.25전쟁 이후로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이미 작은 전쟁 당시에도 유격전선이 형성되어 있었고, 49년에는 대대적인 유격대 토벌이 남한군, 주로 11사단에 의해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문경, 함평, 영광 등과 같은 지역에서 양민학살이 자행되었다.

형과 사촌동생의 주검 밑에 깔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문경 양민 학살사건' 유족회장 채의진(63)씨는 10월 13일 미국의 비밀문서에서 6.25이전 유격대 토벌 과정에서 문경주민들이 학살당했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재미 사학자 방선주(66)씨가 입수한 미국 국동군사령부의 비밀문서는 문경 양민학살 사건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1949년 12월24일 오후 2시. 국군 2개 소대가 경북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 들이닥쳤다. 국군들은 마을주민 100명을 한곳에 모아놓고 공산주의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부인하는데도 아랑곳없이 국군들은 수류탄을 터뜨리고 소총과 카빈총을 쏘아댔다. 남자 43명, 여자 43명 등 86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이 가운데는 어린이와 노인, 학생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이웃 사람들의 주검 밑에서 죽은 채 엎드려 있던 14명은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았다. 집은 모두 불태워졌다. 현지 부대를 지휘한 국군 장교와 경찰은 무장공비들이 마을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상부에 허위로 보고했다.(주한 임시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비망록,『한겨레신문』1999년 10월 13일).

이에 대해서는 이미 『시사저널』(1995년 3월 23일자)의 보도가 있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6.25이전에도 이승만 정부의 양민학살은 결집을 수 없을 정도였다는 점이다. 이를 석달부락 주민 124명 가운데 86명이, 그것도 여자 41명, 국민학생 10명, 갓난아기 5명까지 단지 국방군을 환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지휘관의 느낌 때문에 학살되었다. 당시 산북면사무소 서기로 학살현장 구호활동을 펼친 천규철씨의 증언은 이승만 정부가 직접 개입해 조작·은폐했음을 입증한다. 50년 1월 17일 신성모 국방장관이 현장을 방문해 유족들에 위로연설까지 했으나 그 이후 이 사건은 공비의 소행으로 둔갑되고, 당시 문경경찰서장과 지서주임은 '공비 출몰 총살'을 막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다.

나는 학살 다음날 면장의 지시를 받고 석달부락에 들어갔는데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었다... 그 당시 공비는 예매한 양민을 대낮에 죽이는 일은 없었다(필자 강조). 공비가 죽였다면 약탈한 혼적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 군인들이 학살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뒤에 신임 문경경찰서장이 공비의 소행이라고 적은 보고문을 면에 보내와 그대로 호적에 올리는 수밖에 없었다.

제대로 밝혀진 제2전선 양민학살 가운데 문경의 학살이 6.25이전에 이루어진 학살로서 그 야만성, 무차별성, 산간지역에 걸쳐 진행된 보편성, 조작성(양민을 공비와 통비로 조작)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면 6.25이후의 대표적 보기로는 거창 양민학살이다.

거창사건은 김영삼 문민정부에서 1996년 1월 5일 공포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인 "거창사건이라 함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가 시사하듯이 1951년 2월 10~11일 사이에 거창군 신원면의 양민 719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11사단 진주주둔 9연대 3대대(연대장 오익경, 대대장 한동석, 남원에 13연대, 광주에 20연대 주둔)가 신원면 주민 약 1천 명을 신원국민학교에 소집하여 경찰 및 지방유지 가족을 제외한 전원 719명을 박산골짜기에서 집단사살한 뒤 시체를 불태웠다. 그리고는 187명의 공비 및 통비분자를 소탕했다는 전과보고까지 했다. 피학살자는 남 331명 여 388명, 14세 이하 359명, 60세 이상 359여명이었다('거창 양민학살사건 해결을 위한 청원서').

군은 이 학살을 은폐하려고 외부와의 왕래를 일체 차단하고 생존자에 발설하면 공비로 총살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사단본부에서 3월 21일 사단장 최덕신의 명의로 "학살주민의 대부분이 양민이어서 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이 밖에도 부녀자 강간, 물품강요, 재산약탈 등으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올렸다. 이에 국방장관이었던 신성모는 "외국의 원조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마당에 이 같은 비행이 외국에 알려지면 전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군의 사기를 해친다"면서 "희생자 수는 187명이며 모두 통비분자였다"고 조작했다. 이후 국회·국방부 합동조사반의 현지조사 방문단이 신원면에 들어가려는 시점에서 백두산 호랑이 김종완이 매복시킨 위장공비의 위장공격으로 조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군법회의에서 사단장 최덕신은 기소되지 않고, 연대장 무기, 대대장 10년, 소대장 이종대 무죄, 김종원 3년 언도를 받았으나¹⁷⁾ 최덕신은 대사 등으로 출세가도를 달렸고, 김종원은 대통령 특별명령으로 석방되고는 전북경찰국장으로 복권되고, 이승만은 이를 이순신이 간신배에게 모함 당하듯이 음해를 입었다고 보았다. 사단장과 연대장도 1년도 안되어 석방되었다(서중석, 1999:676).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자행될 수밖에 없는 것은 소대장 등 개인적인 잘못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구조적으로 만연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무차별성, 야만성, 조작성, 보편성 등은 다반사였다. 이에 대한 구조적 조건은 근원적으로는 이승만 정권 자체의 반민중성과 반민주성 및 분단지향성, 외세예속성 및 이들로 인한 정통성 부재 및 일본제국주의 군대를 그대로 답습한 한국군의 인적 뿌리 등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국면적으로는 1950년 6월 28일 발표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17) 이상은 김삼웅(1996:141-160)에 의거하였다.

긴급명령과 11사단의 작전명령인 견벽청야, 신성모 등 수뇌부의 음폐기도 등에서 증폭되었다. 이승만의 특별조치령은 살인, 방화, 강간, 군사·교통·통신·수도·전기 등 시설의 파괴 및 훼손, 군수품 및 중요물자의 갈취·절취·약탈과 불법처분, 형무소 재감자 탈주 방조 등 6개항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판결은 단심으로 하고, 40일 내에 언도하며, 판결시 증거확인은 생략하게 규정했다.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11사단 견벽청야 작전지침의 지시사항은 '작전 지역 내에 있는 사람 전원 총살', '공비의 근거지가 되는 가옥 전부 소각' 등이었고, 분대장급 이상에 즉결처분권이 주어졌다. 이 작전시기사 문제가 되자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의 지시로 작전지시를 "작전지역 내 주민 중 이적행위를 한 자는 간이군법회의에 의해 처단하라"로 김종원 자신이 변조하였다고 증언하였다(서중석, 1999:605, 666, 636).

이러함에도 이승만은 "희생자는 대부분이 통비자였고... 군경이 불리한 상태로 포위 당하였을 때에는 공비들과 함께 죽창을 들고 군경에 반항한 사실이 있다. 교전간에 있어 혹은 유탄에 의해 희생된 약간의 부락인들이 있음을 계기로 항간에 560명의 양민을 학살했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서중석, 1999: 676 재인용)라고 왜곡과 조작을 서슴치 않았다. 그나마 거창사건은 당시 지역출신 국회의원 신중묵의 용기와 정부 타부처와의 갈등으로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었으나 이와 유사한 수많은 지역의 양민학살은 여전히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바로 인근 지역인 산청과 함양에서도 거창학살 이전에 이미 각기 700여명씩 학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김삼웅, 1996: 142-148).

2) 국민방위군사건

국민방위군은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의 장정을 예비군으로 편입하여 경상도 지역에 강제 이송시켜 교육을 받게 하는 60만 명에 이르는 준 군대집단이었다. 이는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선이 남하함에 따라 6.25전쟁 초기 많은 남한의 젊은이들이 자의 및 타의로 의용군에 입대한 전력이 있어 이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50년 12월 16일 급조된 조직이었다. 그러나 예산이나 시설 및 수송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강제후송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할당된 예산마저 간부들이 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또 착복하여 후송 도중 무려 5만 이상, 수 만 명의 장정이 기아와 추위 및 전염병으로 폐죽음을 당하였다.

이상 6.25전쟁 후반기의 양민학살을 제2전선과 국민방위군에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이 밖에도 전쟁기간 내내 부역자와 좌익혐의자에 대한 색출과 학살은 지속적으로 자행되었다.

4. 북한지역 양민학살

북한지역에 대한 미군의 양민학살은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시기는 50년

10월 1일 38도선을 넘어 북한을 4-50일 가량 점령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고 둘째 시기는 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가 정전협상에 들어간 51년 6월 이후 정전일 마지막까지 자행된 북한지역에 대한 초토화작전에서 행해진 양민학살이다.

1) 북한점령 기간 내 양민학살

북한의 공식발표는 40여일 강점기간동안 미군의 지휘, 감독과 직접적인 적대행위에 의해 172,000여명의 북한주민이 학살되었다 한다. 이 숫자는 직접전투행위나 미군후퇴 이후의 폭격 등으로 살상된 숫자를 포함하지 않고 강점 40여일 동안 저지른 학살만을 포함하고 있다. 학살방법 또한 잔인성을 보여 집단적 생매장, 통풍이 되지 않는 건물에 감금하는 질식사, 굶겨 죽이기, 회발유와 장작불로 태워 죽이기 등 야만성을 띠었다 한다.¹⁸⁾ 이 학살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곳이 황해도 신천, 안악, 강원도 양양이다. 신천군의 경우 군내의 총인구의 1/4인 35,383명이 학살되었고 그 가운데 어린이, 노인, 부녀자들이 무려 16,234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러한 미군의 '범죄' 행위에 대해 세계의 여론이 비등하여 1951년 국제민주여성동맹과 국제민주법률가협회가 진상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했다. 다음은 이 진상조사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영국인 모니카 펠톤의(Monica Felton)의 기행문인 *That's Why I Went*와 1952년 3월 북한을 방문한 후 작성된 법률가협회의 보고서인 「미국의 범죄에 대한 국제법률협회조사단의 보고서」에 제시된 증언을 중심으로 미군의 학살행위를 살펴보겠다. 펠トン은 평양과 황해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고 또 이 황해도가 가장 참상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이곳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¹⁹⁾

이들 조사단이 황해도에서 처음 확인한 곳은 19,000여명이 살해되었다는 안악이었다. 처음 방문한 곳은 어른과 어린이들을 함께 가두어 며칠동안 물과 음식도 일체 공급하지 않고 심지어는 누울 수조차 없도록 사람을 많이 가두었던 간이 수용소였다. 그곳은 농가의 창고였었고 통풍할 창문도 없이 밀폐된 곳으로 단지 지붕과 담 사이에 있는 길다란 좁은 구멍으로 공기가 통할뿐이었다. 여기에 수백 명이 억류되어 죽었고 몇 사람만이 살아남았다.

안악군 송화리 117번지에 살다 신천의 창고수용소에 갇혀서 간신히 죽음을 면한 28살의 양연득여인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어린이 다섯과 남편을 가진 7식구였으나 미군이 강점하자 남편은 즉시 살해되고 그녀와 다섯 어린이는 어떤 창고에 수용되었다. 이 창고는 약 300여 명의 여자와 어린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이 좁은 수용소에서 밀고 밀리는 아수라장 속에서 그녀의 두 살 난 어린이는 밟혀 죽었다. 며칠 뒤 미군 두 명이 그녀를 밖으로 끌고 나와서 차례로 성폭행 했다.

18) 『조선통사(하)』, 417쪽.

19) 아래의 기술은 다음에 대부분 의존한다: (Felton, 1953); "미국의 범죄에 대한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의 보고서" (김주환 역음, 1989).

그녀는 어둠 속에 겨우 도망쳐 나와 신천이 다시 '해방'될 때까지 숨어 지냈다. 해방된 뒤에야 비로소 그녀의 네 어린이들이 그곳 창고수용소에서 불타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법률가협회보고서는 미군의 범죄행위를 아래와 같이 더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증인의 남편의 손과 귀와 코를 쇠줄로 끌어 뚫었다. 그들은 방에 있던 노동표창장을 그의 이마에 못으로 박아 붙이고 그가 죽을 때까지 고문했다. 5세로부터 25세에 이르는 11명의 우말재 가족의 자녀들은 즉석에서 총살되었다. 우말재의 며느리는 미국장병들이 그 시아버지를 고문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려고 하였다. 미국인들은 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서 나무에 비틀어 맨 다음 젖을 배고... 다음 불을 질렀다(김주환, 1989:187).

1950년 10월 25일 사리원시에서 MP완장을 찬 한 미국군인은 김창두라는 사람에게 끔찍한 살인을 감행하였다. 그는 칼을 가지고 목에서부터 아랫배까지 회생자의 피부를 깨고 산채로 피부를 벗기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하다가 잘 안되니까 그는 회생자를 돌로 때려 죽였다. 1950년 11월 11일 한 젊은 여성은 3명의 미국인들에게 강간당하였다. 이 여성은 몹시 구타당하였으며 또한 발로 채였으며 그의 목구멍에는 물을 부어 넣었다. 다른 병정들은 56세 된 노파를 강간하였다(김주환, 1989:188).

이렇게 학살된 숫자가 172,000명에 이르는지는 공식적 발표 외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군지역인 남한 내에서 부역자 혐의 등으로 자행된 양민학살의 양태를 본다면 적군지역이라 간주된 북한지역에서의 학살은 그 정도가 훨씬 심했을 것이고 여전히 야만성, 무차별성, 보편성, 조작성 등이 작용했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북한의 공식적 기록은 주로 미군에 의해 학살이 저질러진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역시 학살의 주도는 남한의 군경과 서북청년단 등이 맡았을 것이라 추측된다. 실제 강원룡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국방군을 따라 북한에 진입한 장사꾼들은 "마치 자신들이 점령군이나 되는 것처럼 칼만 안든 강도 짓을"하였다. 국회전문위원 이선교도 평양 시찰보고에서 "국군의 비행이 있고, 역시 유엔군의 비행도 다소간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여자를 능욕하는 것도... 물품의 약탈은 굉장히 형편... 평양에 있던 악질도배들이 국군하고 돌아다니면서 공산당 물건이나 뺏는다는 행위를 거듭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혼란이라는 것이 한이 없습니다(『국회속기록』 제8회 43호, 1950.11.4-서중석, 1999:750 재인용)"

2) 전쟁 소강기 북한 양민학살

1951년 초여름부터 전선은 대체로 38선을 경계로 소강상태에 빠졌다. 이 소강

상태란 지상전 전투행위의 소강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공중전과 해상전에서 절대적 우위를 지키고 있던 미군의 공습이나 핵포사격 등이 소강상태를 유지했다는 뜻은 아니다. 전선 아닌 후방에서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 생업의 현장에 대한 해상 및 공중포격에서 북한의 주민들은 살해되고, 생존수단을 파괴당하는 끔직한 전쟁체험을 하였다. 더구나 51년 7월 이후 정전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민간인과 비군사 민간시설에 대한 살상과 폭격행위는 계속되었고 정전이 실효되는 1953년 7월 27일 오후 10시 정각의 1분 직전까지도 지속되었다(Winnington & Wilfred Burchett, 1954:55).

전쟁초기 6개월 동안 미국동공군폭격사령관을 역임했던 오도넬이 맥아더 청문회 증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군이 개입하기 이전에 이미 북한의 5개 주요 도시는(평양, 성진, 나진, 원산, 진남포) 철저히 파괴되었고 "한국에는 더 이상 목표물이 없습니다"(Stone, 1988:334)라고 할 정도였다.

신의주의 폭격상황을 조카 홍윤으로부터 소상히 들은 홍동근목사는 이렇게 전한다(홍동근, 1988:119).

1950년 가을, 미군폭격기 B-29가 80대 이상 연 사흘 신의주를 폭격하고 특히 소이탄으로 폭격하여 전 도시를, 집과 사람을 불로 태워버렸다는 것이다. 신의주 20만 사람의 삼분지 이의 사람이 타죽고 도시의 80%가 잿더미가 되었다 한다. 문자 그대로 무차별 야만적 폭격을 하여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모두를 불태워버렸다. 거기 내 작은 형님과 형수님과 철이가 불에 타 죽었다. 또 수 없는 동족의 부녀자들이 불타고 내 배움의 고향이 재가되어 없어졌다. 큰 형님 말씀이 그 불기둥으로 신의주의 밤이 붉었고 낮에도 타는 연기로 하늘이 먹구름이 되었다 했다. 이를 위해 맥아더가 한국 백성들에게 '맑은 일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었던가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폭격이 동해안 최대도시인 원산의 경우 정전 1분전까지 계속되었다. 미 해군함정이 원산을 41일 동안 밤낮 없이 연속적으로 포격했으며, 현대 미해군사상 최장일인 861일 동안 포위 공격했다. 미해군소장 스미스는 "원산에서는 길거리를 걸어다닐 수 없다. 24시간 내내 어느 곳에서도 잠을 잘 수 없다. 잠은 죽음을 의미했다"라고 기술했다(커밍스와 할리데이, 1989:158-9). 1953년 3-4월경 평양과 원산의 전후 상황을 김진계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김진계, 1990:182).

평양시내 건물이란 건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모두 부서져서 허허벌판이 되어 있었다. 더구나 평양시민들은 오갈 데가 없이 부서진 집 속에 토굴 비슷하게 파놓고 살아가는데 마치 원시인들 같았다. 도시 전체가 완

진히 빈민 소굴이요 난민 소굴이었다. 식량도 동이 날대로 나버렸고 비바람을 피할 천막이나 움집조차도 없었다. 굶주리고 병든 사람이 하나 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다. 살아 움직이는 사람보다 죽어 나자빠진 시체가 더 흔했다. 아니 살아있는 사람도 반쯤은 죽어 있었다. ... 전쟁 후 원산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 곳도 평양과 다를 바 없었다. 아니 평양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 미군은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민가라도 야간에 불빛만 비치면 굶주린 개가 고기를 본듯이 공격을 했는데 나도 그런 일을 당해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

평양에 대한 초기의 대대적인 공습은 서울이 중국군과 인민군에 의해 다시 점령된 1951년 1월 3일에 행해졌다고 펠톤은 말한다(Felton 1953:116-17). 폭격은 3일 밤에 시작되어 그 이튿날 정오까지 계속되었다. 비행기는 15분 간격으로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처음에는 소이탄, 다음에는 네이팜탄, 고성능 폭탄, 그리고는 다시 더 많은 양의 소이탄과 시한폭탄을 연속적으로 투하했다. 이러한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공습 때문에 조직적인 구조작업은 불가능했다. 수만 명의 주민들이 난파된 잔해 속에 깔려 구조 받지 못하고 질식사 또는 압사했다. 국제 여명조사단이 방문한 5월까지 시체들이 치워지지 못한 채 남겨져 있었다. 수만 명의 주민이 불에 타 죽었다. 그날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 가운데는 시내의 대부분 병원들이 포함되었다. 8,000미터 상공에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적십자 표시를 해놓은 병원들도 미군의 폭격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었다.

도시주민들은 대부분 도시를 떠나야 했다. 평양의 인구도 50만에서 약 5만으로 줄어들었다. 농촌이라고 결코 안전한 곳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동굴이나 지하방공호에서 혈거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석유덩어리로 만든 신형무기인 네이팜탄은 가공스런 살상을 저질렀다. 높은 공중에서 폭발한 네이팜은 조그만 산탄으로 사방에 퍼져 지상에 있는 모든 물체를 태워버리고 사람의 살에 붙어서 몸을 불태워버린다. 시한폭탄은 철저한 인마살상용이다. 공습에 회생되거나 다친 이웃, 친지, 가족을 구조하기에 정신없는 동안 이 시한폭탄은 다시 이 구조대를 살상·파괴하는 것이다. 장마철에 평양근처의 저수지 댐을 폭파시켜 농토와 관개시설과 주위 주거지 소실, 화학전과 세균전의 감행,²⁰⁾ 문화재의 약탈과 파괴, 민간재산의 고의적 파괴, 대규모 폭격작전인 '교살작전', 500대 이상의 비행기를 동원해 북한전력공급의 90%를 차지했던 수풍댐과 발전소의 파괴 등 미군의 야수적 전쟁범죄로 인해 북한의 전 영토와 중부지역이 거의 완전 초토화되었다(커밍스와 할리데이, 1989:174).

이러한 범죄적 폭격의 혼적은 1955년까지도 그대로 목격된다.

평양역에 도착할 때까지 꽤 여러 번 정거하였지만 한 개의 역사도 제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없었으며, 철도 연변에서도 도시나 마을 같은 것을 한번도 볼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사리원만은 옛날에는 여기도 하나의 도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 볼 수 있을만한 벽돌집들의 허물어진 형체가 남아있고... 남한에서도... 인간 도살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래도 서울-부산간을 몇 번씩 왕복하면서도 이런 감정은 느껴보지 못했는데, 나는 개성서 평양까지 오는 동안에 전쟁 중에 감행된 처참한 발자국들을 보면서 전쟁의 무서운 파괴력 앞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김낙중·김남기, 1985:169).

이상과 같은 학살과 전선에서의 살상으로 최소한 북한인구의 12-15%가 죽임을 당했다(Halliday, 1990:83). 국제민주법률가협회 보고서는 이 학살과 파괴가 결코 개인적 차원에서 무작위적으로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쟁범죄였다고 규정짓고 세계법정에 출정시켜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사단은 미국정부와 미군의 최고사령부 지도자들의 완전한 승인과 계획 없이는 이 대부분의 범죄들이 감행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므로 본 조사단은 이 사람들과 이들의 범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전선의 모든 지휘관들과 국제법에 위반되는 명령을 수락하고 집행한 모든 개별적 병사들을 고발한다(김주환, 1989:206).

III. 학살주체별로 본 양민학살

학살주체는 남한측에서는 미군, 국방군, 경찰, 서북청년단과 같은 비정규무장대로 대별될 수 있고, 북한측에서는 인민군을 주축으로 한 북한점령기관 일반, 빨치산, 지방 좌익으로 대별 될 수 있다. 이를 각 주체별로 학살의 양태나 특성들을 살펴보겠다.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은 남한의 경우 피난민이 주된 대상이었고, 학살행위는 주로 비행기의 기총사수였으며 때로는 노근리와 같이 직접 피난민을 적으로 간주하여 직접적인 기총사격을 가하는 형식이었다. 시기적으로는 주로 전쟁 초기의 전선주위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전쟁후반기는 북한지역에 집중하여 양민학살이 이루어졌다. 북한의 경우 점령기간인 40일 동안은 야만적이고 직접적인 학살을 자행하였고 후반기에는 주로 북한 전역을 무차별 폭격하여 초토화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북한주민에 대한 대량학살을 감행하였다. 미군의 양민학살은 인종주의가 결합되어 상승을 기한 것이 특징이다.

국방군은 전선과 비전선에서 학살을 감행하였다. 전선학살의 초기에는 주로

20) 화학전과 세균전의 논의에 관해서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 보고서'와 『한국과 중국에서의 세균전 사실에 대한 국제과학조사단의 보고서』를 참조할 것. 보다 자세한 논의는(강정구, 1996) 2부 2장 참조.

남부전선에서 예비검속 등에 의해 좌익 의혹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군경합동으로 학살을 저질렀다. 후기에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제2전선 지역에서 11사단 중심의 유격대 토벌과정에서 대량의 산간주민을 집단 학살하였다. 이들의 학살은 6.25전쟁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11사단의 작전지시가 산간지역의 모든 주민을 적으로 간주한 것이어서 양민학살은 구조적으로 발생되게 되어 있었다. 비전선에서의 학살은 보도연맹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전 지역에 걸쳐 부역자나 공비 및 통비분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학살을 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의 특무대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데 그 특무대장인 김창룡은 공산당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양민 열 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무차별 학살은 예정된 것이었다.²¹⁾ 부산의 전 가구를 세 차례나 검속하여 수 만 명을 학살한 혐의는 사실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경찰 역시 군과 같이 대부분 일제하 일본군이나 경찰 출신으로 반공에 운명을 걸 수밖에 없는 인적 구성을 가진 집단이므로 군과 동일한 학살을 저질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찰은 집단적 학살 못지 않게 개인적 수준의 학살이나 만행이 많았다. 물론 군경 모두 자의적 학살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근거는 이승만의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다.

비정규무장대에 의한 학살은 악명 높은 서북청년단 2,300명 이상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진 강화향토방위특공대(서중석, 1999:631), 1천여 고양 금정굴 학살을 주도한 우익학생 비밀결사체인 태극단, 경북 월성군 민보단장 이협우와 같이 민보단 등 각 지역마다 조직되어 있는 자경단이나 치안단 등에 의해서 저질러졌다. 이들은 제주 4.3항쟁에서 서북청년단이 그 야만성과 무법성으로 악명을 떨친 것처럼 경찰과 군 못지 않게 널리 알려졌다. 위의 이협우는 민보단장으로 49년 칠석날 빨갱이를 원조한다는 허위보고를 받고 어린이가 대부분인 김하중일가 8명을 학살하고 재산 100마지기를 빼앗았고, 50년까지 살인, 방화, 재산약탈을 일삼아 그 희생자가 2백 명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그는 자유당 공천으로 3선 의원이 되었으나 4.19이후 사형선고를 받았다(서중석, 1999:583). 이 경우 특히 재산갈취나 여자관계 등을 목적으로 한 학살이 많았다.

학살주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은 4.3항쟁의 피해자인 일부 제주도 출신이 앞장 선 점이다. 이는 전도된 심리가 보복 형태로 발현되거나 빨갱이가 아님을 억지로 입증하려는 피해의식의 소산이라 볼 수 있다. 경남 산청에서 700여명의 학살이 저지러졌을 때 중대장은 "나는 제주도 출신인데 가족이 빨갱이한테 죽어 보복하러 왔다"하였고(김삼웅, 1996:145), 불갑산 언저리의 함평군 월야면 동촌마을 주민을 학살한 11사단 20연대 5중대는 제주도 출신이 많았는데 이들이 학살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서중석, 1999:620).

북한측의 학살주체는 인민군을 중심으로 한 북한정권기관, 빨치산, 지방좌익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민군 중심의 정권기관은 북한 법에 의거하여 재판

절차를 밟아 반동에 대한 처형을 감행하는 절제된 형식이었다. 또 공식적으로 만행을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 이후 후퇴하는 과정에서 법과 재판 및 절제적 처형은 지켜지지 않고 형무소 및 유치원에 수감된 우익반동을 학살하는 만행이 자행되었다. 지방 좌익은 대부분 보도연맹원 학살 피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보복감정에 치우쳐 인민군 진주직후 보복학살을 주도했다. 빨치산도 토벌대에 비해 학살이나 만행을 자제하였지만 때로는 산간마을 양민에 대한 학살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남과 북의 대조적 차이는 북한은 상대적으로 정권기관 차원에서는 재판과 법 및 고문금지 등 절제된 모습을 보였지만 지방좌익이나 빨치산이 야만성과 비적법성을 오히려 더 노정 시켰다. 반면 남한의 경우는 공권력인 국가기관인 군과 경찰이 비정규군 못지 않게 비적법성과 야만성, 조작성, 무차별성 등을 노정 시켰다. 이들 북한 측 학살주체에 의해 저질러진 피학살자 수는 정부의 공식적 주장인 129,000명 선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수적으로 남한 정부나 비정규무장단체 의해 주도된 숫자보다 훨씬 적다.

IV. 피학살자별로 본 양민학살

피학살자는 평택이남의 보도연맹원, 형무소 수감자, 제2전선 지역주민, 피난민, 부역혐의자, 공비 및 통비 혐의자, 국민방위군이나 불심검문 또는 가택수색에 의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도 학살의 대상이 되는 불특정 다수민간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보도연맹원 학살은 이승만 정부 최고위층의 명령에 의해 전국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행해졌으므로 20~25만에 이르는 가장 대규모적이고 체계적인 6.25이후 최초의 학살이었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보복살인의 연쇄고리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남한 내 전반적 학살의 책임은 이승만 정부 최고위층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형무소 수감자의 학살 또한 대전형무소 1800명의 학살에서 확인되었듯이 최고위층의 명령에 의해 진행되었고 전국적으로 행해졌다. 그 숫자는 2만 명으로 추정되나 미결수를 포함할 경우 1~2만이 더 추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학살 주체는 공권력인 군과 경찰이었다.

피난민은 미군에 의해 학살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은 군과 경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학살되는 경우도 있었다(김귀옥, 1999:265). 이들 피난민은 불특정다수로서 언제나 군과 경찰 및 비정규무장대의 부역 혐의자로 표적이 되어 무고하게 학살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2전선 지역주민은 언제나 공비와 통비 및 부역혐의자로 몰려 학살에 내몰렸고 아예 11사단의 작전명령은 '작전 지역 내에 있는 사람 전원 총살'로서 산간 지역 주민들을 모두 통비로 보고 학살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제2전선주민들은 아마도 보도연맹원 학살의 숫자보다 더 많은 학살을 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1) 허태영 편,『명인 옥중기』 회망출판사, 1966. 279쪽, 서중석(1999:639)에서 재인용.

좌익에 의한 피학살자는 주로 그들이 분류한 반동분자인데 이들은 주로 친일파, 친미파, 민족반역자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이 밖에도 경찰관, 반공연맹원, 국민회지부장, 군인가족 등을 지칭한다(장미승, 1992:191). 북한 지역에서의 피학살자는 북한전역에 걸친 불특정다수 인민들로 미군의 초토화작전에 희생되었고 또 40일 동안 북한을 점령한 시점에서는 주로 노동당이나 정부 기관에 종사한 사람과 좌익혐의자였다.

V. 학살행위 유형별로 본 양민학살과 학살의 야만성

학살행위 유형에는 총살, 생매장, 초토화작전, 수장, 일본도에 의한 참살, 굶어죽이기, 때려죽이기, 폭격이나 비행기에서의 기총사수 등이 있다. 초토화작전과 비행기에서의 기총사수 등은 주로 미군에 의해 사용된 학살방법이고 미군은 제주 4.3항쟁 때부터 초토화작전을 시도했으며 실제 4.3항쟁에서 약 130 마을이 초토화되었다(김영훈, 2000:181). 물론 11사단을 중심으로 한 토벌대 역시 견벽청야라는 초토화작전으로 양민을 학살하였다. 수장은 주로 부산이나 통영 등 해안 가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일본도에 의한 참수는 당시 일본군과 경찰에 복무하였던 김종원과 같은 친일파 분자들에 의해 보복성과 야만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애용되었다.

학살 자체가 야만성의 발로이지만 상상을 초월한 극도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하여 한국전쟁이 특히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양민학살이 얼마나 더러운 전쟁의 성격이었는지를 보겠다. 여기서의 양민학살은 주로 인륜적 기준에 의한 것에 중점을 둔다. 전쟁에는 모든 사람에게 야만성과 비극을 가져오지만 특히 연약한 부녀자와 어린이 및 노인에게 이를 야만성이 집중된다.

먼저 부녀자에 대한 강간 등 능욕과 관련된 야만성이다. 좌익으로 몰린 진영의 여교사는 얼굴이 예쁜 젊은 처녀들과 함께 능욕을 당하고 암매장되었는데 그녀는 다리까지 잘리었다. 또 충무·통영군 남녀 800여명의 학살은 현병무관들이 부녀자 약탈의 은폐 책으로 뺄개이로 몰아 수장한 사건이었는데 이 당시 그들은 창고에 끌려가 남녀 모두 옷을 벗긴 채 구타를 당하였다(김삼웅, 1996:169). 남원군 대강면 강석리에서 11사단 205부대는 마을 주민 60여명을 살해하고 부녀자 7명을 끌어내어 대검으로 목과 유방, 심지어 음부까지 난자하여 모두 죽였다. 이번에는 19명을 일본도에 의해 목을 두 번이나 내려쳐졌으나 죽지 않자 “더러운 놈 모가지가 왜 이렇게 질겨”하면서 장교는 세 번째 내려쳤다(서중석, 1999:620). 창원군 북면에서도 해군첩보대대장으로 황광수 수병 등이 이곳 주민과 피난민 60명을 뺄개이로 몰아 살해하면서 어린애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일본도로 내리쳐 죽이고 부녀자들에게는 젖가슴을 칼로 자르고 팔다리를 절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김삼웅, 1996:107-108). 이미 앞에서 보았지만 아산군 신창지서주임이던 유해진은 마을 부녀자를 농간하고 부하까지 농간하

게 하고 좌익 측 부녀자를 첨으로 삼았다.

이제 인간으로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인륜과 패륜의 행위를 살펴보겠다. 이에는 6.25전후 가장 악명을 떨치던 일본군 출신이고 이승만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았던 김종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여수 등에서 일본도로 사람을 참수하는 것을 즐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1950년 5월 6일 6.25전에 백골부대를 이끌고 거제도 일운면 구조리 앞 바다에 주민 1천명을 1시간 동안 찬물에 세워놓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등 서로 어려운 사이를 골라 서로 마주 뺨을 때리도록 하고 만약 세게 때리지 않으면 총개머리판과 몽둥이로 난타하는 짐승 같은 짓을 저질렀다(서중석, 1999:583). 이 같은 ‘뺨때리기’와 ‘말태우기’는 흔히 차행되던 보편적 현상이었다. 제주에서 토벌대는 주민들을 모아 놓고 시아버지를 엎드리게 하고 며느리를 태워 빙빙 돌게 하고, 할아버지와 손자를 마주 세워 놓고 서로 뺨을 때리게 하였다. 총살에 앞서 가족들을 앞에 세워놓고 총 맞아 쓰러질 때 가족들로 하여금 만세를 부르게 하기도 하였다(김종민, 1998:33).

통영에서는 죄 없는 양민 수십 명을 창고에 가두어 놓고 강제로 정교를 맷게 하고는 수장시켜 죽였고(김삼웅, 1996:108), 필자와의 면담에서 어느 육군상사는 시숙과 제수를 옷을 벗겨 강제로 정교를 맷게 하고는 덮석에 말아 굴리는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질렀다는 전언을 해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가공스런 야수적 행위는 이미 제주에서부터 알려졌다. 처녀와 총각을 불러내어 서로 정교를 강요하였고(황상의, 2000:153 재인용), 처모와 사위를 대중이 모인 가운데 정조를 맷게 하고는 쏘아 죽이기도 하였다(김종민, 1998:33). 완도 경찰은 완도읍 두암리에 살던 좌익아들을 둔 할머니의 이야기다. 경찰이 그 아들을 죽이고는 아들의 간을 꺼내 할머니 입에 물리고는 마을을 돌아다니게 하였던 일이다. 그 할머니는 반 미친 상태에서 경찰이 시키는대로 하였고 13년형을 받아 7-8년 복역 후 석방되었으나 몇 달 후 죽었다고 한다(김삼웅, 1996:119).

이러한 반인륜적 행위가 단지 6.25 때문에 발생한 것만은 아니다. 이미 일본군국주의의 악랄한 인권침해주의에 물들어 있던 친일파, 곧 민족반역자들이 반공제일주의를 걸었던 미군정과 결합하여 그들의 생사를 걸고 남한사회의 권력을 장악하면서부터 구조적으로 잉태되었다. 실제로 미군정 당시에도 Mark Gain의 *Japan Diary*에 서술되어 있듯이 경찰이 유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물론 6.25이전에도 4.3항쟁과 여수항쟁에서 보듯이 토벌대의 이러한 만행은 다반사였다. 단지 6.25이후 보다 대규모와 빈번히 일어났을 따름이다.

VI. 남북의 양민학살 양상의 상호비교

여기서는 북한정권과 남한정권의 양민학살 정책에 대한 비교와 양민학살 일반에 발견되는 대조적 특성 등을 제시한다. 상호비교는 학살의 양적 규모, 재판 등 법적 절차, 정부의 공식 정책 등에 대한 단편적인 비교에 한정한다.

먼저 양적인 비교를 해 보겠다. 남한지역에서의 양민학살은 이승만 정권에 의한 학살이 1백 만 명 수준, 좌익에 의한 학살이 공식적으로는 12만 9천 명 수준이나 이는 과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군에 의한 학살규모는 알 수 없다. 편의상 노근리 수준의 학살이 현재까지 접수된 40여 곳에 자행된 것으로 간주한다면 1,600명 수준이다. 실제 다른 곳은 노근리 만큼 숫자가 많지 않고, 미 신고 지역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미군의 경우 최대 숫자가 5천 명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지역에서는 미군과 국방군 등에 의한 40일 점령기간 동안의 학살이 공식적으로 17만 2천에 이른다. 북한정권과 중국군에 의한 북한양민의 학살은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다. 물론 중국군은 남한 내에서도 양민학살의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노근리같이 양민학살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논리는 중국군과 비교한다면 터무니없는 주장임이 여실히 입증된다. 전쟁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미군의 초토화작전에 의해 전역에서 엄청난 양민학살이 이루어졌다. 앞에서 보았지만 신의주의 경우 주민 20만의 2/3가 미군의 야수적 폭격에 의해 학살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수십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공식정책은 남한의 경우 이승만의 특별조치령이나 거창사건 등에 대한 그의 담화, 11사단의 작전지시 등을 학살을 만연하게 하는 원초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친일파, 친미파, 악질반동 등을 북한 법과 재판에 의거 처단하게 규정되어 있고 고문 등을 금지하라는 내무서 지시사항 등을 볼 때 보다 절제된 학살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후퇴상황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민학살 자체가 국가폭력에 의해 대부분 일어 날 수밖에 없었으나 그 폭력행사의 적법성, 야만성, 강도 등에서 남북 간의 차이가 커다. 남의 경우 고삐 풀린 국가폭력이라면 북의 경우는 그나마 절제된 폭력이었다.

전쟁의 경우 개인적 수준에서 양민학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매우 높다. 보다 중요한 점은 이들 범죄행위가 공식집단에 의하여 얼마나 조직적으로 조장·묵인하는 가운데 행해졌느냐 하는 점이다. 남북의 대조적인 점은 북은 미국의 '범죄행위'에 대해 세계여론에 공식적으로 호소하여 그 진상을 공개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고, 실제로 국제적인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미국이나 남한은 북한의 학살·만행을 말로는 규탄하면서도 국제진상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북간의 이러한 차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지만 일본군출신 위주로 구성된 남한군의 태생적 한계와 유격대 출신 위주로 구성된 인민군의 태생적 인민성 등도 분명 중요 결정요소일 것이다.

VII. 맷음말: 노근리의 해원을 넘어 베트남 학살의 참회로

미군의 노근리 학살이 세계적 관심이 됨을 계기로 한국전쟁 중의 양민학살이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고 풀어야 할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다. 피해 당사자나 관련자의 경우 이미 노령으로 사망하거나, 도시화로 고향을 벗어나기도 하고, 아직도 가위 눌려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원한만을 가슴에 삭이고 있고, 과거의 쓰라림을 망각 속에 묻혀 두고 싶기도 하여 한국전쟁 중 양민학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계속 베일에 잠겨 있어왔다. 그러나 문민정부에서 거창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민의 정부에서 제주4·3항쟁 특별법이 제정되어 일부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관련유가족 당사자의 끈질긴 실행의 결과물로 획득된 것이다.

노근리의 진상규명과 미국의 공식적 사죄와 배상만으로 미군의 전반적 양민학살이 매듭지어져서는 안 된다. 양민학살에 대한 역사바로세우기가 미군학살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이승만 정부, 더 나아가 북한지역에서의 학살도, 또 북한이나 좌익 측의 주도에 의한 학살까지도 궁극적으로는 규명되고 역사청산 되어야 한다. 그리고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해 자행된 양민학살 또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올바른 역사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전쟁이 끝난지도 벌써 반세기가 지났다. 베트남전쟁이 끝난지도 이미 반의 반세기를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원흔들은 구천을 떠다니면서 안착을 못하고 있다. 살아남은 유가족 역시 사무치는 원한을 가슴에 안은 채 쌓이고 쌓인 한을 풀지 못하고 있다. 또 일제의 식민지하에서 우리 조선인들이 겪은 쓰라린 과거가 아직도 종군위안부대책위원회의 수요집회가 한 주도 빠짐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되살아나면서 우리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분노는 노근리를 계기로 미국에게 향하고, 종군위안부에 이르러서는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노근리의 해원을 넘어 베트남학살의 참회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지난날에 구애되어 앞날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승만식의 역사인식이나 "과거를 닫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베트남 정부의 반역사적인 고육지계는 우리가 취할 바는 아니다. 오히려 "불행했던 역사가 전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불행했던 역사에 대한 청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이 역사적 진리를 구체적 역사 속에서 실행시켜야만 우리는 새로운 21세기를 만들고 문명사회의 진정한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정구, 1992. "한국전쟁과 미국의 세균전" 동국대학교사회조사연구소, 『동국사회 연구』, 창간호
- 강정구, 1992.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의 사회구조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 체제 건설』(서울:경남대학교출판부, 1992.12.18)
- 강정구, 1992. "해방 후 월남인의 월남동기와 계급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서울: 풀빛
- 강정구, 1996.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역사비평사, 1996
- 강정구, 1999. "미국의 한반도전략과 조선의 분단: 4·3항쟁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 고 마태오 신부, 1988. 『아, 조국과 민족은 하나인데』, 서울: 중원문화
- 고양금정굴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1999. 『고양금정굴양민학살사건 진상보고서』
- 국제민주법률가협회, 1989. "미국의 범죄에 대한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의 보고서". 김주환 역음,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 청사
- 권영진, 1990. "6·25살상 다시 본다" 『역사비평』 1990년 봄호
- 김귀옥,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민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김낙중·김남기, 1985. 『굽이치는 임진강: 민족통일의 갈망을 안고 임진강을 건너 간 한 젊은이의 열정과 고난』 삼민사
- 김동춘, 2000. 『근대의 그늘: 한국의 근대성과 민족주의』, 당대
- 김삼웅, 1996. 『해방 후 양민학살사』 가람기획7
- 김성칠, 1993. 『역사 앞에서』 창작과 비평사
- 김영범, 1999. "집단학살과 집합기억: 그 역사화를 위하여" <제주4·3연구소 설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1999.11.21) 발표문>
- 김영훈, 2000. "제주 4·3의 현재적 과제와 전망" 광주항쟁20주년기념 제4회 동아시아 평화·인권국제회의, 『부활 광주, 한반도의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로』 발제문자료집. 2000년 5월 18일-20일 구례 한국통신수련관
- 김익렬, 1994. "4·3의 진실" 제민일보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에 수록
- 김종민, 1998. "제주 4·3항쟁: 대규모 민중학살의 진상" 『역사비평』 42호
- 김주환 역음, 1989.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 청사
- 김진계구술·김웅교기록 보고문학, 1990. 『조국: 어느 '북조선 인민'의 수기(상)』, 현장문학사
- 김창후, 1993. "1948년 4·3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계간 20호, 1993년 봄
- 노가원, 1993. 『남도부』(상), 월간 『말』

- 반핵평화운동연합, 1992. 『손병선 의장 모두진술』, 서울,
- 백기완, 1994, 「내가 겪은 50년대의 서울」, 『문화과학 5』 봄호
- 서중석, 1999. 『조봉암과 1950년대-하: 피해대중과 학살의 정치학』 역사비평사
- 시성문·조용전, 1991. 『중국인이 본 한국전쟁: 판문점 담판』, 서울: 한백사
- 『시사저널』, 1995. "문경 양민학살 사건 은폐된 진실 밝혀냈다", 『시사저널』 1995. 3.23.
- 안종철, 1998. 『여순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여수지역사회연구소 편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 제1집: 여수지역 편』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편, 1998.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 제1집: 여수지역 편』
- 오연호, 1994. "6·25참전 미군의 충북 영동 양민 3백여명 학살 사건" 『말』 1994년 7월호
- 이태섭, 1989. "6·25와 이승만의 민중통제체제의 실상", 『역사비평』, 1989년 여름호
- 장미승, 1990. 『북한의 남한 점령정책』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전쟁의 이해』 역사비평사
- 정근식, 1992. 『한국전쟁과 지방사회의 갈등』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전쟁과 한국 사회변동』 풀빛
- 정은용, 1994.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 다리
- 정진상, 1994. "한국전쟁과 계급구조의 변동" 한국산업사회연구회 창립10주년기념 논문집, 『계급과 한국사회』
- 정희상, 1990.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소: 6·25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발굴르 뽀』 서울: 돌베개
- 제민일보 4·3취재반, 1994. 『4·3은 말한다 2』 전예원
- 채의진편저, 1995. 『아 痛恨 四十六年: 문경양민학살 백서 5판』 문경양민학살피학 살자유족회
- 최병수·정구도, "6·25전란 초기 충북 영동지구의 민간인 학살사건에 관한 연구 (1): 노근리의 미군 대 양민 집단살상사건을 중심으로"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 역음, 1999. 『주한미군 범죄백서: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미군범죄』 개마서원
- 한국일보 편, 1991. 『증언 김일성을 말한다: 유성철·이상조가 밝힌 북한정권의 실정』, 한국일보사
- 홍동근, 1988. 『미완의 귀향일기』 한울
- 황상익, 2000. "국가 폭력과 트라우마: 현대한국, 특히 제주 4·3을 중심으로" 광주 항쟁20주년기념 제4회 동아시아 평화·인권국제회의, 『부활 광주, 한반도의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로』 발제문 자료집. 2000년 5월 18일-20일 구례 한국통신수련관
- 커밍스·할리데이(Bruce Cumings and Jon Halliday), 1990.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태암 Cumings, Bruce. 1981 & 1990.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1 & v.2*,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Cumings, Bruce (ed.), 1983. *Child of Conflict: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53*,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Endicott, Stephen. 1979. "Germ Warfare and 'Plausible Denial': The Korean War, 1952-53" in *Modern China* v.5, no.1, January 1979

- Fein, Helen. 1990. *Genocide: A Sociological Perspective*, Sage
- Felton, Monica. 1953. *That's Why I Went*, Lawrence & Wishart
- Halliday, Jon. 1990. 「북한의 수수께끼」,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본 북한사회』, 중원문화
- McCormack, Gavan. 1983. *Cold War & Hot War: An Australian Perspective on the Korean War*, Sydney: Hale & Iremonger
-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Facts Concerning Bacterial Warfare in Korea and China, 1952. *Report of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Facts Concerning Bacterial Warfare in Korea and China*, Peking
- Merrill, John. 1989. *Korea: The Peninsular Origins of the War*, Newark: Univ. of Delaware Press
- Merrill, John. 1983. "Internal Warfare in Korea, 1948-1950: The Local Setting of the Korean War" in Bruce Cumings (ed.), *Child of Conflict: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53*.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1947. "Korea SR-2." Washington D.C.
- Winnington, Alan & Wilfred Burchett. 1954. *Plain Perfidy*, London: The British-China Friendship Association

민간인학살 문제 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

김동준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1. 전쟁의 세기에서 평화와 인권의 세기로

분단 55년, 휴전 47년만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양 정상은 14일 5개 조항의 합의문을 발표하였는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상봉했다고 전제하면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천명하였다.

그 동안 한국전쟁의 당사자인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은 채 준 전시 상태를 유지해 왔다. 이번의 정상회담은 적대의 시대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가는 도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룬다. 주지하다시피 그 동안 남측은 북이 전쟁 책임자라고 규정하면서 체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북은 미국이 전쟁의 책임자이며, 미군의 주둔과 국가보안법이 남북한의 화해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의 정상회담 한번으로 55년간 쌓인 적대의 골이 한꺼번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과거의 적대를 미래의 적대로 연결시키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확인한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과거 남북한의 전쟁과 적대로 인해 발생했던 모든 문제들을 이데올로기의 잣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21세기 민족 공동체 구성의 전망 속에서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 장기수 문제, 남북 어부문제 등 한국전쟁 혹은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전쟁 중 민간인 학살 문제는 그 피해자의 규모와 피해자의 고통의 심도 등에서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거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 장기수 문제 등과 달리 민간인 학살 문제는 전쟁시 이념적 적대의 산물이므로 중요한 과거청산 과제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을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미래지향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남북한 적대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민간인이 억울하게 죽었으며, 이데올로기의 압박 때문에 그 유가족들이 지난 50년 동안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다고 생각해 본다면, 민간인 학살 문제는 우리 분단의 역사가 낳은 최고의 최대의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화해와 협력의 마당에 아직 수백만의 유가족들이 진정으로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한 화해는 정치적인 수사로 그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남북이 진정으로 평화와 화해를 원한다면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

2. 왜 ‘양민’(良民)이 아니고 ‘민간인’(民間人)인가?

이 평화와 화해의 시대에 민간인 학살 문제를 거론할 때 우선 지난 이데올로기의 시대에 사용되었던 ‘양민’의 개념을 재고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전쟁 당시에 양민증이라는 것이 존재하였다. 그것은 전선이 교차하면서 누가 적이고 우가 우리편인가 하는 점이 불분명하게 되자, 주변의 보증을 통해 국군이 들어온 이후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협력하려는 주민들을 양민(良民)으로 분류한 것이다. 양민증은 형편없이 작은 종이조각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없으면 절대 외출을 할 수 없었다. 이 경우 좌익과 관련이 있는 가족, 의심을 받는 가족들 혹은 ‘통비분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양민증을 받지 못했다. 그 뿐 아니라 양민의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들. 특히 좌익 관련자와 그 가족들은 이 엄혹한 이데올로기의 굴레 아래에서 사실상 국민, 혹은 민족 구성원으로 대접받지 못했으며, 사실상 죽은 목숨처럼 생명을 부지해 왔다.

한국에서 빨갱이로 지목되는 것은 전근대 시절의 천형과도 같다. 빨갱이에게는 어떠한 처벌이나 폭력을 가해도 용인되고, 부녀자와 자녀들에 대한 유린도 용납이 되었으며,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해도 반발이 없었다. 그리하여 전쟁 후 지난 50여 년 동안 피학살자들의 가족들과 기적적인 생존자들은 사실상 죽은 목숨이었다. 재산을 빼앗기고 망가진 몸을 갖고서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동네가 쑥밭이 된 이후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4.3 사건의 피해자들처럼 이 상처를 잊기 위해 일본으로 밀항을 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철저하게 침묵하면서 살아왔다. 그리하여 노근리 미군의 양민학살 전이 전국에 메아리치고, 특별법이 제정되고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나마 진상규명 활동이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도 극소수의 유족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다. 목격자나 기적적인 생존자들은 이제 연로하여 거의 사망하였으며, 너무 연로하여 과거의 기억도 가물가물한 상태이다.

양민이라는 것은 사상적인 순수성, 즉 세계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한 다음 좌익을 악으로 보고 그러한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된다. 그런데 평상시는 물론 전시의 경우에도 보통의 사람들은 사상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은 취하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고, 근대 문명사회에서 이렇게 획일적인 잣대로 사람의 양심과 생각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양민, 불순분자의 구별은 적절치 않다. 그것은 어떤 가치를 절대 선으로 놓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을 불순한 존재로 규정하는 극도의 반공주의가 통용되는 한반도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규범에서 사용되는 민간인(civilians)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유격전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민간인과 무장세력과의 구별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간인을 모두 무장된 적으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만에 하나 민간인 중에서 아동이나 여성, 노약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전투 수행’ 과정에서 ‘통비분자’를 처형했다는 기준의 논리는 명분을 잃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양민이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한다면, 누가 양민이고 누가 양민이 아닌가라는 소모적인 논쟁에 또 다시 휘말려 들어가게 된다. 동시에 그러한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양민에 대한 학살은 부당한 것이고, 양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학살은 정당하다는 결론으로 유도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공권력이 저지른 불법적인 인권유린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근대 국민국가에서는 설사 간첩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처형하지는 못한다. 한국전쟁기 국민 보도연맹원이나 좌익 협의자에 대한 예비구금을 통한 학살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않는 것들이었다. 지금까지 정부가 대전, 대구 등 형무소에서의 재소자를 학살한 것이나, 전시 부역자 처벌이나 학살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그것이 불법적이고, 반 인권적이며, 반인륜적인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를 드리운 이데올로기의 굴레를 용인하는 양민이라는 개념보다는 민간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국가주의의 관점에서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 문제를 접근하고 있으며, 따라서 좌익 우익의 구분을 떠나 전시에 발생한 모든 억울한 죽음들, 특히 남북한 양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 문제를 이 자리에서 거론하고 있다.

3. 이 문제가 왜 해결되어야 하나?

1) 국가 도덕성의 회복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생한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3년 동안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인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전쟁 기념사업에서 완전히 빠져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쟁 기간 동안 한국의 군인, 경찰 혹은 우익단체에 의해 불의의 죽음을 당한 수십만, 혹은 수백만에 달할지도 모르는 피학살 민간인들의 사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문제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 전후 군의 토벌작전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 문제, 전쟁 발생 직후 보도연맹과 관련된 학살 사건, 미군에 의한 학살 사건, 대전형무소, 대구형무소 등에 수감되었던 이른바 ‘정치범’에 대한 학살 사건, 그리고 9.28 수복과정에서 발생했던 군. 경, 우익단체의 부역자 처벌과정에서의 학살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이들은 모두 좌익 혹은 좌익과 내통한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러한 처벌이 당연하고 불가피했다는 논리였다. 북측 역시 미군과 이승만에 의한 학살만 성토했지 퇴각 시 인민군이 저지른 학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나 가해자 측이 늘 주장하듯이 전쟁이 나면 적과 나가 구분되기 어렵고, 어디에서 적이 튀어나와 생명을 위협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전쟁이 발생하면 무고한 민간인이 피해를 입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이고, 특히 한국전쟁과 같이 전선이 계속 이동하게 되어 적과 아군이 구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군. 경 우익단체가 의심되는 민간인을 처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앞장서서, 국가권력의 비호 하에 재판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학살하는 것은 분명히 전쟁 범죄이며,²²⁾ 따라서 민간인 학살의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인지 밝혀지거나 처벌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이러한 전쟁범죄를 일으킨 당사자와 국가는, 피해자들로부터 아니라 평범한 일반 국민들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국가신뢰, 공권력에 대한 신뢰의 상실이다. 전쟁시 부도덕한 공권력 행사의 회생물이 된 국민들과 목격자들은 매우 약해 보이지만 그들은 어리석지는 않다. 공권력에 대한 신뢰의 철학은 범죄를 저지른 국가가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위기이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학살을 저지른 국가는 현재의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일반 사람들과 격리시키며, 공식 역사해석을 통해 그들의 기억을 조작한다.²³⁾ 학살이라는 국가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의 조작은 더 큰 부도덕성을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인데, 진실을 덮으려면 덮을수록,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이야기처럼 강제로 은폐하려는 측은 더욱 더 무리한 정책과 은폐 작업을 시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

22) 전쟁범죄는 전쟁법 혹은 전쟁규칙을 위반한 것인데, 전쟁법이나 규칙이라는 것은 만 프레드 락스가 말한 것처럼 '전쟁이 형성하는 특별히 허용된 상황'에서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잔혹은 살인행위나 대량학살로부터 전쟁을 구별하기 위해 이미 19세기부터 전쟁의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그것이 최초로 거론, 구체화된 것은 1907년 '육전에 관한 헤이그 협정'(Hague Convention on Land Warfare)에서 였다. 이 협정에서는 독성 무기 사용금지, 포로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저항력없는 마을, 도시, 거주지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과 폭격 금지 등이 포함되었다. 이후 1918년 베르사이유 협정, 1949년의 전쟁법에 관한 제네바 협정, 및 그것을 개정한 1977년의 제네바 의정서(Geneva Protocols)로 발전되었다. 특히 대량 학살(genocide)에 관해서는 1948년의 '대량학살에 관한 처벌과 방지에 관한 협정'(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the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에 앞서 제2차 대전 전범 처벌을 위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유대인 학살을 저지른 나찌 전범들을 처벌하였다.

23) Herbert Hirsch, *Genocide and the Politics of Memory*,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p182

이다. 한국에서 4.19혁명은 결코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광주 5.18의 경우도 그러했지만, 지금까지 민간인 학살의 역사에서 사망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불분명하고, 왜 이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가에 대한 정부나 민간차원의 설명은 아직 제기되지 않고 있다. 당시 군 통수권자였던 대통령과 각료들은 모두 사망하고, 학살부대의 상급 책임자인 사단장, 연대장 등도 상당수 사망하였다. 전쟁 후 이들은 공비토벌 작전, 한국전쟁의 영웅이 되어, 각료, 국회의원, 기업체 사장 등을 거치면서 온갖 기득권을 누려왔다. 이들의 공식 기억에는 양민학살 사건은 완전히 생략되어 있다. 이들의 어떤 회고록에도 당시의 군이 작전 수행과정에서 의도적, 비의도적이든 민간인에 대해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군과 정부, 그리고 당시 지휘계통에 있었던 사람들은 만약 이러한 민간인 학살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심각한 도덕적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 측은 물론 당시 권력층 혹은 군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이 공식적으로 유포한 한국전쟁에 해석이 혼들릴 경우 반공주의 이념이 혼들리고, 동시에 그 동안 누려온 기득권이 심각하게 위협당 할 것을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쟁 50년을 맞이하여 학살의 직접적인 가해자들도 거의 사망하였고, 목격자나 피해자들도 거의 사망한 이 점에서 이제 4.19 당시 비등했던 유족들의 분노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누구도 가해자를 처벌하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왜곡된 것을 바로잡자고 주장한다.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피해자의 영혼을 달래는 첫걸음이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국가의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고 사회의 건강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노근리 사건에 대해 미국 측이 입장변화를 보이는 것을 보면, 국가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새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비밀을 갖고 있거나, 국가가 국민 일부의 고통과 한을 강제로 억누를 경우 그 국가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고, 구성원의 마음에서 우리나라 지지와 동의를 구할 수 없으며, 국가가 시행하는 권력의 행사나 정책적인 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 21세기 선진국이라는 것은 곧 국민의 조그마한 생명과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국가일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된 남북한이 21세기 문명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과거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전쟁 피해자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2) 인권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그런데 우리가 시방 과거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미래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놓지 않으면 제가 미운놈은 빨갱이라 해 가지고 다 죽여도 호소할 곳이 없단 말이예요"²⁴⁾

“이런 천인공노할 사건을 덮어두고 억울하게 당한 우리만 못살게 구는게 벼룩이 되버리니까 군인들이 사람 귀한줄 모르게 되었을 테지...”²⁵⁾

모든 형태의 전쟁 혹은 대량학살(genocide)은 인간을 동물로 전락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인간이 얼마나 인간에 대해 잔인해 질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야만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권의 박물관이다. 오늘날 여러 형태의 반인권적인 사례가 언급되고 있지만, 국가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저지른 폭력, 그리고 정치권력에 의해 조장된 인종분규나 종족 갈등으로 인한 대량학살이어야 말로 20세기 문명을 야만으로 떨어뜨린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물리력의 독점 기구’로서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막는 일이야말로 노동인권, 여성인권, 소수자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걸음이고, 이 첫걸음을 회피하는 모든 인권 운동이나 인권 담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즉 국가의 자의적 권력행사의 유혹을 막아야만 사회 전 영역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한국전 당시 미군들은 아시아인들을 국(gook)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당시의 한국인들을 하나의 동물로 취급하는 인종주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제주도 4.3 항쟁, 여순사건, 그리고 전쟁 시 한반도 전역에서 대량 학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들은 모두 피해자들을 하나의 벌레처럼 취급하였다.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행동들이 동족인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졌다. 그것은 국가의 최대 치부이며, 군부의 치부이자, 인간의 치부이다. 그것은 도덕과 윤리, 문명과 교양이라는 단어들이 전쟁 상황 속에서 얼마나 사치스러운 개념인가를 보여준다. 인종주의, 종족주의, 광신적인 반공주의는 모두 이러한 비인간화된 행동을 부추기는 배경이 된다.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논리는 곧 “정치적 반대세력은 죄도 새도 모르게 없애도 좋다”는 논리로 돌변하여 군부독재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의 논리적 기초가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60년대 말 베트남에서의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이나 80년 5.18 광주에서의 공수부대의 학살 사건은 모두 한국전쟁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은 역사의 희생물이 되기 쉽다”라는 카를로스 로му로(Carlos Romulo)는 경고했는데 전쟁을 청산하지 않은 결과 또 다른 전쟁을 맞이하게 된 한국에서 가장 잘 드러났다. 대량학살 현장에서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말단의 병사들에게는 분명 일차적인 잘못이 없는 것이지만, 그들이 그러한 비인도적인 행위를 그냥 따르기만 하는 한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도 이러한 비인도적인 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공권력의 칼날, 권위주의 정권의 폭력은 반드시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향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반문명적이고 비윤리적인 학살 사건이 영원히 은폐된다면 차후

국가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준 전쟁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면,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즉 전쟁 상황이라고는 하나 공권력이 이토록 인명을 경시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무기와 폭력을 국민을 향해 사용한 당사자들의 책임에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도덕성,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마음속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국가가 되어야 21세기적 문명 국가가 될 터인데, 이러한 아픈 상처를 덮어둔 채, 세계의 문명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어렵다.

3) 탈냉전 시대의 남북화해

“금후 우리가 수복해 들어갈 때에 만일 공산당 지구에 살던 사람들을 전적으로 이것을 죽일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이북 사람은 하나도 남을 사람이 없어요...”²⁶⁾

“이제 대한민국도 어른이 됐으니 나이가 맞게 서슴없이 명예회복과 응분의 보상을 하여야 통일을 위한 민주기지로서의 역량이 더욱 튼튼해 질 것이다”²⁷⁾

광주 문제의 해결이 ‘광주사태’ 당시 단순한 피해의 보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 청산과 민주화 운동의 올바른 자리 매김을 위해 필요했듯이 전쟁 피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문제는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통일의 초석을 닦는데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올해는 전쟁 50년이 되는 해이고 지난 14일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이 화해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묵은 과제를 청산해야만 남북한이 진정으로 화해하고 21세기의 미래를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 당시 적으로 마주하였던 당사자인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화해와 협력을 논의하는 마당에 전쟁의 민간인 피해자들 문제를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사리에도 맞지 않다. 정상의 정치적 화합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민족의 대 화합이 되기 위해서는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먼저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측에서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미를 아무런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 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형성된 적대의 감정들, 그리고 전쟁 중 이데올로기의 대립과정에서 남북한 양측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문제는 이제 그 결과를 어느 쪽의 잘못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한반도가 강대국의 개입으로 분단된 사실에서 원천적으로 기인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조성된 적대 국면에서 발생했던 불행한 일들에 대한 화해의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이

24) 1951년 4월 18일 국회 60차 회의 중 이종영 의원의 발언.

25) 노민영, 강희정, [거창양민학살- 그 잊혀진 피울음], 온누리, 1988. 168

26) 1951년 4월 18일 국회 제 60차 회의 석상에서 서범석 의원의 발언.

27) 방선주, “민주기지론”, [대한매일], 1999.9.13

러한 적대의 혼적들을 정면으로 대결하여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채 통일의 국면으로 나아간다면, 형식적으로는 통일이 되더라도 남북한 국민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과거 정부에 비해 여러 가지 점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광주의 희생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고, 묵역을 국립묘지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진정한 '국민의 정부'가 되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과거 청산' 문제이다. 일본 핵심 권력층의 계속되는 망언이나 과거 청산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비난하기에 앞서 한국정부는 한국의 과거 문제에 대해 과연 당당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아직 피해, 가해 당사자가 생존해 있는 지금의 시점이 가장 좋은 때이다. 10년만 지나면 이들이 거의 사망하여,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사건 자체는 잊혀질지 모르나 현정부 역시 후대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4.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

1) 정부의 기본입장 정립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민간인 학살 문제는 분명히 전쟁범죄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이다. 그것이 국제적인 전쟁 규범, 그리고 국내에서의 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법리의 차원에서만 해결되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전 당시 민간인 학살은 국가 대 국가의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유엔 혹은 국제적인 전쟁범 처벌 법규의 적용을 받기도 어렵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책임자인 한국정부, 그리고 미국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제주 4.3 사건을 비롯하여 50년 7월 14일 이후 발생한 미군에 의한 학살사건을 포함하여 공비 토벌 과정에서의 학살사건도 당시의 군사 작전권이 미군에게 있었으므로 학살의 최고의 책임 주체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군에 의한 직접적인 학살이 아닌 대다수의 학살의 경우는 당시 주권국가로서 한국정부가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작전 수행의 전과정에 미국이 개입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설사 미국이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시인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국회와 정부, 그리고 한국인들의 집합적인 의지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이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만약 한국정부가 여전히 전쟁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건, 혹은 과거처럼 좌익에 대한 학살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정리한다

면 문제개혁의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근리 사건이 제기된 이후에는 "노근리 사건의 진상규명에 노력하고 최근 많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 중 증거가 명백한 사례에 대해서는 노근리 사건후 사례별로 소홀함이 없도록 검토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왔다.²⁸⁾ 그러나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 최근 증언자의 증언이 번복되는 등 미국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초반의 의지를 완전히 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 한국 측이 항의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정부가 적극성을 보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결국 미국과 한국 정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사건들에 대한 대응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 지금까지 제주도 4.3, 노근리, 기타 합평이나 문경 등지의 유족들의 요구나 청원에 대한 대응을 종합해 볼 때,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국민의 정부임을 선포한 현 김대중 정부, 그리고 인권 대통령을 자임하는 현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남북이 화해와 통일의 길에 나서는 이 정부가 '폭도' 혹은 '통비분자'로 분류해 왔던 피학살 민간인에 대한 시작을 전환해야 하며, 그들의 억울한 죽음이 갖는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해 더 많은 고려를 하도록 촉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요구와 공감대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무관심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국민들이 좌익에 대한 불법적인 학살이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기는 했으나 지금 시점에서 또다시 거론하는 것이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의 해결은 어려워 질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역사적 기억이 완전히 왜곡되어 왔으며, 다분히 반공주입식 일변도의 교육이나 그간의 냉전적 분위기 하에서 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공개와 조사작업이 진행된다면 국민의 의식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전체적인 진실규명이다. 언론이나 학계에서 부분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이제는 그것이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언론, 인권단체나 지식인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려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유족들도 이 문제가 소송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릴 필요가 있다. 우선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가해자인 국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²⁹⁾ 이것은 국가의 학살 행동을 정당화해주는 것이며, 문제해결의 부담을 피해자가 지는 것이다. 이미 노근리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나, 제주도 4.3 관련 정부측의 시행령, 민주화 운동 의문사 관련 특별법 시행령, 거창 사건 등 처리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도 4.3이나 거창 사건

28) 문경사건의 민원에 대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의 회신, 1999.12.27

29) 김순태, "4.3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제주 4.3 연구소, 「4.3과 역사」, 1998.7.20

처럼 특별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좌익은 죽여도 좋다’는 기본 논리가 수정되지 않는 한 설사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진상조사 작업이 착수된다고 하더라도 조사 작업은 난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많고, 또 정부측은 진상규명작업은 미룬채 단순한 묘역조성과 위령탑 건립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의 인식의 변화가 없는 문제해결은 극히 미봉적인 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많고, 그나마도 성사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2) 국회차원에서의 특위구성과 특별법 제정

“한 사람이라도 국민이 억울한 형편을 당한 것은 우리 국회가 조사 시정을 의무가 있는 것이 올시다”³⁰⁾

“양민의 생명,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악질적 관련자의 엄중한 처단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제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 법률에 의한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시효의 저촉규정에 관계없이 특별법으로 가칭 ‘양민학살처리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촉구한다”³¹⁾

이미 지난 10여 년 전부터 제주도 4.3 사건 단체들과 지역언론은 토벌대에 의해 학살당한 3만 명의 주민 중 대부분은 비무장한 민간인이었다는 점을 줄기차게 주장하여 특별법 제정에까지 성공하였고, 거창사건의 경우 이미 사건 발생 당시부터 700여명의 주민이 대부분 노약자와 부녀자였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 작년에는 AP통신에 추적에 의해 영동 노근리의 피학살자들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1960년 4.19 직후 국회에서 이미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친바 있으며, 80년대 말 이후 [말]지, [한겨례신문], [항도일보] 등에서는 전쟁 중 민간인 피학살자의 대부분은 무고한 민간인이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한국정부는 48년에서 49년에 걸쳐서 발생한 제주도 4.3 사건과 거창, 산청 등지의 학살사건에 대해서만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규명 혹은 명예회복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근리 등지의 미군범죄에 관해서는 그냥 미국 정부가 하는 것을 따라가는 시늉만 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의 학살 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침묵하고 있다. 15대 국회에서는 전남 함평, 고양 금정리, 문경 석달동 등지의 유족들이 학살 사건에 대한 정부측의 조사 혹은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제 15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이 과제는 다시 16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30) 국회 제 35회 본회 19차 회의록 중에서 광상훈 의원의 발언

31)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국회임시회의 속기록 제42호.

현재 제주 4.3 사건, 거창사건 등에 한해서만 특별법에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거창사건 등’의 경우 특별법은 “유족들에게 가해진 불명예에 대하여 명예를 회복시켜 봄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 1조의 목적에 명시되어 있듯이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명예회복’에 치우쳐 있다. 즉 군의 공비토벌 작전은 정당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인식 속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각처의 피학살 유족들은 이미 수 차례나 행자부, 국방부 등에 자기 문제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사자료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국가 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적절한 배상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만 해 주었다. 그리고 ‘국회차원에서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므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협조하겠다’는 천편일률적인 대답만 했다. 이러한 반응은 국회 혹은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진상규명을 할 의지를 갖지 않는 데서 초래된 예상된 반응들이었다.

현재 시 군 의회, 도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명예회복을 추진하는 곳도 많다. 경북도의회, 경기도 의회, 그리고 함평군, 산청군, 화순군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경북도 의회의 경우 신고된 곳 중의 극히 일부만 진상조사를 마쳤는데 그것도 단순한 피해자 실태조사일 뿐 원인조사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 금정굴 사건의 경우 도의회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국회와 정부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였으며, 시 측에는 유해발굴 및 수습, 위령탑 건립을 위한 준비와 계획 수립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시 차원에서 가해자 측 관계자들의 주장을 반영하여 도의회의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시, 군, 도 차원에서의 조사는 극히 제한적인 실태조사는 가능하나, 그 이상의 진상조사는 불가능하며, 진정한 진상조사가 불가능한 만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보상 등은 불가능하다. 도의회 차원의 조사는 왜 정부에서 이 문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점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다.

결국 시도 의회에서는 특위가 구성되어 실태조사는 할 수 있어도 진상규명까지는 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 국회가 사안별로 특별법을 제정하려 할 경우, 대단히 유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야만 한다. 그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지만 공권력의 신뢰성에도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단순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현재 각 지역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요구들에 대해 사례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회 혹은 현재 구성단계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체적인 진상규명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러한 진상규명 작업과 병행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명예회복과 배상을 해야 한다. 물

론 반대편 즉 좌익과 인민군에 의한 학살도 이 기회에 함께 조사 정리해야 한다.

이미 제35회 국회에서 '양민학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부 진상조사가 실시된 바 있기 때문에 역사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과거 국회의 활동을 이 시점에서 복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국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진상규명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진실규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계의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이미 유족회나 학계에서 조사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자료들 중 확인된 것은 받아들이고 보충적인 부분을 조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군에 의한 학살의 사실이 발견되면, 미국 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제의하고, 인민군 혹은 좌익에 의한 학살의 사실이 발견되면 북한측과 공동조사를 제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가의 정보 공개

미군의 폭격에 의해 피해를 본 익산, 단양, 마산, 창녕 등지의 경우나 거창, 산청 등 국군의 초토화작전에 의해서 마을 거주민 전원이 학살당한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비교적 부담 없이 자신의 억울함으로 호소해왔고, 문제해결에서도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과정이야 어찌되었던 보도연맹 혹은 좌익의 협의로 수감, 처형된 사람들의 경우 남은 가족들이 그 동안 '빨갱이' 가족으로서 차별과 탄압을 너무 심하게 받아왔고, 여전히 정부나 주변에서도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나서지 않고 있다. 즉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이승만의 초법적인 명령이 그 이후 50년 동안 통용되는 동안 이들은 거의 숨죽이고 살아왔으며, 드러내놓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지도 않을뿐더러 피해를 입을까봐 후손에게 조차 발설하지 않고 살아왔다.

실제 전쟁 중 민간인 학살의 가장 큰 부분은 국민보도연맹 관련 피해자나 예비검속 등으로 인한 피해자, 그리고 수복과정에서 적에게 협력한 협의로 피해당한 부역자들이다. 그리고 국민보도연맹 관련자나 예비구금자의 거의 대부분은 적극적인 좌익운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국민보도연맹 결성이나 말로 사상적인 전향을 표명한 사람들이므로 국가가 아무리 전시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구금하여 살해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엄청난 배신행위이다. 그리고 설사 이들이 좌익에 동조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명령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처형한 것은 법의 위반이며, 일종의 국가 범죄행위이다. 이번 경북도의회 조사팀도 이 점을 의식하여 "조심스럽고 관심 있게 접근하였다"고 전제하여 이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의 기밀과 관련된 극히 중요한 자료를 제외하고 전쟁시 토벌작전 관련 각종 문서들, 군사재판에 관한 자료들, 초토화 작전에 대한 명령 지휘 계통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보유하는 비밀문건 등을 각 피해자들이 각각 개별적

으로 구하도록 방지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4) 국가의 공식적인 사죄, 피해자 명예회복

"국가는 인명과 재산을 빼앗긴 유가족에게 생활 안전책을 강구하라. 죄없는 양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보금자리인 가택마저 불살라 부모 잃은 유아며 자녀 잃은 노옹노파며 의지할 곳 없어 문전걸식 기하며 기한에 못이겨 기사(饑死) 한 자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하였고, 기천명 유가족은 집도 없이 방황하며 근 보명(保命)하였으나 국가에서는 지금까지 하등의 선후책도 없었으니 위자료 일백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호소한다"³²⁾

민간인 학살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인간성에 반하는 죄(crimes against humanity), 집단학살 죄(genocide), 전쟁범죄(war crime)을 구성하여 국제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행위에는 개인책임 뿐만 아니라 국가책임도 뒤따르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인을 세 번을 죽인 큰 잘못을 저질렀다. 전쟁당시의 학살이 그러하며, 60년 4.19 직후 자연발생으로 일어났던 명예회복 운동과 묘지조성운동을 5.16 쿠데타 세력이 묘를 파헤진 것이 둘째이며, 가족을 잃은 것도 억울하고 한이 맷한 일인데, 남은 가족과 자식들에게 빨갱이의 굴레를 뒤집어 썩워서 평생을 한을 품고 살게 만든 것이 셋째이다. 특히 전쟁 당시 군대가 저지른 일은 근대 이전의 왕조체제에서는 물론, 다른 어떤 문명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것이었으며, 또 이후 군사정권이 각 유족회를 용공단체로 몰아 강제해산하고 군인들이 비석을 부수고 묘를 파헤치며 개인묘로 이장하라고 요구한 것은 조선시대의 부관참시에 버금가는 야만적인 행동이며, 우리의 전통적인 효의 윤리인 죽은자를 기념하고 제사지내는 일도 막은 반윤리의 극치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무고한 민간인이 학살된 사살이 확인 되는대로 국가는 이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 비록 과거정권이 저지른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대통합의 차원에서 현 정부가 국가를 대표해서 사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학살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차원에서 그치고 처벌하지는 말아야 한다.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그들 대부분도 일종의 피해자이며,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민족 대화합의 차원에서 모두가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 시급한 것은 우선 유골수습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양 긍정굴의 경우 피해자들이 자체의 기금으로 발굴작업을 하다 현재 중단상태이며, 유골을 보관할 곳도 없어서 서울대 법의학 교실의 이윤성 교수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경산 코발트 광산의 경우 광산 입구에 수백구의 유골이 그냥 방

32) "호소문" 1960.5.25. 거창군 신원면 유가족 일동

치되어 있으며, 지금도 계속 망설이고 있다. 산청의 경우 최근 MBC 팀에서 6개의 봉분 중 하나만 파헤쳤는데도 150인 정도의 유골이 나와서 일단 발굴을 중단하고 임시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족들이 제사라도 지낼 수 있도록 유골을 수습하여 할 수 있다면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죽은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들의 영혼을 모실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 4·3 사건이나 거창 사건 등은 이 새로운 특별법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민간인 학살사건에 관한 법적인 문제점과 해결방향

강 금 실(변호사, 지평법률사무소 대표)

1. 들어가기에 앞서서

2000. 5월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사건'(이하 학살사건이라고 줄여쓴다)에 관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조사연구와 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변호인단이 구성되었고(뒤에 붙인 설명서 참조), 이 글은 변호인단 구성에 즈음하여 향후 연구되고 해결되어야 할 법리론적 과제를 정리하여보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변호인단 활동의 첫걸음으로서 법리론의 범주를 짐작하여보는 아주 초보적 단계의 시론에 지나지 않고, 충분한 합의내용과 검토결과가 축적된 성과물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이 글에서 언급하지 못한 문제들도 앞으로 얼마든지 수정, 추가, 보완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발제자 개인의 의견 뿐 아니라, 참여한 변호사들의 전체 의견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되, 발제자의 역부족으로 다소 전달상의 오류나, 미흡함이 있을 수 있음을 아울러 밝혀두고자 한다.

2.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

50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학살사건을 끄집어내어 조명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와 정당성에 관하여는 역사적, 정치사회적, 법률적인 여러 관점에서의 설명과 접근이 가능하다. 법률적 관점에서 좁게 풀이하여 본다면, 학살사건은 한국인권론에서 '실종된 원형의 복원'을 의미한다. 그 동안 한국인권론에서 분단된 남한 사회의 국가권력에 의한, 특히 군사정권에 의한 인권침해의 문제와 해결이 과제로서 제기되어 왔다면, 학살사건은 인권론의 시원으로 소급하여 분단상황의 초기, 분단구조가 전쟁을 통하여 결정적으로 구축된 시기에, 전쟁을 전후한 비상시기에, 국가권력이 군사력을 통하여 어떠한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하였는가를 밝히는 문제이다. 학살사건의 은폐된 진실과 전모를 밝히고 인권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은 단순히 학살사건 자체의 문제제기와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국가권력의 성격과 공통점, 가해자로서의 권력의 의도와 행사방식 등과 연관지어 남한 사회 인권론 전반을 재검토하게 할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따라서 학살사건은 인권론의 관점에서도 과거의 일회적인 하나의 인권침해의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분단과 군사정권의 장기적 지배라는 역사적 비극 속에서 신음하여야 하였던 남한사회 인권의 문제를 다시 쓰게 하는 거시적

인 법리론적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학살사건은 20세기를 지배하였던 냉전이데올로기와 전쟁상황 속에서 빚어진 사태라는 점에서, 그 전쟁이 단순한 내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유엔의 참전 방식을 통한 강대국의 개입을 불러와서 국제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사회 인권의 문제일 뿐 아니라, 20세기 제노사이드의 한 전형으로서 20세기 인간이 처하였던 잔혹한 인권침해상황을 밝혀내는 세계사적 인권론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점에서 학살사건에 관한 법리적 검토는 관여된 주체의 본국법 뿐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안고 있다.

위에서 이야기한 인권론의 관점보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학살사건은 그 행위자체에서 법의 문제라는 점이다. 학살은 인간집단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범죄로서의 행위 그 자체이다. 여기에서 행위라 함은 현대형법에서 인식되고 있는 범죄행위와 그 본성을 같이 한다. 법률의 차원에서 '행위란 意思에 의해 지배되거나 적어도 지배될 수 있는 행태'를 말한다. 학살사건에서 학살에 참여한 조직된 군인들의 의사에 기한 행위로 사건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이고, 나아가 그 조직된 개별자들의 의사 뿐 아니라, 그들의 의사를 통하여 관철된 군부와 국가권력의 의사를 밝혀내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점에서 현행법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지나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은 몰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일각의 논리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 이 논리는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실제로는 학살사건을 과거의 사실로만 치부함으로써 학살사건이 근본에서 법의 문제로서의 범죄행위라는 점, 그리고 그 범죄행위의 행위자 의사가 단순한 개별자 의사 뿐 아니라 국가권력의 의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거나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학살사건에 관한 법리적 접근은 사건을 법률에 의하여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위하여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학살사건의 본질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법의 문제이므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여가는 과정에서도 철저한 법인식을 바탕으로 한 접근방식이 요구되는 것이며, 그 진실규명의 과정 자체가 법의 문제인 것이다. 학살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가장 유효한 법률적 해결을 마련하기 위하여도 진실규명 과정자체에서부터 이러한 행위의 법적 성격을 인식하고 이를 기초로 자료를 조사수집하며 사실을 축적하여가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3. 법리적 접근의 전제상황과 원칙들

학살사건을 법의 차원에서 밝혀내고 해결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제되어야 할 상황과 접근방식의 원칙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는 학살사건의 법률문제는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의 不在'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접근과 해결의 첫 단계로서 사실 자체의 드러냄이라는 문제 자체

체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어렵고도 광대한 난관에 부딪쳐 있다. 어떠한 법적 조사권한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조사기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왔던 상황에서 사건이 일어난 지 50년이라는 장기간의 세월이 흘렀다. 그 50년이라는 세월은 과거의 사건을 일깨우고 기억을 축적하는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사실을 은폐하고 기억을 지워버리는 과정으로서 존재하였다. 장기간 망각 속에 사건이 묻혀있어야 하였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국가권력이 이를 은폐하고자 하거나, 적극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데에 있다. 군사정권의 기간동안에는 학살사건의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었다. 장기간의 세월동안에 관련 당사자들은 사망하거나 뿐뿐이 흘어졌다. 또한 사실 자체가 왜곡되어 허위사실을 기억 속에 강요함으로써(예컨대 문경양민학살사건에서 국군부대에 의한 학살은 공비출몰 총살로 인한 사망으로 왜곡되고 호적에 기재되었다) 일반인들의 관심밖에 밀려나 있음은 물론 강요된 허위사실로 인하여 생존한 피해자 유족들조차 아직도 증언을 꺼리는 분위기에 짓눌려 있다.

또한 '사실의 不在'를 초래한 원인은 학살사건이 전쟁직전, 또는 전쟁기간 중이라는 비상시기에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사실의 규명과 공개 자체가 어려웠다는 점에 있다. 사건에 관한 기록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문서가 어디에 현존하는지, 어떠한 증거들이 남아있는지 자체를 힘들여 밝혀내어야 하는 작업으로 남아 있다.

둘째로는 학살사건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의 개별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전쟁 전후 시기에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여러사건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단위로서 인식하여야 하는 문제라는 점이다. 학살사건의 전체를 조망하면서 문제들을 점검하여야 통일적인 법적 성격과 지위설정, 궁극적이고 포괄적인 해결방식의 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그러한 접근방식에 의하여서만 학살사건의 반인권적 본질, 국가권력과 인권침해상황의 일반론의 수립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사건들이 전체 속에서 조망됨으로써 사건들의 개별적 특성은 물론 사건들에 일관된 시대사적 본성이 드러날 수 있다.

셋째로는 학살사건은 단순히 국내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국제법의 차원에서 다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쟁중의 학살사건에는 국제전적 성격으로 인하여 사건을 둘러싸고 전쟁법 및 전쟁에 관한 국제관습법, 당시 및 현재의 한국법과 미국법, 유엔협약들, 당시 유엔안보이사회와 결의 내용과 유엔사령부의 법적 지도원칙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법체계에 대한 미시적 접근은 물론 법체계 사이의 관계와 법원리들의 비교, 입체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나아가서는 학살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입법의 작업 또한 요구된다.

4. 학살사건의 인권적 쟁점들

학살사건을 접근하는데 지표가 되는 법률적 쟁점들은 몇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 크게 보아서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의 인권문제, 가해자의 측면에서 학살사건 자체의 법적 성격, 학살사건 해결을 위한 국가의 의무 문제이다.

가. 피해자의 인권문제-'진실을 알 권리'

학살사건의 피해자 인권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당사자의 생명권박탈과 중대한 침해는 물론, 살아있는 피해자 유족들이 받는 고통 그 자체가 인권의 쟁점으로 부각되어야 한다. 학살사건은 사건 당시의 직접 피해자의 인권침해 문제일 뿐 아니라, 그후 피해자와 혈연적, 운명적 가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유족에게 인권침해 상황이 계속된다는 의미에서 '현재적 상황'인 것이다. 피해자의 유족은 학살의 진상을 밝혀내고 법절차에 호소하여 그 원한을 풀거나 풀어줄 대외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를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伸冤權'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이름과 무관하게 이는 인간의 생명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며 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국가로 성립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학살사건에서는 진상조사, 명예회복 및 적절한 배상 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탄압의 빌미가 되고 국가권력에 의해 범죄로 낙인찍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이중의 고통을 감수하여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이들은 오랜 기간 그 진상을 밝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며, 진상규명 이후의 수순이라고 할 명예회복, 배상 등의 구제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피해자로서의 인권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인권법의 일반원칙을 원용할 수 있다. 국제인권법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대규모 인권유린행위는 인간성에 대한 범죄이며, 이 때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은 인권의 보호와 보장을 국가의 근본적인 구성원리로 삼는 한국 헌법의 각 기본권 조항의 정신 및 내용에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들이다.

즉 ① 사실의 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 ② 범해진 침해에 대한 책임의 공개적인 인정, ③ 책임자의 처벌, ④ 희생자, 그들의 친척과 친구, 증인들의 보호, ⑤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과 애도의 표시, ⑥ 희생자들을 돌보는 기관의 설립과 지원, 그들을 돋는 요원의 훈련, ⑦ 침해의 재발 방지 조치, ⑧ 현금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배상(진료, 고용, 교육 등) 등이 그 내용이다. 이 가운데 사실의 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는 다른 모든 조치들의 전제이자 출발점으로, 진상규명이 전제되지 않은 조치는 사태의 형식적 무마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진실을 알 권리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진실을 알 권리'(진실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 inalienable right to the truth)는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권리침해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비인도적 취급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아르헨티나의 어느 실종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자신의 딸의 실종과 또한 그 딸의 운명과 소재지 불명으로 인해 겪게 되는 그 어머니의 슬픔을 이해한다. 청구인은 자신의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구인 자신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B Covenant)) 제7조 위반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 No. 107/1981) 위 규약 제7조 전문은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국제인권법에서는 생명권 등에 대한 침해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와 유족의 진실을 알 권리의 침해 역시 인간성에 대한 침해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제정·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이미 헌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하였고 위 규약은 1990. 7. 10. 이후 대한민국에서 그 효력을 발생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규정을 들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법원은 국제조약을 그 "통상적 문맥에 따라 성실히 해석"할 의무가 있고, 위 국제규약의 해석은 헌법의 정신 및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진실을 알 권리'를 피해자의 인권으로 정의하고, 유족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생존자와 유족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 진상규명 노력은 방해하고 탄압하는 행위는 진실을 알 권리에 대한 별개의 인권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나. 학살사건의 법적 특성-'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유린행위'

위에서 학살사건은 관여된 행위자의 범죄일 뿐 아니라, 국가권력의 의사가 행위자를 통하여 관철된 행위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학살사건의 법적 특성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유린행위'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 점에서 일반범죄행위로 인한 인권침해와 본질을 달리 하는 것이다. 학살사건은 인권의 보호책무를 지고 있는 국가 스스로 또는 국가의 후원을 바탕으로 국가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집단의 인권유린행위라는 점에서 공무원 개인에 의한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구별된다. 공무원에 의한 일반적인 불법행위는

그 공무원 개인의 국가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일탈행위인 반면,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유린행위는 체제유지 또는 정권유지의 목적 아래 강력하고 조직적인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되는 것이다. 예컨대 노근리에서 미군의 양민학살에 관한 미국정부문서는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전술의 차원에서 행하여졌으며, '전선을 넘는 것은 모두 죽인다'는 '작전명령'에 의하여 계획된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 양태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불법행위가 상대적으로 소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일회적인 침해인 데 반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유린행위는 집권세력이 인권유린행위를 계획하고 정당화하는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규모로 행하여지며,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준수해야 할 민주주의의 원칙이 국가 스스로에 의하여 송두리채 무너지고, 그 결과로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생명과 신체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가져온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대규모 인권유린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인간성 자체에 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 가운데 양민학살, 인종청소 등은 국가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국가의 존속기반인 국민을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적으로 설정하고 그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유린함으로써 국가 스스로가 국민의 통합체로서 성립하기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또한 일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정해진 구제절차에 따라 구제를 구하는 피해자에게 진상조사와 배상 등에 있어 국가가 그 산하기관의 업무를 통하여 일정한 협력과 법적 조력을 제공하나,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행위에 있어서는 그 인권유린행위를 발생시킨 장본인이 국가공권력 자체이며 이를 통하여 체제유지 또는 정권유지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침해의 중대성과 대규모성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오히려 이를 억압하며 피해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법적 구제 절차의 이용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결과로 인권유린행위의 진상조차도 인권유린행위자 자신인 국가에 의하여 오랜 시간 철저히 불법적으로 은폐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학살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법적 해결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사건의 특성이자, 핵심, 즉 국가권력에 의한 조직적 가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자료와 사실조사, 증거수집에 관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다. 학살사건 해결을 위한 국가의 의무-'진실을 기억할 국가의 의무' 등

현재 학살사건의 피해자 인권의 문제가 '진실을 알 권리'로부터 그 출발점을 삼을 수 있다면, 이는 권리의 대항축으로서 진실의 조사와 공개 및 책임자의 처벌, 배상등은 국가가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국가가 피해자들 및 사회에 대하여 지게 되는 의무로서 해석된다('진실을 기억할 국가의 의무', Set of

principles of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 E/CN.4/Sub.2/1997/20/Rev.1, Annex. II, Principle 1.). 민주주의의 재건과 인권유린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해자들과 사회 전체의 이름으로 국가에 지워지는 이러한 의무들은 그것이 완전히 이행되기 전까지 형식적인 조치로서는 결코 가벼워지거나 덜어질 수 없는 것이며, 학살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이 '진실을 기억할 의무'는 모든 국가행위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와 함께 실질적으로는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에 불과한 정권주체가 권력의 위임을 벗어나 오히려 권리주체인 인간의 인권을 조직적으로 유린하는 행위는 국가권력 자체의 남용을 넘어 국가권력의 유린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국가권력의 유린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는 국가권력의 진정한 주체인 인간이 권력을 위임한 정부에게 부과한 의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국가의 의무 관점에서 우리 헌법을 되돌아보면, 생명권, 신체의 불훼손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구제받을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인권적 쟁점으로 거론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정의와 인도주의를 추구하며 불의를 타파할 것"을 명기하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생명권 및 신체의 불훼손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정의와 인도주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책무이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전을 위하여 그 보호 및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고, 특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외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어하여야 할 책임, 즉 보호의무를 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보호의무는 침해되는 기본권이 헌법상 내재된 가치질서의 체계 안에서 그 보장의 우선 순위가 높을수록, 또 그 기본권의 침해 정도가 무거울수록 이에 비례하여 무거워진다고 할 것이다.

생명권, 신체의 불훼손권은 헌법상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고 이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자 및 유족의 진실을 알 권리(비롯한 구제 받을 권리 역시 생명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생명권 자체와 동등한 정도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 그 진상을 조사하여 가해자의 처벌과 배상/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은 결코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생명권 및 신체의 불훼손권의 침해가 외부의 침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공권력의 인권유린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그 피해자 및 유족의 구제받을 권리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나아가 대규모의 무차별적 양민학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성립과 존속

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권자에 대한 공격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국가에 의한 헌법위반이며, 그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사죄 차원에서라도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5. 학살사건의 해결을 위한 법체계의 검토

가. 국제법상 학살사건의 법적 평가와 해결가능성

국제법상 학살사건에 관한 정확한 적용법규에 관하여는 다소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전투원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은 적어도 국제관습법상 전쟁범죄를 구성하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한편 1949년 12월 문경에서 벌어진 양민학살과 같이 한국전쟁 이전에 벌어진 민간인 학살은 전쟁법을 적용할 여지도 없이 당시의 한국법상 당연히 범죄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전쟁법규로서 한국전쟁 전후 양민학살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은 전쟁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비롯하여 1907년 육전법규 및 관례에 관한 헤이그 조약과 1949년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조약의 제4조약,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약이 있다.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 그리고 무차별 공격의 금지를 대원칙으로 한 전쟁법규의 규정, 특히 국제관습법은 당연히 한국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적용되며 이를 통하여 민간인학살이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한다고 평가하고 당사자들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처럼 모든 당사자에게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관습법의 내용에 따른 법적 평가에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한국전쟁 전후에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에 관하여 구체적인 적용법규를 따지는 것은 사실상 실익이 없다. 그럼에도 이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1955년에, 한국은 1966년에 각기 1949년 제네바 제4조약에 가입하였다는 점에서 그 전 시기인 한국전쟁 당시의 학살사건에 관하여 이 조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에 유엔군 사령부는 제네바 조약 제1조약 내지 제4조약 전체를 준수하고 구속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Christopher Greenwoo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 Laws of War', A/C.6/52/3, 66항). 또한 위 조약은 상대방 교전당사국 소속의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조약이 자국 또는 동맹국 민간인이 보호를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가 여부에 관하여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국제적십자사를 비롯하여 국제법학자들 가운데에는 자국과 동맹국 민간인에게도 이 조약이 적용된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예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점에 관하여서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전쟁에서 미국은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의하여 유엔군의 이름을 빌어서 개입하였고,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한 유엔군의 참전에서도 유엔에 대한 전쟁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설정될 수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의한 유엔군의 군사작전이라고 하더라도 전쟁법이 적용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기 때문에 학살사건의 법적 평가에 어떠한 영향도 있을 수 없다.

다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양민학살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책임이다. 우선 미국은 미군이 저지른 양민학살에 대하여, 한국은 한국군이 저지른 양민학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한국군 및 미군의 전쟁수행이 유엔군의 이름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유엔(은 물론 유엔군으로 참전한 16개국 전체)가 학살행위 전반에 걸쳐 어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하는 점과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양도받아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한국군을 지휘한 미군이 한국군에 의하여 저질러진 양민학살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앞으로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나. 피해자 개인의 가해국에 대한 배상청구권

양민학살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이 문제는 개별 피해자가 당사국들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당사국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개별 피해자들이 당사국을 상대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 개인이 가해국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로는 1907년 헤이그 육전조약 제3조를 들 수 있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헤이그 육전조약에 부속하는 육전규칙 조항에 위반한 교전당사자는 손해가 있는 때에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교전당사자는 그 군대를 구성하는 인원의 일체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A belligerent party which violates the provisions [of the Regulation on Land Warfare annexed to the Convention] shall, if the case demands, be liable to pay compensation. It shall be responsible for all acts committed by persons forming part of its armed forces)

이 규정은 전쟁과정에서의 군대에 의한 국제법 위반(사실 육전규칙은 하나의 국제관습법이다)으로 피해가 있는 경우 가해국의 국가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보기에 따라 이 규정은 문언상, 그리고 그 조문의 제정과정을 통하여 전쟁과정에서 국제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개인에게 직접 가해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을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이 있다.

사실 국제법상 특정 국가의 국제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은 그 국가에 대하여 청구권(claim)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원칙에 관하여, 국제법의 일반 원칙들을 열거한 Restatement(the third) § 906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국제의무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그 국가에 대하여 (a) 당해 국가가 개인소권에 대해 국제적 재판관할을 인정하였을 때는 그 국제적 재판기구에서, (b) 당해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그 국가의 사법기구에서, (c) 국제법의 제한과 국내법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나 제3국의 사법기구에서, 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특정 국가의 국제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국제사법기구와 국내사법기구를 통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국제사법기구의 이용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전쟁 전후 양민학살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국제재판소가 설치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양민학살의 피해자들이 주요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원을 통하여 구제받는 길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사법절차 역시 명백한 인권침해의 실체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과정에서 국내법적인 제약을 받게 되어 어려움이 제기된다. 예컨대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주권면제이론에 의해 저지되기 쉽고, 가해국가 내에서 가해국을 상대로 한 소송은 가해국가 스스로 국내법률에 의하여 이를 금지할 수 있다. 물론, 가해국가가 스스로 자신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내적 구제수단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 국제인권법의 구제 원칙

국내법의 절차 또는 제도적 한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당사국의 법적 책임 그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당사국들은 국내법의 제도적, 절차적 한계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요 당사국들인 한국과 미국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이 앞으로 양민학살 사건을 둘러싼 한국과 국제사회 인권운동의 과제인 것이다.

양민학살에 대한 당사국들의 책임은 당사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국내법의 원칙이 아니라 보편적인 국제인권법의 원칙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양민학살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의 책임에 관하여는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법의 원칙 (Final report of Theo van Boven,

E/CN.4/Sub.2/1993/8, 137항)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1) 원상회복 및 명예회복
- (2) 손해배상
- (3) 가해자의 처벌
- (4) 재발의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물론 위와 같은 큰 원칙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어떤 내용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며 당사국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최근에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당사국의 실체적인 의무 뿐 아니라 그 의무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와 절차에 따라야 하는가에 관하여 새로운 인권의 원칙들이 정립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이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여유는 없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진실을 알 권리,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진실을 기억할 의무를 전제로 해서, 모든 진실을 완전하게 조사하여 드러낼 수 있는 독립적인 지위와 기능, 그리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전문적이고 중립적이며 불편부당한 국가기관이 그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여될 수 있는 당사국의 재량은 “진실을 알 권리”를 완전하게 충족시킨다는 전제 아래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들과 사회의 진실을 알 권리라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으며 당사국이 회피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진실을 조사하여 복원하고 나면, 그 다음의 실체적인 의무이행의 내용과 범위, 방법에 관하여는 당사국이 상당한 재량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Set of principles of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 E/CN.4/Sub.2/1997/20/Rev.1, Annex. II).

이렇게 본다면, 양민학살과 관련한 논의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들이 어떤 실체적인 의무를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뿐 아니라, 그 원칙을 어떤 기구와 절차를 통하여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적인 고민과 토론을 할 필요가 절실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점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이 이루어진 그간의 산발적인 ‘과거청산’이 법적으로 허다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논의를 위한 단초만을 제시하고 넘어간다면, 양민학살에 대한 진상조사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충분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위원회는 완전한 진상조사와 진실의 복원 및 공개를 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그 과정에서 최종

적으로 혹은 잠정적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금전적, 의료적 구제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 부분을 넘는 조치들은 이 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된 후 이 위원회의 권고를 통하여 필요한 입법 및 행정조치들을 함으로써 실현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한국전쟁 전후 양민학살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가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 진상조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비슷한 국가기관이 다수 설치되는 것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앞으로 설치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역할을 떠안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 국가기관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권한과 전문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으로 구성된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라. 한국법의 문제

학살사건의 특성, 본질적 핵심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유린행위에 있다고 할 때 학살사건은 원천적으로 기존의 국내일반법 체계와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로서 국내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건의 성격에 부합하는 법내용이 될 수도 없으며, 그 해결도 기대할 만한 수준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50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에 와서는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와 민법상의 소멸시효제도에서 문제해결의 발목이 묶여버린다.

학살사건은 국가권력의 조직적 인권유린행위로서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의 정권주체가 국가권력의 명목하에 국가권력 자체를 유린하는 행위이며, 주권자로서 국가권력의 주체인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국내법(형법, 민법 등 일반법)은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정부가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국가적 범익을 침해하는 개인의 위법행위나, 국가기관인 공무원 개인의 일반인에 대한 위법행위나, 개인과 개인간의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배상의 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국내법체계는 적법한 위임에 의한 국가권력의 적법한 행사를 전제로 존재한다. 그런데 학살사건은 바로 수임자인 정치권력이 위임자인 국가권력주체를 유린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법체계가 예상하지 못한 초월적 위법상황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국내법에서 해결방법을 찾으려면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헌법질서파괴 행위로서의 학살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권적 쟁점들을 법형식에 담아내는 특별입법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특별입법은 학살사건 전체를 다룬다는 의미에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특별입법의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유린행위는 국가가 마련한 구제절차에 따라 구제받는 것이 사실상, 혹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진상조사, 명예회복 및 적절한 배상 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탄압의 빌미가 되고 국가권력

에 의해 범죄로 낙인찍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이중의 고통을 감수하여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이들은 오랜 기간 그 진상을 밝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며, 진상규명 이후의 수순이라고 할 명예회복, 배상 등의 구제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또한 사회 전체의 민주화에 힘입어 피해자들의 이러한 요구가 물리적으로 탄압을 받는 상황은 벗어난다 하더라도, 국가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부작위 또는 형식적인 무마조치로 일관할 경우, 이미 그 증거가 고의적으로 은폐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개인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실정법상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제도 등의 법률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이와 같이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에 인정되는 구제절차에 따라서는 피해자 및 유족으로서의 각종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들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특별한 다른 구제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법은 이미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유린행위의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진실을 알 권리의 근거를 생명권과 고문받지 않을 권리 및 신체의 자유로부터 도출하고, 인권유린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서도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 배상 등의 사후조치가 필수적이고 국가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유족들의 진실을 알 권리를 비롯한 구제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의 원칙상 합의된 국가에 부여된 의무이므로, 국가는 이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또한 특별입법의 근거라 할 수 있다(국가의 입법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뒤에 별도의 항목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현재 학살사건의 전체적 전모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창양민학살 사건이라든가, 제주4.3사건에 관한 일부 특별입법들(‘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특별법의 제정은 두 가지 관점에서 중대한 문제점과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로, 위에서 학살사건은 전쟁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전체를 한 단위로 하여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거니와, 이러한 개별법들은 사건의 실체를 그 지역단위의 개별사건을 전제로 하여 법률제정에 이르고 당해 사건에서의 일회적인 ‘작전수행중 주민들의 희생’,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의 주민들의 희생’으로 학살행위를 파악함으로써, 학살사건의 본질을 오히려 호도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입법 한계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로서, 피해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며加害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학살사건을 피해자와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이 제정에 이르게 되어 학살사건의 인권적 쟁점들에 대한 대안이 불명확한 채로, 진상의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회복”에 중점을 둔 정치 편의적 타협의 성격이 짙다. 각 개별입법마다 각 개별사건의 해결을 위한 미

봉책에 치중함으로써 사건에 일관된 본질과 문제점들의 파악이 불가능하고, 해결 원칙, 절차, 기구,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모두 차이가 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국제인권법의 원칙상 요구되는 국가의 의무와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편의적 해결책으로서, 추후 별도의 면밀한 검토와 비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특별법의 문제를 접어두고 기존의 법체계에서 가장 큰 결함들로 작용하는 시효제도에 관하여는 언급하여둘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학살사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국제법상 공소시효의 문제가 매우 활발하게 거론되고 그 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왔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의 법 운영상의 관행과 사법기관의 성격에 비추어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공소시효제도를 배제하는 방향의 법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회박하다. 학살사건에서는 공소시효 제도보다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민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가 하는 민사상의 시효제도에 더 중점이 놓여진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할 수 있다. 민사상의 시효제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질서 파괴행위로서의 국가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유린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그 시효제도가 첫째로 일정한 사실관계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생기게 된 사회적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둘째로 그 동안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쉬우며, 셋째로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본다면, 학살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의도적인 사실은폐와 증거은닉이 발생할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사회적 신뢰의 기초로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보호라는 인권영역의 출발점으로서 법적 안정성론이 적용될 수 없으며, 피해자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일정한 기간·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점까지-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유린행위인 삼청교육관련 사상자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소멸시효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6.12.19. 선고, 94다 22927 판결). 최근 하급심의 해석론으로서는, 5·18관련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군부의 헌정질서파괴행위에 대한 범죄소추가 가능하도록 한 '5·18특별법'이 제정공포 시행된 시점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있었는데, 이는 형사소추가 가능하도록 특별법이 제정된 상황 아래서의 해석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마. 미국의 국내법 문제

노근리학살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중의 학살은 한국군에 의하여서만 자행된 것은 아니었다. 한국전쟁 초기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창설된 유엔군과의 관계에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유엔사령관에게 이양되었고,

실질적으로는 미군부가 이를 통솔하였다. 미국에 대하여 학살사건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 두가지 관점에서 즉, 학살의 직접적 주체가 미군인 경우와, 작전지휘권의 실질적 주체로서의 작전지휘와 학살의 관련성이 입증되는 사례의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의 이름으로 행사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유엔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과제를 남긴다.

한편 한국전쟁 당시의 미군범죄에 대하여는 1950.7.12.자로 체결발효된 "재한 미국군대의 (형사)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에 따라 미국 군사법원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추의 문제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미국법에 의존되어 있다. 미국법의 경우에도 한국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법체계로서의 법시스템의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상으로 학살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향후 광범위하고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미국의 연방불법행위법에 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46년에 제정된 연방불법행위법(Federal Tort Claims Act, FTCA)에 의하여 미국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 연방지방법원이 배타적 관할권을 갖고 있다. 이 경우 준거법이 되는 연방불법행위법은 연방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 4가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1) 고의적 폭력("Assault and Battery" Exception, Section 2680(h)), (2) 전쟁시의 전투행위("Combatant Activities during Time of War" Exception, Section 2680(j)), (3) 외국에서의 불법행위("Foreign Country" Exception, Section 2680(k)), (4) 재량행위("Discretionary Function" Exception, Section 2680(a), 공무원이 적절한 주의를 가지고 법령을 집행한 경우)이다. 따라서 이 규정들에 의하면, 학살사건의 손해배상청구는 미국법제하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 된다. 특히 연방불법행위법은 제소기간(statute of limitation)의 제한이 있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권리발생일로부터 6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불법행위의 경우는 권리발생후 2년 이내에 해당 연방기관에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해당 연방기관이 거절의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US Code, Title 28, Sec. 2401). 한편 가해자인 군인의 개인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연방공무원책임개혁 및 불법행위배상법(Federal Employees Liability Reform and Tort Compensation Act of 1988, FELRTCA)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의 범위(scope of office or employment) 내에서 일하였다고 정부가 확인하거나 법원이 사실인정을 하게 되면 그의 행위로 인해 일어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연방정부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즉, 이 법률의 취지는 공무원이 완전히 사적인 동기에 의해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개인책임을 진다는 것이므로, 학살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연방정부에 책임이 귀속되고 연방불법행위법이 적용되므로 마찬가지의 결론에 이른다.

한편 미국에서의 문제제기는 미국 국내법의 적용 뿐 아니라, 미국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국제협약의 적용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점과 관련하여서는 헤이그조약 제3조를 자력집행적 규정(self-executing)으로 보아 위의 국내법의 제한에 관계없이 피해자 개인이 미국의 사법기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문제된다. 국제법의 자력집행력을 인정하는 미국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전쟁범죄의 책임을 회피하는 FTCA등이 헤이그 조약 이후에 만들어진 법률이므로 이것이 종래의 국제조약 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경우 미국에서 전쟁범죄의 피해자(외국인)가 소송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전후보상소송에서 원고들은 헤이그 조약 3조의 자력집행성을 주장하면서 일본정부의 면책 주장 및 시효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나 법원의 판단은 이와는 정반대이다.(영국등 전쟁포로 및 민간인억류자손해배상사건, 동경지방재판소 판결(1998. 11. 26)).

미국에서 소송을 통한 해결가능성은 역시 미국의 국내법이 전쟁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배상의 가능성을 열어두도록 촉구하여 그 결실을 맺느냐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현행의 FTCA와 FCA의 개정이 고려될 수 있고, 한국전쟁시 전쟁피해자들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와 관련하여 미국은 1차 대전 중 미군이 프랑스인에 대하여 준 피해에 대하여 전쟁이 끝난 후에 특별법을 마련하여 38,000건이 넘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해 준 일이 있고 (Act of April 18, 1918, ch. 57, 40 Stat. 532) 2차대전 기간 중 강제로 억류한 일본계 미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일도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긴요하다. 유엔을 중심으로(예를 들면 유엔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피해자들이 국제적 NGO와 손을 잡고 한국전쟁 중 일어난 전쟁범죄의 진상을 밝히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특별보고관 등이 전쟁범죄의 진상을 조사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미국내에서의 입법이 필요함을 국제사회에 제시한다면 문제 해결의 가능성에 조금은 다가가게 될 것이다.

아무튼 손해배상의 측면에서 보면 미국내의 소송을 통한 해결의 전망도 현재의 수준에서는 결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에서 강조하였듯이 미국의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가 불비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가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한국전쟁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미국이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내 법절차는 다른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보관하고 있는 양민학살 관련 자료들을 어떻게 충분히 조사하여 확보할 것인가에 관하여 더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정보공개청구 소송과 같은 절차는 활용할 여지가 넓은 것으로 보이며 일반 민사 소송 역시 최종적인 실체적 해결문제와 별도로 증거조사절차(discovery)를 통하여

여 자료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

6. 해결의 한 방법으로서의 입법운동론 검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살사건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특별 입법이 필요하다고 할 때 입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인권적 쟁점들과 법리적 접근의 원칙들이 반드시 그 바탕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입법은 문제가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과정으로서의 진실규명과, 문제에 대한 해결로서의 법제도적 고려들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학살사건에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들을 도외시하거나 소홀히 하여 문제해결에 천착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법률 차원에서 풀어갈 때 이미 제정된 특별법들과의 관계도 새로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법무법인 덕수합동이 2000. 3. 17. 문경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의 '입법부작위위원회'의 현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의무를 상기시키고 입법을 촉구하는 법적 활동이 있었음을 소개하면서, 그 전체로서의 국가의 입법의무와 관련한 언급을 하여두고자 한다.

가. 입법의무의 발생

국가는 학살사건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양하겠으나, 과거 인권유린행위의 중대성과 그 진실을 알 권리 및 배상청구권에 대한 극심한 침해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극히 무겁게 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진상조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를 정부의 자의적 정책판단에 따르도록 맡겨두어서는 그 보호의무를 다한다고 할 수 없다. 국회의 입법을 통하여 국가에게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각종의 조치들을 시행할 실정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가가 더 이상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형식적인 조치로 무마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만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 할 수 있겠다.

나. 입법의무의 구체적 내용

입법의무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정할 수 있다. 우선 진상조사에 대한 의무규정이 포함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족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바로 진실을 알 권리로서, 국가에 학살사건에 관한 진상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사용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 유족은 물론 누구든 학살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는 것으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진실이 공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가 다시는 이러한 인권유린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반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조사, 공개된 진실에 기하여 위령 사업 등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조치를 시행함이 규정되어야 하며, 예컨대 “공비에 의한 총살”이라는, 국가 공식 기록인 호적의 기재사항을 진실에 맞도록 정정할 수 있는 등의 관련 후속규정들을 두어야 한다.

나아가 국가는 현재의 국가배상법으로는 배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유족들에게 배상청구권을 인정하거나 혹은 적절한 보상을 하게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다. 국가의 입법부작위와 기본권 침해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내포하는 여러 기본적 인권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가장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생명권과 신체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이러한 생명권 및 신체불훼손권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침해당한 당사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는 그 진상을 밝히고 원한을 풀 권리로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원권이 있고, 생명권 및 신체불훼손권이 가장 근본적인 기본권인 것과 같이 이들 권리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신원권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기본 내용이 된다 할 것이다.

학살사건에서 정부가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진상규명노력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탄압함으로써 사건 발생 후 50여년 동안이나 피해자 및 유족들의 진실을 알 권리를 비롯한 구제받을 권리의 행사를 가로막아 왔다면, 국가가 직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이 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국가가 위와 같이 진상조사에 나서기 위하여는 그 근거 법령을 입법하는 것이 필수적이어서, 결국 현재 국가는 학살사건에 관한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평등권침해

헌법과 국제인권법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의 보호의무는 1950년을 전후한 시기에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양민학살 피해자들 모두에 대한 것이다. 1960년 국회 조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더라도 위 기간 경남 거창, 함양, 산청, 울산, 충무 등지에서 3,085명이, 경북 대구 일대, 대구 형무소, 문경 등에서 2,200명이, 전남 함평에서 524명이, 전북 순창에서 1,028명의 양민이 학살당하였다는 것이며 이것마저도 전체 피해의 일부만을 조사한 것에 불과하다. 그 외에도 수많은 양민학살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그 전모가 알려진 바도 없고 진상조사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자행된 인권유린행위의 피해자들 전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가 있어야 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양민학살이라는 인권유린행위의 대규모성과 심각성으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몇 사건에 관한 입법과 진상조사 등의 일부 의무 이행으로는 다른 사건들의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되지 못함은 자명하며,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불이행에 대한 변명도 될 수 없는 것이다. 국가는 마땅히 숨겨져 온 양민학살사건들까지도 모두 그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하여 그 보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그 구체조치는 지역에 따른 일부 특별법제정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헌법상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이라 할 것이나, 위 법률들이 각 그 해당 지역의 양민학살사건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직 그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동일한 성격의 양민학살사건에 관하여는 그 진상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별적 특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의 유족들은 위 지역의 피해자 유족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위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근거법령의 부존재, 곧 헌법상 입법의무의 위임에 위반하는 입법의 부작위로 말미암아 학살 피해자 및 그 유족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의 입법부작위는 곧 동일한 보호의무를 지고 있는 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전혀 그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7. 글을 마치며-학살사건의 해결방향

이 글은 첫머리에서 변호인단 구성에 즈음한 법리론적 과제의 정리로서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하였다. 말하자면 향후 법률적 관점에서 학살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문제의식의 공유점을 정리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변호인단의 활동이 축적됨에 따라서 이 글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물론, 학살사건과 관련한 전체적이고 입체적인 모든 법률적 쟁점들이 검토되면서 보다 현실적 유용성과 이론적 깊이를 겸비한 조사연구의 성과물들이 배출될 것임을 변호인단 스스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러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의 내용을 맷는 말로서 요약하여 본다면, 학살사건의 진실규명과 해결은 한국인권론의 출발점에 놓여 있는 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 그에 대한 법률적 접근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서뿐 아니라, 사건의 진실규명의 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 법적 접근은 학살사건의 ‘사실의 不在’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개별적 사건들을 묶어내는 총괄적 관점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학살사건은 한국전쟁이 유엔과 강대국의 개입에 의하여 국제전적 성격

을 갖게 되었으므로, 그 법적 문제점들과 해결방법도 국내외 법규들의 검토에서부터 입체적으로 조사연구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학살사건의 특성들로 인하여 현재의 한국법 및 미국법의 체계내에서는 명쾌한 해결을 보기에는 상당한 난점들이 존재하고,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최종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새로운 입법은 학살은 그 본질에서 법의 문제이고, 다만 구체적 법규를 통한 해결방법의 난관이 존재할 뿐이므로, 과거의 사실로 치부되거나, 도덕적 차원에서의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성립된 범죄행위를 기초로 그에 대한 양국의 책임을 실현하는 데 생기는 현행 법체계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학살사건과, 그 이후 유족들의 진실을 알 권리에 수반한 이차적인 인권 침해에 대하여는 아직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조사와 사실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실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근리사건에 관한 양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조사는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 글에서 상세히 논의할 여유는 없으나 노근리 사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조사는 그 조사내용 및 최종적인 결론이 과연 실체적으로 인권의 원칙에 맞는 것인가와 별도로 절차적으로 피해자들의 참여를 일체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위원회의 조사결과나 권고는 형식적으로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는 점만은 지적해 두고자 한다. 그리고 이처럼 절차적으로 제도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는 조사가 과연 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심각한 문제제기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국제인권법의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조사기구가 설치되어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기에서 덧붙여 지적하여야 할 점은, 한국전쟁 기간 동안의 학살사건이 국제적인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상, 궁극적으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진실확인 후 관련국들에 의한 손해배상 등 책임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조사는 유엔 안보리에 의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가 원칙적으로 가장 맞는 방법이고, 유엔 안보리의 조사위원회 또한 국제인권법의 원칙에 따라 구성되고 활동해야 하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들의 본국이라는 점에서 가해자로서 의무 이행은 물론 앞에서 본 국제적인 조사를 통한 해결을 앞당긴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에 의한 새로운 특별입법은 국내적으로는 한국정부의 국민에 대한 의무이행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이 문제 해결의 전단계로서 국제적인 해결을 촉진하는 과정으로 이해되

어야 한다. 입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 지역의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연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입법부작위위원회를 통하여 입법을 촉구하는 행위를 벌이는 한편, 국내외 학계 및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진상규명 및 입법운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국내법과 소송절차에 대한 더욱 면밀한 검토를 한다는 전제아래, 미군이 직접 저지른 사건 및 미군이 지휘권을 가진 상태에서 한국군이 저지른 학살 사건에 대하여 미국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미국내 소송 및 운동이 요구된다. 또한 유엔의 책임을 이행하게 할 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 문제를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과제설정과 방향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앞으로 갈길이 너무 멀고 과제는 산적되어 있다. 오늘의 심포지움은 그 길의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를 안고 있다. 그리고 그 해결의 끝이 다가올 날은 반드시 미래의 시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20세기에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20세기의 벼거운 무게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 길은 고되고 험난하지만, 개인의 역사적 삶이 맞을 수 있는 가장 보람되고 소중한 길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변호인단 구성에 관한 설명서>

피해자들과 일부 연구자들의 노력에 의해 한국전쟁 전후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이 조금씩 밝혀되면서 정치·사회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계와 시민인권단체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월남전의 한국군 양민학살 문제 역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의 힘은 여전히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유족들은 대부분 조직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두려움을 멀치지 못하고 있으며 진상규명과 해결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유족들은 인적, 물적 자원과 사회적 지원의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학계의 관심 역시 '아직은 부족하며 언론은 몸을 사리고 있다. 인권단체들 역시 부족한 자원으로 인하여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가 올바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직접 피해자인 생존자와 유족들이 입은 인권침해에 대한 전면적인 구제는 물론 양민학살을 가능하게 했거나 양민학살의 진상조사를 막아온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할 법률가들의 전문적 참여는 거의 전무한 수준에 가깝다.

양민학살 사건의 해결은 결국 법률문제이므로 법률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생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더구나 이 문제는 큰 틀에서 볼 때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개별 사건마다 다양한 사실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미군에 의한 학살의 경우 더욱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 유엔이 관련된 국제문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은 물론 국제관습법과 인도법(전쟁법), 그리고 국제인권법 등 많은 법체계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내나 미국의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 필요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새로운 입법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장기적인 전망을 가진 활동을 통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 과정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며 결과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상당수 법률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점은 법률가들의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해결에 법률가들의 기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다수의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분야별로 전문성을 쌓아나가면서 다양한 피해자들을 대리하며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으

로 가능하고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변호인단은 다양한 지역의 양민학살 유족회들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수 있고 통일된 전망을 가지고 활동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학계 및 인권단체들의 노력이 바람직한 방향의 법적 해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00. 5월에 1차적으로 법무법인 덕수합동, 법무법인 한결, 지평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유남영 변호사의 참여 아래 몇 차례의 토의를 거쳐 변호인단의 구성에 합의하였다. 변호인단은 앞으로 개방적으로 확대조직될 것이며, 유족회들은 물론 학계 및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웹사이트 개설
2. 쟁점 정리를 위한 토론회 개최
3. 법적 해결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position paper 작성
4.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5. 정보공개 청구 소송, 헌법소원 제기 및 입법청원과 입법운동 전개
6. 미국내 정보공개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및 입법운동
7. 유엔 인권위원회 등을 통한 국제활동

● 전남함평지역 - 정근욱 회장 (사)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咸平良民 524名 集團虐殺 犯牲者 名譽回復은?

□ 集團虐殺 事件

0 日 時 : 1950.12.6부터 1951.1.12사이.

0 人 員 : 524명(月也面;350. 海保面;128. 羅山面;46)학살

0 財 產 : 1,454家屋 燒失.(全燒:880.半燒:180.全破:260.

半破:201. 其他:5)

0 加 害 :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

* 指揮官 - 사단장 : 崔德新 준장(堅壁清野개념 作戰지시)

- 연대장 : 朴其丙 대령

- 대대장 : 柳甲烈 소령

- 중대장 : 權俊玉 대위

0 根 據 : ① 국회 제 35회 임시회 제19차 본회의에서 "국회양민 학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위원장 崔天義員)

② 국회 제35회 임시회 제42차 본회의에서 특위 보고사항 만장일치로 의결.

③ 민의원의장(郭尙勳) 명의로 국무총리(崔政)에게 후속 조치도록 서면 통보.

④ 4293년(1969)5월 20일(금요일)부터 1960년 5월 21일자(토요일) 韓國日報 報道 資料

0 證 人 ① 당시 제20연대 제2대대 5중대 중대장(權俊玉 대위) 연락병으로 중대장과 함께 학살에 참여한 金日好씨 (당시계급 일병) 증언서.

② 당시 국방부 정훈국소속 함평지역 선무공작대원 겸 東三面(월야.해보.나산면) 파견대장 직책으로 학살 현장에 있었으며, 전남도1대 2대 도의원과 국회 제7,8,9,1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기독교 장로 신분인 尹仁植씨 사실 확인서.

③ 당시 월야지서장(경사) 이었던 李啓蕊씨 증언서.

④ 당시 월야지서에 근무(순경)한 吳正仁씨 확인서.

□ 集團虐殺 内容

중대본부가 있는 해보면 문장에서 장성군 삼서로 가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다가 월야면 정산리 장교와 동촌마을 입구에서 공비의 습격을 받아 국군 3명이 피해를 다했고, 야간에는 공비들이 "승전축하잔치"를 하며 인근마을 주민을 강제로 모아놓고 봉화불을 피우고 징과 꽝과리를 치며 국군을 조롱하자 이에 격분한 20연대 5중대 군인들이 익일인 1950년 12월 6일(陰:10.27) 장교와 동촌마을 주민들을 마을앞 논으로 모이게 한 후 양민 70명을 학살하였다.(증인:당시 16세로 현재 동촌마을 거주 과상일).

해발 164m의 월악산 자락에 옹기종기 자리한 전형적인 농촌마을도 동년 12월 7일(陰:10.28) 5중대장의 인솔하에 5중대 병력이 7개부락(지변, 내동, 동산, 순촌, 송계, 괴정, 성주) 양민 700여명을 "도로공사 하러가니 나이에 관계없이 모이도록" 하고 15세 미만의 아이들은 마을로 가서 가옥에 불을 지르도록 지시하였고, 15세부터 45세 사이의 주민을 별도로 분리하여 세운 다음 총으로 사살하였다. 죽지 아니한 자를 찾아내 사살하기 위하여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불을 끄러가라"고 하여 일어선자는 사살하고 또 외치고, 일어서면 사살하기를 3번이나하였고 아무도 일어나지 아니한자 확인 사살까지하여 200여명을 학살하였다. {증인: 5중대장 연락병이 살려준 당시 학생신분인 정일웅, 현장에서 살아난 양채문과 정남숙, 5중대장 연락병으로 현장에 있었던 제주도에 거주하는 김일호, 선무공작대원 겸 동삼면 파견대장으로 현장에 계셨던 前 국회의원(7~10대까지)인 윤인식, 당시 월야지서장 이계필, 당시 월야 지서 순경 오정인, 마을 주민}

또 다음날인 12월 9일은 월야면 외치리 외치부락 주민이 공비와 짜고 야간에 광주 영광간 도로를 굴착하여 軍작전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니 동조자를 색출한다는 이유로 주민을 모이게 한 후에 22명을 뽑아서 현장에서 1명을 사살하여도 동조자가 색출되지 아니하자 월야초등학교 뒤와 해보 금덕리 두리샘 언덕에서 17명을 사살한바 있다(증인: 전 월야면장 정기정, 당시부면장으로 외치거주 정복만).

1950년 12월 31일(陰:11.23) 해보면 대창리 쌍구령과 1951년 1월 12일(陰:50.12.5)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에서는 5중대 군인들이 마을을疏開하며 소재지로 피난을 가는 주민을 무조건 총으로 사살하여 70여명을 학살하였다(증인: 현재 광암리 거주 박용원, 모평거주 윤석현, 생존자 윤경중, 주민들) 또한 인근에 있는 나산면 우치리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50여명이 희생되었다(증인: 우치리 이계준, 주민들)

□ 犠牲者 名譽回復 推進

● 國會의 努力

0 4대 국회에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 일 시 : 단기4293년(서기 1960년) 5월 23일
- 회 기 : 국회제35회 임시회 제19차 본회의.
- 위원장 : 崔 天 國會議員

- 위 원 : 國會議員 9명으로 구성(조사반별로 3명)
- 조사반 : 3개반으로 편성(경남반, 경북반, 전남반)
- 전남반 : 劉沃祐 議員, 李社炯 議員, 朴炳培 議員
- 기 간 : 1960년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11일간)

0 特委委員咸平現地確認調査

- 일 시 : 1960년 6월 8일
- 방 법 : 현지 증언조사
- 참 석 : 劉沃祐 議員, 李社炯 議員 朴炳培 議員.
- 피해 정도
 - 인 명 : 524명 虐殺(월야면; 350. 해보면; 128. 나산면; 46).
 - 재 산 : 1,454戶(全燒; 880. 半燒; 108. 全破; 260. 半破; 201
其他; 5)

0 特委調查結果措置

- 특위 활동결과 書面 보고 : 단기4293년 6월 21일
- 제35회 국회임시회 제42차 본회의서 특위 활동결과의결.
 - 조사지역 피해내용 확인
 - 민의원 의장(郭尙勳)명의로 국무총리(崔政)에게 조치토록 서면 통보 : 4293년 6월 21일(발송번호 156)

● 咸平郡議會의 努力

0 「함평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일 시 : 1996년 12월 28일 (제46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 위원장 : 윤 표 의원
- 위 원 : 8명
- 간 사 : 이재화 의원(해보면 의원)
- 기 간 : 1996년 12월 30일부터 1997년 12월 29일(1년).

0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건의 : 2회(97.5.2, 97.9.24)

- 대 상 :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내무위원장, 4당총재.

0 국회, 정부 방문하여 청원처리 촉구

0 양민학살 사건 참여자들의 서면과 비디오 증언 확보

- 국군 20연대 2대대 5중대 연락병 : 김일호(제주거주).
- 국군 20연대 2대대 5중대 분대장 : 양영언(").
- 학살당시 선무공작대 파견대장 : 윤인식(서울거주), 7, 8, 9, 10대 국회의원 역임) ⇒ 1999년 12월 중순 死亡함.

- 학살당시 월야면 지서장 : 이계필(서울 거주)
- 학살당시 월야면 지서직원 : 오정인(함평읍 거주)
- 학살현장 생존자 : 양채문(월야), 정남숙(손불면 석창리)

0 특위활동 진상조사 실태 보고서 발간(P 282) : 1998년 1월

● 咸平郡의 努力

0 전담부서 지정 : 정책개발담당관실(現在는 사회복지과)

- 일 시 : 1996. 6. 1

- 임무 : 피해자 및 유족파악과 명예회복 강력 추진

- 성과 : · 학살 피해사항 파악 및 체계적 정리

- 자료수집 및 학살관계 홍보(언론보도 45회)

- 희생자 및 유가족 명부작성

- 학살관련자 파악 및 학살사건 증언확보.

0 합동위령제 비용 지원 : 4회 10백만원('96이후 계속 지원).

0 유족회 사무실 집기 지원 : 복사기 등 5종.

0 명예회복을 위한 유족측과 공동노력.

0 한국일보 현지확인 보도자료 발굴

- 단기 4293년 5월 20일 금요일(신문기록일):李相文 記者.

- 마구터지는 大虐殺 秘史 . 全南咸平서도 良民 千餘.

- 서기 1960년 5월 21일 토요일(신문기록일):李相文 記者.

- 나는 尸體더미서 살아 나왔다.

- 咸平虐殺事件 生存者의 말 -

● 犠牲者 遺族會의 努力

0 합동위령제 봉행 : 7회('93부터 每年 定期的으로 봉행)

0 명예회복을 위한 국회청원 : 2회

- 1차 : 1994. 11. 7(접수번호 353)→국방위원회로(위원장:황명수)이송되었으나 국회14대 종료로 자동폐기 됨.

- 2차 : 1996. 9. 6(번호 1055)→내무위원회로 이송(현 행자위;번호15000031)되어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審議도 않고 있음.

0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희생자 유족등록 신청 : 222명 → 1996.7.4(전남도지사).

- 특별조치법 제정 : 1996. 1. 5.(법률 제5148호).

- 동 시행령 공포 : 1996. 4. 6.(대통령령 제14970호).

- 1996. 8. 14. 유족등록 서류 반려받음.

- 이유 : 명예회복 대상에 함평은 해당 안된다는 국무총리실의 특별법 해석에 의하여 전남지사 반려.

0 “함평양민학살희생자 유족회”결성 : 1993. 11.

- 1대 유족회장 : 정남진(1997.12.18까지)

- 2대 " : 정진재(73세) - 3대 유족회장 : 정기정(63세)

- 4대 " : 정근육(현재) ☎ 0615-323-1001

0 사단법인 설립

- 명칭 : (社)함평사건희생자 유족회

- 일시 : 1998. 9. 21

- 등록번호 : 205621-0000172

□ 「한새들」 전투에서 전사한 군인파악

0 1998년 2월 10일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당시의 5중대 군인중 생존자를 방문하여 당시에 월야면 한새들에서 공비와 전투중 사망한 군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그 군인의 신원을 파악한 결과증언이 사실이었음.

0 증언을 하여준 분은 종교인으로 사망군인 이름 기억함.

함평양민학살에 관련된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육군중에서 함평군 월야면 「한새들」 전투에서 전사한 군인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성명 : 김추길(金秋吉)

- 계급 : 육군일병

- 소속 : 육군 11사단 20연대

- 군번 : 0501381

- 원적 : 경북 경주시 서면 도리 531번지.

- 호주 : 亡 김원덕(金元德)→김추길의 父(본관 김해).

- 본적 : 경북 영천시 고경면 해선리 50번지

- 생년월일 : 1931. 11. 8(호적은 10.25일임).

- 전사일시 : 1950. 12. 2

- 전사내용 : 6.25전사.

- 전사장소 : 0

- 명패 : 24-7-193

- 보훈자 : 이참기(李岑起;김추길의 母. '72.10.11亡)

- 보훈번호 : 제056113호.

※ 戸籍簿(原籍인 除籍簿)에 記錄된 死亡내용.

檀紀 4283년 12월 2일 午前 不詳時 咸平 戰鬪地區에서 死亡 檀紀

4287년 11월 25일 古鏡面長 孫炳石受附 檀紀 4288년 1월 26일 送付

□ 國會 良民虐殺 真相調查 特委 活動內譯

○ 조사기간 : 1960.5.31부터 6.10까지 11일간

○ 조사반 구성 : 제4대 국회시절 제35회 임시회 제19차 본회의에서 의결 구성
(1960.5.23)

○ 조사반 편성 : 3개반(위원장 : 崔 天 國會議員)

0 경남반 : 崔 天. 趙一載. 朴相吉 國會議員.

0 경북반 : 尹鎔球. 宋秉煥. 林次周 國會議員.

0 전남반 : 劉沃祐. 李社炯. 朴炳培 國會議員.

○ 활동결과 보고 : 1960.6.21.11:21 국회 제35회 임시회 제42차 본회의에서 조사 보고서를 의결채택하고, 민의원 의장(朴尚勳)명의로 국무총리(許政)에게 특위활동 결과 국회의결된 건의문 송부
(발송번호:156. 발송일:4293년 6월 21일)

○ 國會特委의 良民虐殺 被害事項 調查結果 報告書 本會議 議決時 다음의 對政府 建議文 2個項을 採擇함.

1. 정부는 민의원 양민학살사건조사단에서 조사한 지역뿐아니라 事件調査를 위한 軍, 警, 檢, 합동조사본부를 설치하여 양민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끼친 惡質的 關聯者 및 被害者와 피해상황을 조속한 단시간내에 調査할것.

2. 양민의 생명, 재산상 피해를 끼친 악질적 關聯者의 엄중한 處斷과 피해자에 대한 補償制度를 설정하기 위하여 既存 法律에 의한 一事不再제理原則이나 時效의 抵觸規正에 關係없이 特別法으로 假稱 「양민학살사건 처리 특별조치법」의 制定을 촉구한다.

국회특위 위원의 양민학살 조사결과 집계

구 분	피 해 지 역	인원수(명)	재산피해	비 고
총 계	42개 지역	8,715	가옥 : 10,041호, 4,179동 식량 : 4,930석, 가축 : 3,036두 의류 : 38,949점	
경 남	거창군	719		
	거제군	44		
	함양군	593	가옥 : 2,755호, 식량 : 4,930석 농우 : 518두, 의류 : 38,949점	
	동래군	33		
	울산읍	677		
	충무시	267		
	구포읍	58		
	마산시	188		
	산청군	506		
소 계	9개지역	3,085	가옥 : 2,755호, 식량 : 4,930석 농우 : 518두, 의류 : 38,949점	
경 북	대구시 상원동	240		
	대구시 파동	100		
	대구시파동가창댐 부근	100		
	대구형무소	1,402		
	문경군(산북면인봉 리)	86	가옥 24호	
	대구시 일원	272		
소 계	6개소	2,200	가옥 24호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350	가옥 : 1,449호	
	함평군 해보면	128		
		46	가옥 : 5호	
소 계	3개소	524	가옥 : 1,454호	

국회특위 위원의 양민학살 조사결과 집계

구 분	피 해 지 역	인원수(명)	재산피해	비 고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면	34	가옥 : 18호	
	순창군 인계면	36	가옥 : 321호	
	순창군 동계면	97	가옥 : 757호	
	순창군 풍산면	15		
	순창군 팔덕면	12	가옥 : 16호	
	순창군 금천면	33		
	순창군 적성면	7		
	순창군 유등면	6		
	순창군 구리면	86	가옥 : 1,549호	
	순창군 쌍치면	536	가옥 : 1,413호	
	순창군 복흥면	166	가옥 : 1,287호	
소 계	11개소	1,028	가옥 : 5,361호	
제주도	북 제주군 조천면	289		
	북 제주군 한경면	83		
	북 제주군 애월면	223		
	북 제주군 구좌면	54		
	북 제주군 한림면	107		
	남 제주군 남원면	236		
	남 제주군 중문면	3		
	남 제주군 성산면	15		
	남 제주군 안덕면	216		
	남 제주군 서귀읍	26		
	남 제주군 대청읍	182		
	남 제주군 표선면	341		
	제주시	103	가옥 : 4,179동, 가호 : 427호 가축 : 2,518두	
소 계	13개소	1,878	가옥 : 4,179동, 가호 : 427호 가축 : 2,519두	

※ 국회 속기록 자료를 재편집함.

虐殺資料

마구터지는 大虐殺 秘史
全南 咸平서도 良民千餘

新告엔 共匪討伐의 赫赫한 戰果라고

- 檀紀 4293년 5월 20일(금요일);한국일보 5단 기획기사 -

【함평에서 20일 광주지사 이상문기자발】 9·28수복후인 82년 음력 10.29일부터 음력 12.10일경까지 사이에 거창, 함양, 산청, 문경등지의 학살사건에 비하지 못 할 1천 여명의 양민학살 사건이 전남 함평군(咸平郡)내의 월야, 해보, 나산(月也, 海保, 羅山)면 등지에서 감행되었다는 사실이 동터오는 제2공화국을 바라보며 10년 동안을 입 다물고 있던 현지주민들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났다. 1천여명을 학살한 군인들은 제5사단 20연대(당시 연대장 박기병 소령)2대대 5중대의 중대장 권(權俊長=당시 대위 현재는 대령으로 승진, 서울에 있다는 설이 있음)의 지휘하에 동 중대사병들이 참가하여『월야』면의 325명 및 『해보』면의 400명과 『나산』면의 300명의 양민을 무자비한 수단으로 학살하였다.

군인들은 영광군(靈光郡)과 함평군을 가르고 있는 불갑산(佛甲山) 공비토벌을 위해 해보면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양민을 학살한 숫자를 공비토벌의 혁혁한 전과로 상부에 보고했었다.

기자가 월야면에서 20일 면사무소와 부락민으로부터 확인한 월야면의 학살 경위를 보면 음력 10월 29일 상오 11시 해보면에서 넘어온 5중대원들은 월악리(月岳里), 외치리(外峙里) 등 5개 부락민을 각각 약 500명씩을 모아 ① 군경가족과 ② 50십세 이상의 고령자 ③ 16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가려내고 담배를 피우라고 한 다음 기관총과 M1소총으로 무차별 총살하고 여기서, 살아나온 부락민들에게 다시 총질하고 그것도 모자라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시체에 또 다시 총을 쏴 숨이 끊어짐을 확인한 후 가택수색을 하여 현금 6천 8백십만환, 백미 1천 7백 9십 8석, 잡곡 1백 5석, 잡곡 1백 5석, 말 4두, 돼지 144두, 닭 2,542마리를 강제징발해 갔다는 데 이 면에서는 뺄逭이는 한 사람도 없이 양민만 5일 간에 걸쳐 부락 단위로 학살됐다는 것이다.

학살에서 목숨을 건진 어린이와 늙은이를 시켜 그들의 집에 불을 놓게까지 했다는 것이다. 현재 유가족들은 동 사건 진상조사를 정부에 요구하여 동학살의 총지휘자인 『권』을 즉각 구속, 극형에 처할 것을 진정할 것이라 하며 만일 이를 들어주지 않을 때는 부락청년들을 총동원하여 『권』은 물론 그의 가족들을 찾아 몰살하겠다고 이를 알고 있었다 또한 해보, 나산면 등지의 학살은 역시 『권』의 지휘하에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는 부녀자와 고령자를 가릴 것 없이 부락 단위로 가까운 산중턱에 모이라 해놓고 지정된 장소에 모이자 미리 준비해 둔 기관총으로 사살했던 것이다.

나는 尸體 더미서 살아 나왔다
 - 咸平虐殺事件 犠牲者의 말 -
 機關銃으로 마구
 뼈에 사무친 『第五中隊』의 蟻行
 갓난애는 밟아 죽이고
 나는 死體 더미서 살아 나왔다

- 서기 1960년 5월 21일(토요일).한국일보 7단기획기사 -

속보 : 1천 여명의 양민을 무차별 학살하였다 전남 함평(咸平)군하-월야면(月也面)과 해보면(海保面)에서의 만행진상이 현지를 찾은 기자들에 의해 상세히 드러났다.
 이 고장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당시의 『제5중대』란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면서 10년전의 『슬픈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월 야 면>

『대한민국만세』중에 맞아 쓰러지는 전직호국군인 정(鄭)씨의 필사적인 힘의 외침이었으나 이놈의 자식이라는 욕설과 함께 또다시 퍼부은 총탄에 『정』씨의 맥박을 잃게 했다는 이야기는 83년 음력10월29일 함평군 내에서 제일 먼저인 월야면(月也面)325명 집단학살사건의 무자비한 주둔군인들의 만행을 대변하는 것 같다.

『정』씨는 『살려면 집에서 나와 뒷산에 모이라』하는 제5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장 권(權俊玉)대위의 추상같은 호령에 죄없는 우리들은 설마하고 따라 나선 500부락민들 속의 한사람으로 부락에서 200『미터』지점인 뒷산형장에서 모든 증명을 제시-호국 군인이었음을 주장했으나 군인들은 이를 본체만체 방아쇠를 잡아당겨 쓰러뜨리고 대한민국만세를 외치는 『정』씨에게 또다시 총탄세례를 퍼부어 죽였을뿐더러 6.25때 후퇴하여 집에 없는 남편이 동부락에서 3『키로』지점인 불갑산(佛甲山=해발1천5백미터)에 입산했다고 경찰이었던 노(盧興用)씨의 부인을 총살했다는 것이다.

부락민들은 이 학살에 앞서 동월 28일밤 동면에서 공비와 교전중인 2명의 군인이 전사했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알고있으나, 학살당시 부역자와 공비는 이미 불갑산속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려 참변을 당한 자 중에는 부역자가 한사람도 없었고 죄가 없기 때문에 남아있었던 양민들이었다는 것이다.

5중대사병 한사람과 친해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아냈다는 월야리(月也里)의 김(金容擇=45)씨의 말에 의하면 5중대는 하루에 공비 300명과 건물 50동을 사살 또는 소각시키는 전과를 올리라고 상부에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부락민을 학살하고 집을 불살라 이를 전파로 상부에 보고했고 밭에서 일하다 끌려왔던 농민들을 죽이고 그 손에 쥐어진 농구(農具)들을 사살한 공비에게 얻은

노획물로 암수해갔다는 것이다.

월야리 현장에서 등에 기관총탄을 맞고도 죽은 듯이 쌓여진 시체밑에 숨을 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살아 나왔다는 정(鄭南植)=33씨와 당시 총살하는 임무를 맡은 모소대장 연락병 『김일호』 1등병 때문에 학살자중에 제외되었다는 정(鄭一雄=32)씨 증언에 의하면 동 부락 우익진영의 청년들은 5중대가 들어오기 전 해보면(海保面)에 주둔한 5중대를 찾아 『현재 남아 있는 부락민들은 부역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해주려 떠나려던 때에 군인들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전부락민들은 이들 군인들에 환호의 박수를 보내며 열광적인 환영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살려준다고 마을 뒷산에 모이라 해놓고 그곳에서 남녀 구별없이 군경가족과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16세 이하의 어린애들을 구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락민들엔 앉으라고 말한 다음 담배한대씩을 피우게 했다.

그리고 오중대장 『권』대위의 권총 신호로 미리 준비해 두었던 기관총과 줄지어 있었던 총살분대의 M1소총을 면전에서 수백발 쏴 죽였는데 1차 사격에서 숨이 불어 있던 부락민들은 『산사람은 일어나서 각자 집에 불은 불을 꺼라 그래야 살려준다』는 『권』대위 말에 속아 일어났다가 2차 사격에 대부분 죽고 3차 사격은 시체를 총뿌리로 헤치며 움직이는 시체에 총탄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거창, 함양, 산청의 학살과 같이 시체를 태우지는 않고 그대로 방치한 체 물려갔다 한다.

이 학살에서 제외되었던 부락민들에겐 각자 자기 집에 불을 지르게 한 후 10리 떨어진 면사무소 소재지에 피난 시켰다.

처녀와 유부녀를 강간한 후 쏴 죽이고 부락민들의 재산을 약탈해간 『5중대』였기에 현재 이곳의 우는 어린애를 달래려면 『5중대』란 말 한마디만 하면 울던 어린애도 울음을 그치고 무서워한다고 하며 젖을 먹이다가 어머니란 단어(單語)보다 『5중대』란 단어를 먼저 배운다고 했다. 91년도에 정부에서 지어준 후생주택 10여 동이 세워진 월악리 부락엔 아직도 주춧돌이 수없이 남아 있고 형장이었던 마을 뒷산에는 절손되어 유가족이 없는 농민의 무덤이 남아 있는 부락민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20여개 있었다.

아비규환의 10년전의 악몽이 되살아 몸서리가 쳐진다는 유가족들은 『권』대위의 극형을 정부에 진정할 것이라 했다. 만일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전부락민들이 총출동하여 전국을 살살이 뒤져 『권』대위는 물론, 그 가족까지 찾아내어 몰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咸平郡 月也面에서 光州支社 李相文 記】

<나 산 면> <해 보 면>

83년 음력 12월 5일부터 부락단위로 감행되었던 함평군 해보면(咸平郡 海保面)의 4백명과 나산면(羅山面)의 3백명 학살 때도 역시 제5사단 20연대 3대대 5중대장 권(權俊玉)대위가 지휘하는 군인이었다. 이 양면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양민을 학살했다는 것으로 1백 여명이 한꺼번에 학살당한 해보면 대창리(大昌里)에서는 군인들이 집에 불지르고 부락민들에게 살려면 동부락 속칭『쌍구령』으로 피난 가라고 한 다음 『쌍구령』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기관총과 M1소총 및 파발총분대가 그곳에 접근하는 남년 노소를 막론하고 일제히 사살했다.

몸서리 치는 그때의 악몽을 더듬는 임(林貞禮=25=女)씨와 정(鄭允德=45)씨의 부인 김(金)씨 말에 의하면 젖먹이을 업은 부인들을 사살한 다음 죽지 않고 어머니 시체등뒤에서 울고 있는 갓난이를 가마니에 집어넣고 밟아 죽인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주둔군인들의 만행을 일러주었다. 이곳은 불갑산에서 불과 1킬로 떨어진 곳으로 월야면(月也面)보다 학살이 늦어진 동기는 모두가 친척집에 피난 갔다가 군인들이 점령하여 이젠 집에 들어가도 좋다는 말을 듣고 학살 당한 날 부락민이 집에 돌아오는데 전기와 같은 방법으로 학살했다고 한다.

동부락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나온 사람이 있었다고 하나 집에 부재중이라 기자는 만날 수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해 있는 부락민들은 대부분이 피난 갔다가 집 단학살이 끝난 뒤 마을에 돌아왔기 때문에 난을 면했다고 했다. 학살 현장인 『쌍구령』에는 10년 전에 몰살당한 30여명의 시체가 그대로 묻혀버려 거름이 되었음 인지 보리가 유난히도 잘 피었으며 앞에는 죽은 부락민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咸平郡 月也面·羅山面에서 光州支社 李相文 記】

언론보도내용

■ 일간신문

- 0 광주일보 : 93.12.28, 95.11.25, 95.11.28, 96. 8.30, 96.11.28, 96.11.29, 97. 1. 6, 97.11.28, 98. 6. 17, 98.12.16,
- 0 전남일보 : 93.12.24, 93.12.27, 95.11.28, 96. 8.20, 96.10. 1, 96.11.27, 97. 1. 4, 97.11.28, 98. 6.17, 98. 6. 26, 98. 7. 1, 98.12.17
- 0 전남매일 : 95.11.30, 96.10. 1, 96.11.30, 98. 6.25
- 0 무등일보 : 93.12.28, 96. 8.31, 96.11.28, 97. 1. 6, 97.11.28, 98. 6.17, 98. 6.18, 98. 6.20, 98. 9.19, 98.12.22,
- 0 광주매일 : 93.12.28, 96. 8.31, 96. 9. 6, 96.11.28, 97. 1. 7, 97.11.28, 98. 6.18, 98.12.18,
- 0 호남신문 : 98.12.18,
- 0 광남일보 : 96. 8.31, 96. 9. 1, 96. 9. 4., 96. 9. 5, 96. 9. 6, 96. 9. 7, 96. 9.17, 96.11.28, 97.11.28, 98. 6.17, 98. 6.25, 98. 6.26, 98. 6.27, 98. 6.30, 98. 7.23,
- 0 광주타임스 : 98. 6. 17,
- 0 함평신문 : 98. 5.25,
- 0 도민신문 : 97. 1.21,

8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심포지움

- 0 함평천지 : 98. 7.25, 98.12.23,
- 0 한국일보 : 60. 5. 20, 60 .5.21, 98. 6.30,
- 0 동아일보 : 93.12.28, 94. 1. 9, 97. 1.17,
- 0 중앙일보 : 97. 1. 7, 98. 9. 7,
- 0 한겨례신문 : 95.12. 4, 96. 9. 6,

■ 라디오 방송

- 0 KBS-1 : 96.6.26. 11:00~11:40, 96.10.31 13:00~14:00
- 0 평화방송 : 96.10.6.10:45~11:00, 96.10.13.10:45~11:00, 97.1.6.15:40~15:55,

■ T-V

- 0 KBS TV : 96.10.4.21:35~21:37,

■ 잡지

- 0 월간신동아 : 89.6
- 0 함평 문화 : 91(19회), 97(25회),
- 0 월간 예향 : 93.9
- 0 함평 천지 : 95.5
- 0 청년 광주 : 98(13회; 광주대학)
- 0 시사저널사 : 193(93.7.8), 458(98.8.6), 521(99.10.21), 523(99.11.4)
- 0 사회문화 : 97.12

■ 단행본

- 0 바로잡아야할 우리역사37장면(2)(역사문제연구소)
- 0 함평 양민학살(정찬동 저)
- 0 울부짖는 (부산매일사에서 창간기념으로 발행; 비매품)
- 0 해방후 양민학살사(김삼웅 저)
- 0 이대로는 눈을 감을수 없소(정희상 저)
- 0 함평 양민학살 피해 진상조사 실태보고서(함평군의회특위)

□ 명예회복 방안 제시

1. 명예회복 법률제정 지역과 국회 행자위 청원서 계류지역
- 명예회복 법률제정 지역
 - 거창양민학살명예회복특별법; 법률 제5,148호(96.1. 5)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 ; " 제6,117호(00.1.12)
 - 접수번호; 15000079(96.11.26).
- 제15대 국회 행자위원회에 명예회복 청원서 계류지역
 - ⑦ 함평 양민학살희생자 명예회복건; 15000031(96.9.6)
 - ⑧ 무주구천동 " " ; 150000306(98.4.16)
 - ⑨ 여순반란사건 " " ; 150000321(98.8.14)
 - ⑩ 고양금정굴 " " ; 150000396(98.12.1)

- ① 문경 " " ;150000444(99.2.23)
 ② 나주동창 " " ;150000448(99.3.5)

2. 명예회복 방안 제시

6.25때 반인도적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로 억울하게 집단 학살된 피해자의 명예회복은 다음의 기준과 순서에 의해서 명예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유족들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영령들께서도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 1960년 국회 제35회 임시회(4대국회)제42차 본회의에서 학살피해자로 조사 확인된 지역과 인원을(42개지역 8,715명)1차적으로 명예회복 시킨다.

⇒ 양민학살 희생후 9~10년 되는 해에 국회자원의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하였으므로 정밀성이 높음.

둘째 : 적용 법률은 기존의 특별법을 개정하여 위 “첫째”항의 지역을 모두 포함 시킨다. ⇒ 피해지역 마다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혼란 불필요.

셋째 : 전국적으로 양민이 학살되었다고 신고되는 지역은 16대 국회에서 별도로 특위를 구성하여 정밀조사후 조치

넷째 : 보상보다는 위령사업으로 명예회복 조치.

3. 함평양민학살희생자 명예회복 방안제시

가. 함평의 학살희생자는 1960년 국회 제35회 임시회 제42차 본회의에 국회차원의 특위위원들이 보고되어 확장된 희생자 524명에 대하여 재조사 없이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거창이나 제주와 같이 동일한 명예회복을 하여 주어야 한다.

⇒ 국가폭력의 사적유용은 국가에 책임이 있으며.“국민의정부”에서는 지역적인 차별을 군사정부와 “문민정부”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여서는 국민적 화합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나. 함평양민학살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증명되었으니 국회나(기 국회에서 조사완료) 정부는(통제되지 않은 국가폭력도 역사의 한 페이지다) 스스로 잘못된 역사의 반성을 교훈삼아 다시는 동일한 사건을 예방하여야 한다.

⇒ 당시 5중대장 연락병(김일호)증언, 당시 월야지서장 이계필의 증언, 당시 월야지서 순경 오정인 증언, 당시 선무공작대 나산·해보·월야면 파견대장이었던 7,8,9,1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윤인식의 증언, 학살현장 생존자들의 증언이 학살을 입증함.

다. 행정부나 국회가 명예회복을 스스로 하여주지 않을 경우 국회에 명예회복 청원서를 제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명예회복을 할 계획이다.

라. 공비토벌중 1950. 12. 2일 함평전투지역에서 전사한 5중대 군인 “김일호”的 전사지 표석을 설치하여 화해의 여건을 유족측에서 먼저 조성할 계획이다.

마. 함평양민학살 50주년 합동위령제를 거국적으로 봉행키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국회, 국군대부대를 도와 군단위의 기관단체장을 초청하여 엄숙히 거행하고 양민학살 내용을 전국에 알린다.

● 고양금정굴지역 - 김양원 위원장
(고양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위원회)

1. 학살사건 발생 장소 및 일시

- 일시: 1950년 10월 ~ 11월(약 1개월간) 오전 11:00 ~ 12:00
- 장소: 고양시 탄현동 고봉산 기슭에 소재한 금정굴(일제시대 건설된 수직폐광굴)

2. 당시 상황과 가해자

- 1950년 9.28일 수복 후 임의로 조직된 치안대, 태극단, 경찰이 부역을 한 부역혐의자는 피신하여 없고 죄가 없어 집에 있던 그 가족과 소극적인 부역한자 및 개인감정으로 당시 경찰서장인 이무영과 치안대장 이경하의 주도와 지시하에 적법절차 없이 경찰서 창고에 가두고 모친 고문과 식사도 제공치 않고 금정굴에서 학살한 사건임.

3. 피학살자 현황

- 당시 고양군에서 사망한 피학살자 수는 약 1000명 이상이 된다며 95년 9월 25일 ~ 10월 3일까지 금정굴에서 발굴한 유골은 현재 서울대 의대 법의학 교수인 이윤성 교수께서 감정하고 있으며 중간발표에 의하면 160구 이상이 될 것이며 그 중 여자의 유골도 10명이나 되고 10대의 어린 유골도 있다며 그외 노약자 및 연령별은 정확한 감정이 끝나야 밝혀질 것이며 미발굴된 유골도 발굴하여 감정을 하여야만 금정굴에서 희생된 사망자 숫자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함.

(참조: 후면 중간 감정결과 첨부)

- 피학살자 성격

인민치아에서 강제로 끌려가 부역을 한 부역혐의자 및 죄 없는 그 가족, 양민 또한 개인감정에 의해 학살됨.

4. 유족회 활동 내용

1) 가해자 면담이나 인터뷰한 내용

(아래 내용은 증언을 가능한 그대로 기술하였음)

- 김규용(당시 치안대원)

1950년 9.28 수복후 치안대원인 김규용씨가 금정굴에 올라와 학살당시 현장에서 행동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사람을 한번 죽이고 그 위에 흙을 덮고

86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심포지움

또 죽이고 덮고 여러 켜로 덮었다고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금정굴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좌익자인 가를 묻자 “사상은 무슨 사상이냐?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농민사상이라고 할까?”라며 죽은 사람들이 양민이라는 것을 인정하였고, 95년 9월 25일 금정굴 위령제에 참석하여 당시의 상황을 현장에서 설명하였음.

- 김인성(당시 태극단원)

1950년 9.28 수복후 금정굴에서 무차별 처단하는 것을 보고 나는 산에서 내려와 태극단에서 나왔다고 증언하였으며, 경찰, 치안대, 태극단이 가담한 사실을 인정함.

- 정OO(당시 고양경찰서 유치장서 근무)

근무 중 서장인 이무영씨가 많은 양민을 학살한다는 이유로 서울 군경합동 수사본부에서 체포하려고 고양서에 왔으며 “나는 우리어머니와 처, 자식도 빨갱이한테 죽었다 나보다 더 원수가 어디 있느냐 그래도 난 이렇게 (학살)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 마음대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서장 나와라” 하며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일(학살)이 더 커졌겠지 모르지라고 증언하였고 그 후 1950년 11월 8일부로 이무영서장은 면직됨, 금정굴 현장에서 증언하였음.

- 김경열(당시 태극단 감찰부장)

MBC PD 수첩팀 기자와의 취재과정에서 태극단이 당시에 양민학살을 하였다는 데 사실이냐고 묻자, 약 400명을 죽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누가 빨갱이 집안일 줄 알고 시집왔겠느냐, 시집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았다. 어디서 학살을 했냐고 묻자 황매동 갯벌(지금의 파주 출판단지 부지)에서 학살했다고 하였으며 왜 그 강가에서 학살했느냐고 하자 그 사람들은 다 어디다 처리하느냐, 강갯벌에서 학살하면 강물이 들어와 다 떠내려갈 것이 아니냐고 당시의 학살 사건에 대해 시인 증언하였음.

- 정종만(탄현동 주민)

정종만씨는 당시 숫고개 마을(지금의 탄현동)에서 살고 있었으며 경의선 철로가 가까이 있어 당시에 치안대 경찰 등이 약 30여명 이상을 철길로 끌고 금정굴로 올라가 10여명씩 쏴서 구덩이(금정굴)에 넣었다. 집앞에 보이는 철길로 수십 명씩 묶어서 끌고가는 여러번 것을 보았는데 그 중에는 어린아이를 업고 가는 여자들도 있었다고 증언하였음.

- 김상문(당시 고양경찰서 보안계장)

SBS 기자인 윤춘호씨와 취재 인터뷰에서 40 ~ 50여명을 죽인 것은 사실이며 현장목격자도 찾았다고 증언하였고 김상문 보안계장은 고양경찰서에서 정보, 보

안등의 업무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으며 93년 9월 당시 진상규명을 위한 유족과 진상규명위원장 김양원씨의 방문에 금정굴 사건을 파헤치면 결코 이로 올 것이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킴.

- 송금연(당시 숫고개 마을 거주)

당시 숫고개 마을(현 탄현동)에 살았으며 오빠가 일제 때 군청 징용계에 근무 하던 중 친구 가족을 징용 보낸 사실로 인해 인민군들이 연행하여 할미쪽(현덕이 동)으로 끌고 가던중 도망하려다 총에 맞고 인가로 기여 내려와 죽었으며 후일 장례식을 하려고 상여를 메고 가는데 장례행렬을 치안대와 경찰들이 가로 막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으며 그 중에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새끼줄로 묶어 금정굴로 끌고 올라갔으며 몇 분 후 총소리가 여러분 났음, 그 중에는 여자도 있었음.

오빠 송한영씨는 박정희 정권시절 국가유공자로 태극단에 등록되었으며 연금도 수령하였다고 함.

- 황두섭(당시 숫고개 마을 거주)

당시 숫고개 마을, 지금의 금정굴 아랫마을에서 살았으며 9.28 수복이 되면서 치안대와 경찰이 매일(1950년 10월) 약 1개월간 수십 명씩 집 앞으로 끌고가는 것을 보았고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묻자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죄 없는 사람들이 죽었다며 증언을 하였음.

5. 국회나 정부에 제출한 탄원서 및 청원서

1993. 9. 20 청원서 제출(대통령, 내무부 장관, 고양시장, 고양시 의장, 고양경찰서장)

1993. 9. 22 강수립 국회의원 외 8인 고문 위촉함, 국회 청원서 제출

1995. 10. 2 각계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진정서를 발송함

청와대, 내무부 장관, 국회의장, 경찰서장, 경기도 지사, 경기도 의회의장, 고양시장, 고양시 의회의장, 시의원, 경기도 지방 경찰청장, 고양시국회의원 이택석, 고양경찰서장, 각 정당 대표, 의원 등

1997. 4. 13 경기도 의회내 금정굴 양민학살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청원서 제출함(소개의원 이상락, 이찬혁, 정소양)

1998. 8. 19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탄원서를 대통령 이하, 각 부처에 발송함

1998. 11. 28 청원서가, 국회의원 유선호 의원 외 27명 서명 날인하여 국회 사무처내 정식으로 접수, 인수증을 수령함

6. 피해보고서 제작 발행

1994. 10. 15 제1차 자료집 발간, 저자 김양원, 편집 나진택

1998. 12. 31 이한공(신도시 거주)에 의해 최초로 금정굴을 소재로한 중편소설 "세기말 빌딩 오르기" 탈고함

1999. 3. 22 제2차 고양금정굴 양민학살 사건 진상보고서 발간

7. 언론 보도일지나 텔레비전에 방영된 프로그램 등

1993. 9. 10 금정굴 양민학살 사건이 고양시민 뉴스에 최초 보도됨

당시 백금순 기자 금정굴 사건보도 이유로 해직됨, 고양신문 이영아 기자도 같은 이유로 해직됨

1993. 9. 13 금정굴 양민학살 사건이 일간지 최초 사회면 특종 보도됨(중앙일보)

1993. 10. 27, 1993. 11. 4 내일신문 제4, 5호에 금정굴 양민학살이 상세히 보도됨(홍장기 기자)

1993. 11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가해자 압력으로 방영 취소됨

1994. 10. 15 제1차 자료집 발간, 저자 김양원, 편집인 나진택(진상규명 부위원장 나진택 영입)

1995. 9. 24 제3차 합동위령제 및 유해 발굴 시작함(협찬 MBC PD 수첩 최승호기자, 한겨례 신문사 강남규, 강세준 기자, 21세기 신문사 홍석철 사장, 강희정 기자)

1995. 9. 29 유골이 나오기 시작함, MBC 등 각 매스컴에 보도됨.

1995. 10. 3 MBC PD 수첩이 금정굴의 참상을 연속 2회(1, 2부) 방영함, PD 최승호 기자

1995. 10. 4 진상규명 위원장 김양원씨가 CBS 기독교 시사 프로그램에서 금정굴 양민학살에 대해 대담함, 연일 매스컴에 보도됨(진행자 정범구)

1995. 10. 13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유골 20여구 모시고 가서 항변함, 한겨례신문 등에서 사진 보도됨.

8. 지방차치 단체와 지방의회의 활동

1993. 9. 15 고양시 의회 의장 정종득 의장에게 탄원서 제출하였으나 접수거부 당함

1997. 4. 13 경기도 의회에 금정굴 양민학살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청원서 제출함(소개의원 이상락, 이찬혁, 정소양)

청원서가 보사환경위원회 → 내무위원회 → 의장 → 내무위원회로 서로 다른

부서로 미루어짐

7-9월 사이 유족회가 도의회를 방문하여 각 당 대표 및 총무 임원진을 수차례 방문하여 금정굴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고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함

1997. 10. 22 경기도 의회 방문, 본회의에서 금정굴 양민학살 청원심사 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한기태 국민회의(운영회 간사)의 설명으로 본회의에 상정 만장일치로 안건이 채택되었으나 신한국당 신우근 고양시의원이 애매모호한 반박 성명에 의해 좌절됨.

1997. 11. 20 경기도 의회 청원심사를 통하여 금정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회의가 있었으나, 이번에도 신한국당 의원에 의해 부결됨

1998. 10. 14 청원접수, 이상락, 나진택 의원의 소개로 고양시 일산 금정굴 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 및 희생자명예 회복 등에 관한 청원이 경기도의회에 접수

1998. 11. 13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의회의원 운영위원회의 협의 결과 보사환경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결정

1998. 12. 24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보고
청원심사를 담당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청원 내용이 다양함등을 사유로 청원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의장에게 보고

1999. 2. 10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이상락, 나진택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경기도 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고양시 일산금정굴 사건 진상조사 특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위원수 10인(국민회의 6, 한나라당 3, 비교섭1) 성할 것을 제1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1999. 3. 23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제135회 임시회의 중 제1차 고양시 일산금정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기영(국민회의)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상락(국민회의), 나진택(한나라당)의원을 간사로 선임

1999. 7. 2 현장방문 및 의견청취
참석인원: 34명(소속위원 10명, 피해자, 유가족 및 시민단체 24명), 장소: 금정굴 현장

1999. 12 경기도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고양시 금정굴 사건 진상조사 활동 결과 보고서 및 건의서 발간

1998. 12. 22	금정굴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을 위한 금정굴 진상규명 보고서 제작작업 시작함(실무 고양청년회)
1998. 12. 28	경기도 의회의원 나진택 의원 외 6인의 금정굴 현장답사 있었음, 유족 다수 참석함(안내 및 설명 김양원)
1998. 12. 31	이찬공씨(신도시 거주)에 의해 최초로 금정굴을 소재로 한 중편소설 「세기말 빌딩 오르기」 탈고됨
1999. 2	이무영 서장의 고양경찰서 근무기록이 유선호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으로 경찰청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 7년만에 공식 인정됨
1999. 2. 10	금정굴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경기도 의회에 만장 일치로 통과됨. 앞으로 10명의 특위위원이 2개월간 진상조사하게 됨
1999. 2. 12	2차 발굴, 유골감정 결과가 신문 보도됨(사망 153명, 여성 10%, 10대 후반의 빠도 있음)
1999. 3. 22	제2차 금정굴 양민학살사건 진상보고서 자료집 발간(실무 고양청년회 및 유족회)
1999. 12	경기도 의회 특별위원회, 고양시 일산금정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서 활동결과 보고서 발간
1999. 12. 29	경기도 특위위원회에서 경기도에 제출한 보고서 및 건의서를 제출, 경기도 사회복지과에서 고양시에 건의사항에 대한 공문 발송, 고양시에서 이에 대한 주민 및 관련단체 의견 수렴 결과를 지사협조 요청
2000. 3. 17	고양시에서는 도에서 요청한 위령사업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나 보훈단체와 태극단에서 이를 반대(찬성5, 반대2)하여 고양시장이 무책임하게 위령사업에 대하여 반대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령사업을 시에서 할 수 없다고 하여 무산됨

1998. 12. 22	금정굴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을 위한 금정굴 진상규명 보고서 제작작업 시작함(실무 고양청년회)
1998. 12. 28	경기도 의회의원 나진택 의원 외 6인의 금정굴 현장답사 있었음, 유족 다수 참석함(안내 및 설명 김양원)
1998. 12. 31	이찬공씨(신도시 거주)에 의해 최초로 금정굴을 소재로 한 중편소설 「세기말 빌딩 오르기」 탈고됨
1999. 2	이무영 서장의 고양경찰서 근무기록이 유선호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으로 경찰청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 7년만에 공식 인정됨
1999. 2. 10	금정굴 양민학살사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경기도 의회에 만장 일치로 통과됨. 앞으로 10명의 특위위원이 2개월간 진상조사하게 됨
1999. 2. 12	2차 발굴, 유골감정 결과가 신문 보도됨(사망 153명, 여성 10%, 10대 후반의 뼈도 있음)
1999. 3. 22	제2차 금정굴 양민학살사건 진상보고서 자료집 발간(실무 고양청년회 및 유족회)
1999. 12	경기도 의회 특별위원회, 고양시 일산금정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서 활동결과 보고서 발간
1999. 12. 29	경기도 특위위원회에서 경기도에 제출한 보고서 및 건의서를 제출, 경기도 사회복지과에서 고양시에 건의사항에 대한 공문 발송, 고양시에서 이에 대한 주민 및 관련단체 의견 수렴 결과를 지사협조 요청
2000. 3. 17	고양시에서는 도에서 요청한 위령사업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나 보훈단체와 태극단에서 이를 반대(찬성5, 반대2)하여 고양시장이 무책임하게 위령사업에 대하여 반대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령사업을 시에서 할 수 없다고 하여 무산됨

● 강화지역 - 서영선 대표 (강화희생자유족회)

1. 학살 사건이 발생한 시기, 일시

일시 : 1951년 1월 6,7,8일(3일간)

장소 : 강화 구대교옆 갑곶 나루터와 옥립리(옥계)갯벌

2. 학살 당시 상황

1950년 9·28 수복 후 민간 청년 반공 단체인 치안대원과 대한 정의단 단원들은 가볍게 부역한 사람이나 월북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끌고가 고문하고 취조하면서 괴롭혔다. 그러다가 잠시 해산하였는데 1951년 1·4후퇴 당시 그들의 잔당 약 22명이 12일, 18일에 항토방위 특공대를 결성하였다. 비밀리에 강화 신문지에 있는 양조장 자리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면서 남아있는 가족들을 연행해 갔다. 저희 집에도 12월 27일경이라 생각되는데 저녁에 특공대 기동대들이 3명이 복면을 하고 들어와 이곳 저곳을 뒤지다가 얘기를 업고 마루에 서 있는 어머니를 끌고 갔다. 남녀(부녀자15) 모두 60명 가량을 양조장에 가두었다가 며칠 후에 관청리 옛 곡물 검사소 건물로 데려가 가두었다. 그때는 간판을 걸고 일하다가 경찰이 1.2일 후퇴함에 따라 경찰서를 장악하고 유치자아에 사람들을 가두었다가 1월 6일에서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약 10여명씩 저녁에 갑곶 나루터와 옥계 갯벌에서 바다를 향해 세워놓고 뒤에서 총으로 학살하였다.

그 후 1월에서 2월 말까지에 걸쳐 각 곳 해안에서 약 300명을 웃도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한다. 먼저 학살한 60명은 노인, 부녀자, 갓난아기로 양민이었고, 구후의 학살은 부역을 하고 피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강화 주민들이었다고 하나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다고 한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강화 교육청의 장학사였고 어머니는 개성 호수돈 여고를 졸업하고 의학공부까지 하신 인텔리였다. 강화는 휴전선이 가깝고 갑자기 발발한 6.25로 인해 피난 갈 틈도 없었고 나는 12살 국민학교 5학년이었을 때 공부하던 학교에서 전쟁을 맞았다.

피난을 못 가신 아버지는 지식층들을 그냥 두지 않았던 인공시절에 인민군들의 총칼에 위협을 당했고, 일을 보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인공시절 3개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9.28수복을 맞으며 아버지는 행방을 모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어머니와 우리 6남매는 빨갱이 가족으로 몰렸고, 그해 12월에 끌려가신 것이 어머니와 우리들의 마지막이었다. 졸지에 고아가 된 5남매를 큰집에 데리고 가시던 할머니께서도 외포리 소개고개에서 특공대에 의해 학살되었다.